

공개 자료

RCEP 상세 설명자료

2021. 10

관계부처 합동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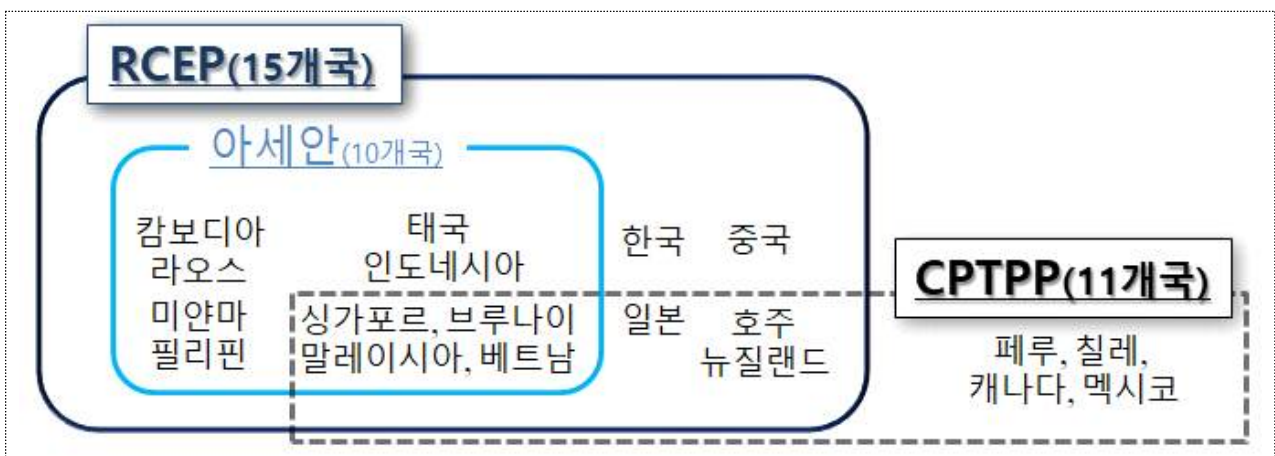
1. 최초 규정 및 일반 정의	5
2. 내국민대우 및 상품 시장접근	6
3.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12
4.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21
5.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SPS)	23
6.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TBT)	30
7. 무역구제	34
8. 서비스 무역	39
9. 자연인의 일시이동	52
10. 투자	54
11. 지식재산	61
12. 전자상거래	76
13. 경쟁	81
14. 중소기업	84
15. 경제 및 기술협력	86
16. 정부조달	88
17. 일반 규정 및 예외	90
18. 제도 규정	95
19. 분쟁해결	100
20. 최종 규정	112
부록1. 상품 양허 주요내용	115
부록2. 서비스·투자 시장개방 주요내용	210
부록3. 자연인의 일시이동 양허 주요내용	230

RCEP 협상 경과

- (추진 배경) '97년 아세안+3(韓·中·日) 정상회의가 정례화되면서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논의 진행
 - 2000년대 들어 중국은 EAFTA (ASEAN+3)를 제안하였고, 일본은 CEPEA (ASEAN+6)를 제안하여, 동아시아 경제 통합 논의 시작
 - ※ EAFTA(East Asia Free Trade Area): ASEAN, 한국, 중국, 일본
 - ※ CEPE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in East Asia): ASEAN,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 '11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아세안+6*가 참여하는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추진하기로 함
 - * 아세안 10개국 및 한·중·일·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6개국 참여
 - 당시 우리는 세계 경제에서 RCEP 참여국들의 비중과 위상이 지속 강화되고 있고, 동아시아 경제통합 효과 등을 고려, 참여 결정

< RCEP과 USMCA, CPTPP간 주요지표 비교, 2020년 > < 출처 : IMF >

구분	무역규모		명목 GDP		인구	
	조달러	비중	조달러	비중	억명	비중
RCEP	5.6	(31.9)	26.1	(30.8)	22.7	(29.7)
USMCA	2.2	(12.8)	23.7	(28.0)	5.0	(6.5)
CPTPP	2.9	(16.3)	10.8	(12.8)	5.1	(6.7)
전세계	17.5	(100.0)	84.5	(100.0)	76.4	(100.0)



※ 인도를 제외하고 15개국이 서명('20.11)한 결과를 반영한 자료

- (협상 경과) '12.11월 16개국 협상개시 선언, '13.5월 협상 개시 이후 약 8년간 총 31차례 공식협상, 19차례 RCEP 장관회의 등 개최
 - 협상 진전 의지를 재확인하고 협상 가속화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15년, '16년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RCEP 정상 공동선언문 발표
 - 두 선언문 모두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의 실질적 협상과 협정문 협상이 심화된 것을 환영하며, 조속한 타결을 촉구
 - '17년부터는 아세안 정상회의 일환으로 RCEP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인 협정 타결 의지를 재확인
 - '17. 11월 제1차 정상회의에서는 '18년 RCEP 실질타결 목표 설정
 - '18. 11월 제2차 정상회의에서는 RCEP이 최종단계에 진입하였다고 평가하고, '19년 타결을 결의
 - '19. 11월 제3차 RCEP 정상회의시(태국) 인도 제외 15개국은 협정문 타결(20개 챗터)*을 선언하고, '20년 정상회의에서 서명 합의
 - * 당초 '19년 최종타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협상 지연으로 인해 어려워지자 협상 모멘텀 유지 차원에서 우선 협정문(Text)만 타결 선언(시장개방 제외)
 - 당시 인도는 무역적자 심화 등에 따라 RCEP을 비롯한 무역협정에 대한 국내 반발이 증가하여 RCEP에 불참을 결정
 - '20. 11월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은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최종 서명

< 4차 RCEP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요약 >

- ◆ RCEP 협정은 COVID-19 이후 역내 경기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
 - ◆ RCEP은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으로 전세계 무역·투자규칙에 중요한 의의
 - ◆ 아세안의 구심점 역할 제고와 지역 동반자들과 아세안 협력 강화에 기여
 - ◆ RCEP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각 국의 국내 비준 절차를 신속히 진행
 - ◆ 인도의 RCEP 참여를 촉구하며, '인도의 RCEP 참여에 관한 장관선언문' 첨부
-

1

최초 규정 및 일반 정의

개요

- 자유무역지대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관계의 수립, 여러 장(chapter)에 걸쳐 등장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 협정*의 목적 등 규정

* 달리 언급하지 않는 한, 이하에서 "RCEP 협정"을 의미

최초규정 및 일반정의 주요 내용

1. 일반 정의 (제1.2조)

- 2개 이상의 챕터에 사용된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그 정의를 규정
 - 일반 정의에 규정된 용어의 경우 개별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동 조항에서 정의한 의미로 사용

2. 목적 (제1.3조)

- 역내 상품·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및 확대, 투자 촉진 및 확대를 협정의 주요 목적으로 추구하되, 협정 당사자(Party)들의 개발 수준과 경제적 필요성을 고려

개요

- 내국민 대우,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상품의 일시 반입 면세 등 상품 시장 접근 관련 원칙과 의무사항은 협정문 본문에 규정하고, 품목별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이행을 위한 연도별 관세율은 부속서 I (관세 양허표)에 규정
- 수량제한, 수입허가, 수출입수수료 등 상품무역 비관세조치 관련 원칙과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비관세조치에 관한 기술협약의 절차 도입

상품 협정문

1. 내국민 대우 (제2.3조)

- 1994년도 GATT 제3조에 따라 당사자들의 상품에 내국민 대우 부여

< 내국민 대우 >

- ▶ 수입 물품(imported products)과 자국산 물품(domestic products)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 GATT 제3조는 수입품이 세관을 통과한 후에는 동등하거나 유사한 자국산 물품보다 덜 불리한 대우(treated no less favourably)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

2. 관세 인하 또는 철폐 및 관세 양허의 가속화 (제2.4조, 2.5조)

- 부속서 I (관세 양허표)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제2.4조)
 - 부속서 I (관세 양허표)에 따른 관세율보다 WTO 협정에 따른 최혜국 실행관세율이 낮을 경우, 최혜국 실행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 당사자들은 부속서 I (관세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 양허를 가속화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제20.4조(개정)에 따라 동 협정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확대 적용(제2.5조)
- 둘 이상의 당사자들은 상호 동의에 기초하여 그들의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 양허의 가속화 또는 개선에 대해 협의 가능
- 또한 당사자는 일방적으로 자신의 양허에 규정된 관세 양허를 가속화 또는 개선 가능

< 관세 양허 >

- ▶ 합의된 수준 이상으로 관세를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관세율이 일단 양허 되면, 양허된 관세율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이 불가. 양허표는 관세 양허율의 목록을 의미.

3. 관세 차별 (제2.6조)

- 상품의 개별 양허*로 동일한 상품에 국가별 상이한 관세를 적용하는 관세 차별이 발생함에 따라 역내 우회 수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규정

* 한국은 아세안, 호주, 중국, 일본, 뉴질랜드에 상이한 상품양허 적용

- **(제2항)** 원산지 상품의 RCEP 원산지 국가는 제3.2조(원산지 상품)에 따라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국가임. 한편 제3.2조나호의 PE기준*과 관련해서, 수출 당사자 내에서 제5항의 최소공정** 이상의 생산 공정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출 당사자가 RCEP 원산지 국가 인정

* 원산지요건을 충족한 원산지재료만을 사용해서 최종제품 생산시 원산지 인정

** 보존공정, 포장, 단순 가공(감별체질 등), 마크라벨 등의 부착, 단순 희석, 제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동물의 도살, 단순 페인팅, 단순 탈피, 단순 혼합 또는 상기 공정 둘 이상의 조합(제5항)

- **(제3항)** 부속서 I (관세 양허표)에 포함된 수입 당사자의 양허표 부록에 기재된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 당사자가 공제법 또는 직접법으로 계산된 국내가치비율(DVC)**가 20%이상이어야 함

* 명태, 치즈, 마늘, 포도, 합판, 유리, 화물차 등 HS10단위 99개 품목

-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 그 후에는 3년 마다 조건 및 품목수 완화 검토 개시

** 제3.5조(RVC 산정) 계산방식을 준용하여 한 당사자 국가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계산

- (제4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출 당사자 국가가 원산지 국가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그 상품의 원산지 재료 중 최고 가치를 기여한 국가가 원산지 국가로 인정됨
- (제6항) 수입 당사자가 타 당사자들로부터의 동일한 원산지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 중 최고 세율 또는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에 기여한 당사자 국가들에 대해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최고 세율을 신청 가능

4. 통과 중인 상품 (제2.9조)

- 1994년도 GATT 제5조제3항과 「무역원활화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통과 중인 상품의 통관을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함

<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 >

- ▶ 상품의 국제교역을 위해 국경에서 적용되는 기술적·법적 절차를 간소·단순화하는 일련의 조치로서, 선적 정보의 전자적 교환, 수출입문서의 단순화 및 통일, 국경관리 당국의 행정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등 다양한 국경절차가 여기에 포함됨(OECD)

5. 일시 반입 상품 및 견본품에 대한 면세 (제2.10조, 2.12조)

-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명시된 기간 내 재수출될 의도이며, 사용에 따른 통상적인 감가상각 및 손실을 제외한 어떠한 변화도 거치지 않은 상품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조건부 면세 반입 허용(2.10조)
- 상업적 가치가 없는 견본품에 대해 원산지에 관계없이 무관세 반입을 허용(2.12조)

6. 농업 수출 보조금 (제2.13조)

- 당사자들은 농산물에 대해 예정된 수출 보조금 권리 철폐를 포함한 「수출 경쟁에 관한 2015년 12월 19일 각료회의 결정(WT/MIN(15)/45, WT/L/980)*」에서 한 약속을 재확인

* ①농업 수출보조 철폐, ②수출신용 최대상환기간 설정, ③수출 독점으로 인한 무역왜곡효과 최소화 및 노력, ④식량원조에 대한 규율(무상원조 원칙, 재수출 금지, 현물원조 지양 등)

7. 관세 양허표의 변경 (제2.14조)

- 각 당사자는 동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주기적 수정 후 개정된 품목 분류에서 부속서 1의 관세 양허표를 이행하기 위해 자신의 양허표를 변경할 경우,
 - 同 변경이 부속서 1의 관세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 양허를 손상시키지 않고 수행되도록 보장

8. 양허의 수정 (제2.15조)

- 예외적인 상황에서, 당사자가 자신의 관세 양허를 이행하는데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
 - 그 당사자는 그 밖의 모든 이해당사자들과의 합의와 RCEP 공동위원회의 결정과 함께 부속서 1의 자국 양허표에 포함된 양허를 수정하거나 철회 가능

9. 상품무역 관련 비관세조치의 적용 (제2.16조)

- WTO 협정 또는 RCEP 협정상의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 간 상품무역에 대해 비관세조치 채택 또는 유지 금지
- 비관세조치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당사자 간 상품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효과를 가지는 조치가 준비·채택·적용되지 않도록 보장

10. 수량 제한의 일반적 철폐 (제2.17조)

- WTO 협정상의 권리 및 의무 또는 RCEP 협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 상품에 대하여 수출입 수량제한 금지
- 1994년도 GATT 제11조제2항가호에 따른 수출 금지나 제한을 채택하는 경우 상대국이 요청 시 관련 정보 및 협의 기회 제공
 - ※ 1994년도 GATT 제11조제2항가호 : 식품 또는 수출국에 불가결한 그 밖의 상품의 중대한 부족을 방지 또는 완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수출의 금지 또는 제한

< 수량 제한(Quantitative restrictions) >

- ▶ 일정 기간 동안 수입 또는 수출될 수 있는 상품의 물량이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조치

11. 비관세조치에 대한 기술적 협의 (제2.18조)

- 자국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조치에 대해 분쟁해결 절차와 별개로 다른 당사자에 기술적 협의 요청 가능
 - 180일 이내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요청 받은 후 60일 이내 응답 및 기술적 협의 개시
 - ※ 긴급하거나 부패성 상품과 관련시 60일보다 짧은 기한 내 기술적 협의 요청 가능

12. 수입허가절차 (제2.19조)

- WTO 수입허가절차 협정에 따라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수입 허가절차를 적용하고, 협정 발효 후 신속하게 기존의 절차를 다른 당사자에 통보
- 모든 새로운 절차 또는 기존 절차에 대한 수정을 가급적 발효하기 30일 전 다른 당사자들에 통보,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공포일 후 60일 내에 통보

- 또한 모든 새로운 또는 수정된 절차를 적용하기 전에 이를 정부 공식 인터넷 사이트에 공표하며, 가급적 그 새로운 절차 또는 수정이 발효하기 최소 21일 전에 공표
- 수입허가의 기준에 관한 다른 당사자의 모든 합리적인 질의에 대해 가급적 60일 이내 답변
- 수입허가 신청 거부 시, 신청자가 요청할 경우 합리적 기간 내 이유 설명
 - 사소한 서류상의 오류를 이유로 허가신청 거부 금지

< 수입 허가 절차 >

- ▶ 수입의 조건으로 관계 행정기관에 신청서나 기타 서류(관세 부과 목적을 위해 요구하는 신청서나 서류는 제외)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정 절차

13. 수출입 수수료 및 형식 (제2.20조)

- 수출입 수수료 및 부과금의 세부 사항을 즉시 공표하고 인터넷에 공개, 수입 관련 영사거래 요구 금지 등 의무 규정

14. 분야별 이니셔티브 (제2.21조)

- 당사자들은 분야별 사안에 관한 작업 계획을 개시하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상품위원회의 수립·감독 하에 개시 후 2년 내에 완결을 위해 노력
- 당사자들은 모든 당사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작업 계획에 포함될 분야에 대해 합의

개요

- (원산지 규정)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원산지 상품에 대한 일반 기준과 품목별 원산지 기준규정
 - 원산지 기준으로 (i)완전생산 기준, (ii)원산지 재료생산기준, (iii)실질적 변형기준(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 기준)을 규정
 -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상 세번변경기준을 적용받는 상품의 경우, 동 기준 미충족시에도, 비원산지재료 가치가 상품 FOB의 10% 이하인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는 미소기준, 최종 제품에 투입된 다른 당사자의 원산지 재료의 누적을 허용하는 등 보충기준 도입
 -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에는 총 5,205개 세번(HS2012, 6단위*)별로 비원산지 재료 사용시에도 원산지로 간주할 수 있는 요건 규정
 - * 다만, 2단위, 4단위 하위 품목 모두 동일 기준인 경우, 2단위, 4단위로 일괄 규정
- (원산지 절차) 원산지 증명 방식, 특혜관세 신청 절차, 원산지 검증 방식 등에 대하여 규정
 - (원산지 증명) 기관증명 및 자율증명 방식을 채택하고 자율증명은 순차적으로 도입(발효 후 인증수출자 즉시, 수출자·생산자 원칙적 10년 내)
 - (특혜관세 신청) 수입자는 원산지 증명서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함
 - (원산지 검증) 관세당국이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및 수출국에 정보를 서면 요청할 수 있고, 필요시 수출국 방문검증이 가능하도록 규정

상세내용

1. 원산지 기준 (제3.2조)

- 특허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원산지 상품으로 다음을 규정
 - 당사자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 하나 이상의 당사자들로부터의 원산지 재료로만 당사자에서 생산된 제품
 - 당사자에서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하였으나, 품목별 원산지 기준(부속서 3-가)을 충족하는 상품

2. 완전생산기준 (제3.3조)

- 당사자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을 규정
 - 당사자에서 재배 및 수확, 수집 또는 채집된 식물 및 식물성 상품
 - 당사자에서 출생·사육된 산 동물 및 이로부터 획득된 상품
 - 당사자에서 수렵, 덫사냥, 어로, 양식 등으로 획득된 상품
 - 당사자에서 추출·채취된 광물 및 그 밖의 자연 발생 물질
 - 국제법에 따라 당사자 및 비당사자들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하부 토양에서 당사자의 선박이 획득한 어로상품·해양생물, 그리고 당사자 또는 그 당사자의 인에 의하여 획득된 그 밖의 상품
 - 다만,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해저 또는 해저 하부의 하층토에서 획득된 상품의 경우 해당 당사자나 당사자의 인에게 개발권이 있는 경우 이어야 함
 - 당사자에서의 생산 또는 소비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또는 부스러기 그리고 당사자에서 수집된 중고품. 다만, 그러한 상품은 처분, 원재료의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합한 것이어야 함

3. 누적기준 (제3.4조)

-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 한 당사자의 상품 및 재료는 다른 당사자에서 다른 상품 또는 재료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 다른 당사자의 원산지로 간주함
- 모든 서명국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에 당사자들은 당사자들에서 수행되는 모든 생산 및 상품에 부가되는 가치에 누적조항을 확대하는 방안의 검토(review)를 개시하며 검토 개시일 5년 내에 검토를 완료함

4. 역내가치포함비율 계산 (제3.5조)

- 역내가치포함비율(Regional Value Content)의 계산 방식으로 간접법/공제법(Build-down)과 직접법/집적법(Build-up)을 규정

- 간접법/공제법(Build-down) : 비원산지 재료가치를 제외하여 계산

$$RVC = \frac{\text{본선인도가격(FOB)} - \text{비원산지재료가치(VNM)}}{\text{본선인도가격(FOB)}} \times 100\%$$

- 직접법(Build-up) : 원산지 재료가치 등을 누적하여 계산

$$RVC = \frac{\text{원산지재료가치(VOM)} + \text{직접노무비} + \text{직접경비} + \text{이윤} + \text{그 밖의 비용}}{\text{본선인도가격(FOB)}} \times 100\%$$

5. 최소 공정 및 가공 (제3.6조)

- 비원산지 재료를 가공하여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의 공정(불인정 공정)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역내산으로 불인정
- 보존공정, 상품 포장 또는 전시, 단순 가공(감별, 체질, 선별 등), 마크·라벨 등의 부착 또는 인쇄, 단순 희석, 분해, 도살, 탈각 또는 상기 공정 둘 이상의 조합

6. 최소허용수준(미소기준) (제3.7조)

- 세번변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상품 본선인도 가격(FOB)의 10% 이하일 경우, 해당 상품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 협정문상 미소기준은 적용대상으로 1-97류 전 품목을 규정하였으나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서 세번변경기준 품목에만 적용(완전생산기준, RVC 단독기준 품목에는 미적용)
- 다만, 섬유 및 의류(제50류-제63류)는 미소기준을 비원산지 재료의 중량이 상품 중량의 10% 이하인 경우로 규정

7. 포장재의 취급 (제3.8조)

- 상품 운송용 포장재 및 용기는 원산지 판정 시 고려되지 아니함
- 소매용 포장재도 원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는데 고려되지 않음. 다만, 원 상품이 RVC 요건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포장재의 가치를 RVC 계산에 포함

8.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제3.9조)

- 상품과 함께 제시된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등은 그 상품의 세번변경 기준의 충족 여부 판단에 있어서 고려되지 아니함
 - 다만, 그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RVC) 요건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부속품 등의 가치는 역내가치포함비율(RVC) 계산에 포함

9. 간접재료 (제3.10조)

- 간접재료*는 생산 장소와 관계없이 원산지 재료로 취급됨
 - * 상품의 생산, 시험 또는 검사 사용되거나 상품 생산과 관련한 건물의 유지나 설비 운영 사용 품목(연료, 도구, 촉매제, 검사 설비 등)

10.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 (제3.11조)

- 동일하고 대체가능한* 상품 또는 재료의 원산지를 판정할 경우, 물리적 분리 또는 혼합될 경우 수출 당사자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서 인정되는 재고관리법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하며 동일 회계연도에 사용되어야 함

* 동종이고 상업적으로 동질이며, 동일한 기술적 및 물리적 특성을 보유하고, 최종 상품에 결합되는 경우 원산지 목적상 어떤 표시 등에 의해서도 구별될 수 없는 상품·재료

11. 생산에 사용된 재료(중간재) (제3.12조)

- 비원산지 재료를 투입한 중간재가 원산지 자격을 취득하여 최종재 생산에 사용될 때 중간재 전체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Roll-up)

12. 특정상품의 취급 (제3.14조)

- 당사자(우리나라)의 요청에 따라 특정 상품(역외가공물품) 취급에 대한 논의 개시하여 3년 이내에 합의에 따라 결정

13. 직접 운송 (제3.15조)

- 특혜관세 대우는 수출 당사자에서 수입 당사자로 직접 운송되는 원산지 상품에만 적용
 - 다만 수출 및 수입 당사자 또는 비당사자를 경유하더라도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직접운송으로 간주
 - 원산지 상품이 경유국에서 하역·재선적·보관 또는 상품의 보존을 위한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 중간 경유국에서 관세 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을 경우

14.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부속서 3-가)

- 품목별 특성에 따라 원산지 기준은 큰 틀에서 우리 기체결 FTA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생산공정 반영, 역내 공급망 활성화 등을 위하여 일부 완화된 기준을 도입하여 업체의 활용도 제고
 - **(화학)** 대부분 “세번변경기준(CTH/CTSH)과 부가가치 40%” 선택기준, 일부 품목에는 화학반응(Chemical Reaction) 공정기준을 추가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여 업체의 선택의 폭 확대
 - **(섬유·의류)** 역외산 재료 활용이 가능하도록 대부분 “세번변경기준(CC/CTH)”으로 규정하고, 한-아세안 FTA 등 우리 기체결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류의 추가 공정기준(재단 및 봉제) 삭제
 - **(철강)** 대부분 역외산 재료 활용이 가능한 “4단위 세번변경(CTH) 또는 부가가치 40%” 기준이며, 스테인레스강 중 일부 품목은 “6단위 세번변경(CTSH) 또는 부가가치 40%” 기준으로 완화
 - 한편, 일부 품목에서 역외산 재료의 절단 등 단순 공정은 불인정
 - **(자동차)** 완성차는 “부가가치 40%” 기준으로 한-아세안 FTA(부가가치 45%) 등 기체결 FTA 대비 완화하였으며, 부품은 “4단위 세번변경(CTH) 또는 부가가치 40%”으로 기체결 FTA 수준과 비슷
 - **(기계, 전기·전자)** 대부분 “4단위 세번변경(CTH) 또는 부가가치 40%”, 일부 품목(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을 “6단위 세번변경(CTSH) 또는 부가가치 40%”으로 기준 완화*
 - * 한-아세안 FTA는 84~85류 품목 대부분에 CTH or RVC 40% 기준 일괄 적용
 - **(농축수산물)** 신선농수산물은 대체로 “완전생산기준(WO)” 또는 “2단위 세번변경(CC)”으로 엄격한 기준을 유지, 수산물(어육 등), 낙농품(분유 등), 화초류 등 일부 품목에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여 한-아세안 FTA 등 기체결 대비 기준 완화
 - 가공식품류는 주로 “세번변경기준(CC/CTH)”을 적용하여 한-아세안 FTA(CTH or RVC40 등) 대비 기준 다소 강화

15. 원산지 증명 (제3.16조, 제3.17조, 제3.18조)

- 원산지 증명은 수출자, 생산자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수출 당사자의 발급기관이 발급하는 ①기관증명 방식과 인증수출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발급하는 ②자율증명 방식을 도입
- (증명형태) 원산지 증명은 서류 및 전자 형태 모두 사용 가능
- (시행시기) ①기관증명 및 인증수출자 자율발급은 발효 후 즉시 도입하고, ②수출자, 생산자 자율발급은 발효 후 10년(다만,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발효 후 20년) 이내 이행하고, 10년 추가 연장 가능
- (관련효과) 그간 기관발급만을 허용하던 對亞(인니는 제외), 對中 수출시에도 원산지 자율증명*이 도입되어 원산지 증명·신고 절차 간소화
- * (기존) 세관·대한상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 제출 → (변경) 인증수출자의 자율증명(발효 시) 또는 수출자·생산자의 자율증명(발효 시에서 10년後 적용) 可

< RCEP 국가와의 기체결 FTA와 원산지 증명방식 비교 >

구분	한·아세안	한·베	한·인니	한·중	한·호*	한·뉴	RCEP
제도	기관증명	기관증명	기관증명/ 자율증명	기관증명	자율증명	자율증명	기관증명/ 자율증명

* 원칙적 자율증명, 단 호주는 기관증명방식을 병행 운영

16. 인증수출자 (제3.21조)

- 수출자의 권한당국은 법과 규정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
- 수출자는 만족스런 수준의 수출 경험, 우수한 준수기록, 기록유지 체제 등의 조건을 갖춰야함

17. 특혜관세 신청 (제3.22조, 제3.23조)

- 수입 당사자는 원산지 증명에 기초하여 원산지 상품에 특혜관세대우 부여
 - 수입자는 유효한 원산지 증명을 소지하고 원산지 상품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신고서를 세관 신고서 작성
 - 수입의 관세 가격이 미화 200달러 또는 수입 당사자의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나 수입 당사자가 설정한 그 이상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원산지 증명 면제 가능
 -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필요시 수입자에게 원산지 상품 자격 및 직접 운송 조항의 충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요구
- 수입자는 수입 당사자가 법과 규정에 명시한 기간내에 원산지 증명 및 증거 등을 제시하고 특혜관세대우의 사후 신청 가능

18. 원산지 검증 (제3.24조)

- 수입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아래의 수단에 따라 검증 절차를 수행
 -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로부터의 추가 정보 서면 요청
 - 수출 당사자의 발급 기관 또는 권한당국에 추가 정보 서면 요청
 - 수출 당사자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에 대한 방문 검증 등
-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원산지 검증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특혜관세 대우의 적용을 중지할 수 있고, 해당 상품의 반출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담보 제공 요청 가능

19. 기록 유지 요건 (제3.27조)

- 수출자 및 생산자, 발급기관은 원산지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최소 3년 이상 기록을 유지하고, 수입자는 수입일로부터 최소 3년간 기록을 유지

20. 원산지 정보 교환 전자시스템 (제3.29조)

- 당사자들은 원산지 증명 절차 관련 효율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에 의하여 공동으로 결정된 방식으로 원산지 정보 교환 전자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음

4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개요

-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분야는 일관성 및 투명성, 사전심사, 상품의 반출, 특송화물, 재심사 및 불복청구 등을 규정
 - (사전심사) 수입자, 수출자 등이 품목분류, 원산지 충족여부 등의 사전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 (특송화물) 통상적인 경우, 상품 도착 및 필요 정보 제출 후 6시간 내 통관 허용 등 특송화물의 통관이 신속할 수 있도록 규정
 - (재심사 및 불복청구) 관세 관련 행정결정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불복 청구 및 재심사를 보장

상세내용

1. 일관성 및 투명성 (제4.4조, 제4.5조)

- 관세법과 규정이 관세영역에 일관되게 이행·적용되도록 보장
 - 이해관계인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능한 한 인터넷에 신속하게 관세법과 관련 절차를 공표

2. 사전심사 (제4.10조)

- 수입자, 수출자 등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품목분류, 원산지 충족여부, 관세평가 등을 미리 심사하여 알려주는 사전심사제도 규정
 - 모든 필요한 정보가 접수된 경우, 합리적인 방식으로 가능한 90일 내에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
 - 허위 정보가 제공된 경우, 사전심사결정을 소급하여 철회, 변경 또는 무효화가 가능

3. 상품의 반출 (제4.11조)

- 상품의 효율적인 반출을 위하여 간소화된 통관 절차 채택 및 유지
 - 수입상품에 부과할 관세 등이 최종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일정요건 충족 시 반출을 허용
 - 부패성 상품의 피할 수 있는 손실 또는 훼손 방지를 위해 일정 요건 하에 부패성 상품의 반출을 허용

4. 공인업체에 대한 무역원활화 조치 (제4.13조)

-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공인업체, Authorized Operator)에 대해서는 통관절차를 간소화시켜 주는 추가적인 무역원활화 조치를 제공할 것을 규정
 - 당사자 간에는 공인업체 상호 인정에 대한 협상 가능성 부여

5. 특송화물 (제4.15조)

- 특송화물의 신속한 통관 절차 채택 및 유지
 - 전자적 수단을 통한 통관정보의 일괄 제출, 통관서류 최소화, 통상적인 경우 통관정보 제출 후 6시간 내 반출 허용 등을 규정

6. 재심사 및 불복청구 (제4.18조)

- 관세당국의 행정결정에 대하여 행정적 불복청구·재심사와 사법적 불복청구·재심사를 보장
 - 행정적 또는 사법적 재심사나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 및 결정이유는 서면으로 제공

5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SPS)

개요

- WTO SPS 협정을 근간으로 인간,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면서 당사자들의 SPS 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협력·협의를 강화 등을 규정
 - 관련 국제 기준 등을 고려하여 WTO SPS 협정의 이행을 강화
 - SPS 조치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을 위한 절차 및 요건들을 명시하고, 당사자들 간 설명 및 협의 기회를 부여
 - SPS 접촉선을 지정하고 상품위원회에서 SPS 사안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당사자들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
 - 당사자들 간 SPS 분쟁은 RCEP 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하지 않되, 발효 후 3년 내에 재검토하여 RCEP 분쟁해결절차 적용여부 결정

주요 내용

1. 목적 (제5.2조)

-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면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 SPS 조치 >

- ▶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 (WTO SPS협정 부속서1 제1항)

- WTO SPS 협정의 실질적 이행과 SPS 조치에 대한 투명성 및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 소통 및 협력을 강화

2. 동등성 (제5.5조)

- WTO SPS 협정상 동등성 협력 강화 의무, 동등성 인정 절차 등 규정
 - 수출 당사자의 SPS 조치가 수입 당사자와 동등한 보호 수준을 달성하거나 동등한 효과를 가짐을 수출 당사자가 수입 당사자에 객관적으로 증명할 경우, 수입 당사자는 수출 당사자의 SPS 조치의 동등성을 인정
 - * 동등성은 단일 SPS 조치 뿐 아니라 일련의 SPS 조치들 또는 검역 체제 차원에서 인정 가능
 - 수출 당사자의 요청 시, 수입 당사자는 자국 SPS 조치의 목적 등을 설명하고, 동등성 인정을 위한 협의 개시
 - 수출 당사자는 수입 당사자의 검사, 시험 및 그 밖의 관련 절차에 대한 합리적 접근을 허용하고, 수입 당사자가 평가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 제공
 - 수입 당사자는 동등성 인정 시 수출 당사자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합리적 기한 내에 이행하되, 불인정시에는 서면으로 사유 설명

3. 지역화 (제5.6조)

- WTO SPS 협정상 지역화 개념을 인정하고 관련 절차 규정
 - 수출 당사자 요청 시, 수입 당사자는 지체 없이 지역화 결정을 위한 절차와 계획을 수출 당사자에 설명하고 수출 당사자가 제공한 정보가 충분할 경우 합리적 기한 내에 평가 개시
 - 수출 당사자는 수입 당사자가 요청한 검사, 시험 및 그 밖의 관련 절차에 대한 합리적 접근을 허용
 - 수입 당사자는 수출 당사자 요청이 있으면 평가 진행 상태 통지
 - 수입 당사자는 지역화 인정 시 수출 당사자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합리적 기한 내에 이행하되, 불인정시에는 서면으로 사유 설명

4. 위험분석 (제5.7조)

- WTO SPS 협정상 위험분석에 관한 협력 강화 의무, 위험분석 절차 진행시 유의사항 등 규정
 - 수입 당사자는 위험분석을 문서화하고, 수출 당사자에 의견 제출 기회 부여
 - 수입 당사자는 수입 당사자의 적절한 보호수준(ALOP)을 달성하기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지 않은 위험관리방안을 고려·선택
 - 수출 당사자 요청 시, 수입 당사자는 위험분석의 진전 상황을 통지하고, 지연이 있는 경우 이에 관해 통지
 - 수입 당사자의 SPS 조치 검토 개시 시점에 이미 상품 수입이 허용된 경우, 긴급조치를 제외하고는 현행 SPS 조치를 검토한다는 이유만으로 수입 중단 불가

5. 감사 (제5.8조)

- WTO SPS 위원회의 결정 및 관련 국제 기준을 고려하여 수출 당사자에 대한 감사 수행
 - * 단, 이슬람법에 따른 할랄 요건 채택·유지를 저해하지 않음
- 감사는 수출 당사자가 수입 당사자의 SPS 요건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수입 당사자가 수출 당사자 위생검역당국의 통제·관리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관련 절차 규정
 - 감사의 목적과 적용 범위 등 관련 정보는 수입 당사자와 수출 당사자 사이에 사전 교환
 - 수입 당사자는 감사 결과에 대해 수출 당사자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감사 결과 보고서나 요약본을 합리적 기한 내에 수출 당사자에 서면 제공

6. 증명 (제5.9조)

- WTO SPS 위원회의 결정 및 관련 국제 기준을 고려하여 증명요건을 적용하고, 증명 관련 유의사항 규정
 -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수출 당사자는 수입 당사자 SPS 요건에 달성한다는 것을 영어로 증명하고, 수입 당사자는 해당 요건을 영어로 제공
 - 수입 당사자는 SPS 요건 달성을 증명서 외 다른 방법으로 수출 당사자가 증명하는 것도 허용 가능
 - 증명 필요 시, 수입 당사자는 생명·건강 보호에 필요한 사항만 요구
 - 수입 당사자는 자국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출 당사자의 SPS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를 인정

7. 수입검사 (제5.10조)

- WTO SPS 위원회의 결정 및 관련 국제 기준을 고려하여 수입검사를 실시하고, 수입검사 관련 절차 규정
 - 수입검사는 수입에 관련된 SPS 위험에 기초하여 실시하고, 수입 당사자 SPS 요건에 대한 비준수 발견 시에도 그러한 위험에 상응하는 조치 및 결정이 이루어져야 함
 - 상기 비준수를 이유로 상품의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할 경우, 해당 상품의 수입업자나 그 대리인에게 통보하고, 필요시에는 수출 당사자에도 통보
 - 수입 당사자의 SPS 요건에 대한 비준수가 중대하거나 반복될 경우, 수입 당사자 또는 수출 당사자의 요청으로 적절한 개선조치 논의

8. 긴급조치 (제5.11조)

- 수입 당사자가 인간, 동·식물의 생명·건강 보호에 필요하나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긴급조치를 채택한 경우, 즉시 수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수출 당사자가 수입 당사자에게 긴급조치 관련 논의를 요청할 경우 가능한 신속하게 개최하고, 관련 정보 교환
- 수입 당사자는 채택한 긴급조치를 합리적 기한 내 또는 수출 당사자 요청 시 검토하고, 수입 당사자 요청 시 수출 당사자는 관련 정보 제공
 - 수입 당사자는 검토 결과를 수출 당사자에 제공하고, 검토 후에도 긴급조치가 유지될 경우, 수입 당사자는 요청에 따라 그 사유를 설명하고, 최신 가용정보에 기초하여 해당 조치를 정기적으로 검토

9. 투명성 (제5.12조)

- WTO SPS 협정에 따른 투명성의 중요성과 SPS 조치에 관한 정보교환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관련 절차 및 유의사항을 규정
 - WTO SPS 온라인 통보 제출 시스템이나 RCEP에 따른 접촉선을 통해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SPS 조치의 도입 또는 변경을 통보
 - 통보된 조치가 건강 보호상 시급한 문제이거나 무역 원활화 성격의 조치가 아닌 한, 통상적으로 60일 이상 의견수렴
 - 요청이 있는 경우, 수입 당사자는 WTO에 통보한 SPS 조치 초안을 30일 내, 최종본은 합리적 기간 내에 영문으로 번역하거나 영문 요약본 제공
 - 관련 당사자의 요청 시 수입 요건, 수입허용 절차 등 SPS 조치에 관한 정보를 합리적 기간 내에 제공

- 수출 당사자는 교역대상인 동물·식물 위생상황에 중대한 변화 또는 식품 안전에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입 당사자에 적절한 정보를 시의 적절하게 제공
- 수입 당사자는 SPS 비준수가 중대하거나 반복될 경우 또는 인간, 동·식물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해 잠정적으로 취해진 조치에 대한 정보 제공
- 수출 당사자는 이미 수출한 상품이 SPS 위험과 관련됐을 가능성을 확인 하는 경우 가능한 신속하게 수입 당사자에 통보하고 관련 정보 제공

10. 협력 및 역량강화 (제5.13조)

- 역량강화, 기술지원, 협업, 정보교환 등 상호 관심 있는 SPS 사안에 대한 추가 협력 기회 모색

11. 기술협의 (제5.14조)

- 다른 당사자의 SPS 조치가 무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경우 상세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 당사자는 이에 신속히 회신
- 특정 이슈에 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당사자는 신속하게 응답
 - 협의에 임하는 당사자들은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
- 협의는, 180일 또는 당사자들 간 합의한 시한 내에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요청일로부터 30일 내에 개최

12. 이행 (제5.16조)

- 당사들간 합의 시, SPS 챗터 규정 적용을 위한 양자 또는 복수국 간 약정 개발 가능

13. 분쟁해결 (제5.17조)

- RCEP 협정 발효시 SPS 챗터는 RCEP 분쟁해결절차 적용대상에서 배제
 - RCEP 발효 후 3년 내에 SPS 챗터의 RCEP 분쟁해결절차 적용 여부 검토를 완료하고, 준비된 당사자 간은 RCEP 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하되 준비되지 않은 국가는 다른 당사자와 협의 후 적용 가능

6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TBT)

개요

- 아세안·인도 등 기체결 FTA TBT 협정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절차 등에 대한 포괄적 규범 마련
 - * (한-아세안) 협력에 관한 1개 조항 vs (RCEP) 표준, 기술규정, 투명성 등 14개 조항
- RCEP의 STRACAP* 챕터 수준은 전반적으로 WTO TBT 수준, 일부 조항에서 WTO TBT 플러스 요소 포함**
 - * Chapter 6 : Standards,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 ** 협정문 규범 수준 : 한미, 한-EU > RCEP > 한-콜(WTO 수준) 등 > 한-아세안 등
- 한-베 및 한-중 FTA 등 기체결 FTA TBT 협정과 비교 시, 상대국 기술 규제 도입에 선제 대응이 가능토록 투명성을 개선*
 - * (RCEP) 신규 기술규정의 공표와 시행 사이 합리적 기간 부여 → 최소 6개월 규정

주요 내용

1.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 (제6.5조)

-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경우, 당사자는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의 개발 원칙에 관한 위원회 결정' 및 'WTO TBT 위원회'의 후속 관련 결정 및 권고를 고려

2. 표준 (제6.6조)

- 당사자의 국가표준으로 국제표준*을 수용·준수할 것을 보장

* 우리나라는 ISO(국제표준화기구), IEC(국제전기기술표준위원회) 등의 국제표준 사용 중

- 국가 표준의 개발 시 관련 국제표준의 내용 또는 구조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 다른 당사자의 요청 시 당사자는 그 내용과 구조의 차이가 무엇인지와 그 차이의 사유 제공을 장려

3. 기술규정 (제6.7조)

- 국제표준을 당사자의 기술규정의 기초로 사용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당사자 요청 시 그 사유를 설명토록 규정

< 우리나라 표준과 기술규정 운영 예시 >

- ◆ (국제표준 IEC) 리튬이차전지 관련 표준 IEC 62133 → (우리나라 국가표준으로 도입) 국가표준 KS C IEC 62133 → (우리나라 기술규정으로 활용) 안전기준 KC 62133

* KS : Korean Standard / KC : Korea Certification

- 다른 당사자의 기술규정이 당사자의 기술규정과 다르다 하더라도 기술규정의 목적을 충분히 충족시킬 경우, 당사자의 기술규정과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는 것을 고려
- 안전, 건강, 환경보호, 국가안보와 관련된 긴급 사항을 제외하고, 기술규정 공포와 효력 발생 간에 합리적 시간간격을 허용(통상적으로 6개월 이상)

4. 적합성평가절차 (제6.8조)

- 중앙정부기관이 원칙적으로 국제표준 또는 관련 부분을 자신의 적합성 평가절차의 기초로 사용하도록 보장
- 효율 증대, 중복 지양, 비용 효과적 관점에서 다른 당사자 적합성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
- 다른 당사자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수용을 촉진하는 데 광범위한 메커니즘이 존재함을 규정
- 다른 당사자 적합성 평가기관이 당사자의 적합성 평가절차에 참여하는데 있어, 가능한 경우 내국민대우를 부여할 것을 규정

5. 협력 (제6.9조)

-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절차 분야의 협력을 강화
- 상대국 요청 시,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절차에 관한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한 협력 제안을 긍정적으로 고려

6. 기술논의 (제6.10조)

- 무역 및 이 장과 관련된 현안 해결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는 기술논의를 서면으로 요청 가능하고, 요청받은 다른 당사자는 신속히 답변
- 요청받은 다른 당사자는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방안에 도달하기 위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60일 이내에 기술논의를 개시

7. 투명성 (제6.11조)

- 당사자 요청 시, 통보된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해 영문 요약본 제공 의무 부여
- 국가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절차의 개발에 관해, 대중이 접근 가능한 협의 절차에 다른 당사자 人이 참여하는 것을 허용

8. 이행약정 (제6.13조)

- 당사자 간의 상호 관심 협력분야를 규정하기 위한 약정을 개발 할 수 있으며, 상호 합의한 경우 약정을 상품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권장

9. 분쟁해결 (제6.14조)

- 발효시점에 이 장에 관한 문제는 분쟁해결(챕터 19)에 비적용되고, 이러한 비적용은 발효 2년째 되는 해에 당사자들의 검토 대상이 됨
- 검토 시 이 장의 전체 또는 부분에 대한 분쟁해결(챕터 19) 적용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며, 이 검토는 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 내 완료

개요

- RCEP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그러한 우려를 방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 장치로 RCEP 세이프가드 제도 도입
-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서 현지실사, 통보 및 협의, 핵심사실 공개 등의 절차와 관련하여 WTO 플러스 규정 도입

무역구제 주요 내용

1. RCEP 세이프가드 조치 (제7.2조~제7.6조)

- RCEP 세이프가드 조치의 적용 요건, 내용, 통보 및 협의, 조사 절차, 범위 및 기간, 기타 조건에 대한 규정 도입
 - 적용 요건
 - RCEP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다른 당사자 또는 다른 당사자들로부터의 원산지 상품 수입의 절대적 또는 상대적 급증이 동종 또는 직접 경쟁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 또는 그러한 우려를 야기하는 원인일 경우
 - 조치 내용
 - RCEP에 규정된 관세율의 추가 인하 중단 또는 조치 적용 시점의 MFN과 협정 발효일 직전일의 MFN 중 낮은 세율을 넘지 않는 수준까지 관세율 인상

○ 통보·협의

- ①조사 개시 ②피해 판정 ③조치 적용 또는 연장 ④조치의 수정 결정시 상대국에 서면 통보
- 조치 적용 또는 연장 전 이해관계자에 협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

○ 조사 절차

-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3조, 제4조제2항의 절차를 준수하고, 조사 개시일로부터 1년 내 조사 완료

○ 범위 및 기간

- 심각한 피해의 방지·구제 및 구조조정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한도 및 기간 내 적용
- 적용기간은 3년으로서 1년 연장이 가능하며, 존속기간*내 적용
- 세이프가드조치의 예상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 시 조치의 점진적인 자유화 실시
- 조치 既부과 상품은 이전 조치 종료일로부터 조치의 존속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조치의 재적용 금지(최소 1년)

* 존속기간 : 협정 발효일로부터 관세 철폐의 인하 또는 철폐 완료일 후 8년까지의 기간 (어느 상대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존속기간 종료일 3년 전 존속기간을 포함한 RCEP 세이프가드의 이행 또는 운영 검토할 수 있음.)

○ 기타 조건

- 관련 상품에 대한 모든 다른 당사자들로부터의 총 수입에서 다른 당사자로부터의 수입비중이 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당사자의 상품은 조치에서 제외
- 최빈개발도상국 당사자의 원산지 상품은 조치에서 제외

* 수입비중이 3% 미만인 다른 당사자들의 합이 9%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2. 보상 (제7.7조)

- RCEP 세이프가드 조치 적용 후 30일 내, 다른 당사자에게 보상 관련 협의 기회를 제공
 - 협의 개시 후 30일 내 보상에 대하여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조치 적용 당사자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조치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양허의 적용 정지가 가능
 - 단, RCEP 세이프가드 조치가 절대적 수입 증가로 인해 적용되었다면 조치 후 최소 3년 동안 양허 적용의 정지 금지

3. 잠정 RCEP 세이프가드 조치 (제7.8조)

-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RCEP으로 인한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 증가된 다른 당사자 또는 다른 당사자들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러한 우려를 야기하는 원인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것으로 당국이 예비 판정 시, 잠정 RCEP 세이프가드 적용 가능
 - 잠정 RCEP 세이프가드의 존속기간은 200일 이내임

4. 다자 세이프가드 조치 (제7.9조)

- GATT 제19조 및 WTO 세이프가드협정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하고, 다른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자 세이프가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약속
- RCEP 세이프가드 조치와 다자 세이프가드 조치의 동시 발동 금지

5. 반덤핑·상계관세 일반규정 (제7.11조)

- GATT 제6조, WTO 반덤핑협정과 WTO 보조금협정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함을 확인
- 현장조사 수행 최소 7일 전 사전 통보 및 현장조사의 주제와 응답자*가 준비해야 하는 증빙서류를 기술한 문서를 제공하도록 노력
 - * 당사자 조사당국이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질의서에 응답하도록 요구하는 생산자, 제조업자, 수출자, 수입자 그리고 적절한 경우, 정부 또는 정부기관을 의미

6. 반덤핑·상계관세 통보 및 협의 (제7.12조)

- 반덤핑 조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 조사개시일로부터 최소 7일전 서면 통지를 제공하도록 노력
- 상계 관세 조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 조사개시일로부터 최소 20일 전 서면 통지를 제공하고 협의를 위해 다른 당사자를 초청하도록 노력

7. 반덤핑·상계관세 제로잉 금지 (제7.13조)

- 덤핑마진을 산정, 평가 또는 검토하는 경우 모든 개별마진은 양의 값, 음의 값에 관계없이 가중평균 가격비교 및 개별거래 가격비교로 계산
 - 가중평균-개별거래 가격비교와 관련해서는, WTO 반덤핑협정 제2.4조 제2항 제2문에 따른 권리·의무를 유지함을 확인

< 제로잉 >

- ▶ 조사당국은 대상 품목의 수출가격과 정상가격(통상 국내 판매가격)의 차이를 평균하여 덤핑 마진을 산정. 제로잉(zeroing)은 덤핑 마진 산정시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아 부의 마진이 발생하는 경우에 마진을 '0'으로 처리하는 방법임

8. 반덤핑 · 상계관세 필수적 사실 공개 (제7.14조)

- 최종판정으로부터 최소 10일 전, 조치 결정에 필수적인 사실은 완전하고 의미 있는 공개를 가능한 한 보장하고, 이에 대해 이해당사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허용
 - 기한 내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접수된 경우 최종판정에 고려

9. 반덤핑 · 상계관세 비밀정보 취급 (제7.15조)

- 조사당국은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이해당사자에게 그러한 정보의 공개 요약본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 공개 요약본은 비밀정보의 합리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충분히 상세할 것을 규정

10. 반덤핑 · 상계관세 분쟁해결 비적용 (제7.16조)

- RCEP 협정의 반덤핑 · 상계관세 조항(제7.11조~제7.16조 · 부속서)에 따라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제19장(분쟁해결)에 따른 분쟁해결 이용 불가

11. 반덤핑 · 상계관세 부속서

- 부속서 7-가(반덤핑 및 상계 관세 절차 관련 관행)에서는 일부 당사자가 그들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절차 관련 관행(정보 요청 시 미흡함에 대해 시정 기회, 약속 등)에 관해 규정

개요

- RCEP 서비스 분야는 제8장 본문 및 부속서(총 3개)로 구성
 - 부속서 8가: 금융 서비스
 - 부속서 8나: 통신 서비스
 - 부속서 8다: 전문직 서비스

- 제8장 본문의 경우,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의 모든 조치에 적용되며, 주요 의무로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시장접근 제한조치 도입 금지, 현지주재 의무 부과 금지가 있으며, 그 외 투명성 제고, 자격상호 인정, 지불 및 송금, 국내규제 등을 규율
 - 서비스 시장개방 원칙으로 포지티브·네거티브 2가지 방식을 모두 허용 하되, 향후 모든 참여국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약속
 - ※ 포지티브 발효국의 경우, 발효 후 6년 이내(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15년 이내) 네거티브로 전환

- 부속서 8가(금융 서비스)의 경우, 금융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되며, 신금융서비스 공급 원활화, 정보 이전 허용 등을 규정하면서도 건전성 조치 예외를 포함

- 부속서 8나(통신 서비스)의 경우, 통신 서비스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조치에 적용되며, 통신서비스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범 등을 규정

- 부속서 8다(전문직 서비스)의 경우, 당사자 관련 기관간 상호 수용이 가능한 분야에서 전문직 자격을 인정하도록 독려

상세내용

1. 적용범위 (제8.2조)

-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의 모든 조치
 - 다만, 정부조달, 정부 보조금, 정부권한 행사로 제공되는 서비스, 해상운송 서비스 중 연안운송, 항공 운송 서비스*는 제외
 - * 항공 운송 서비스 중 항공기 유지 및 보수, 항공 운송 관련 판매 및 마케팅,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 특수 항공 서비스, 지상 취급 서비스, 공항 운영 서비스는 협정 적용대상에 포함

2. 일반적 의무

- 내국민 대우 (제8.4조)
 - RCEP 서비스 양허표상 당사자의 양허 내용과 조건에 따라, 당사자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당사자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
- 최혜국 대우 (제8.6조)
 - RCEP 서비스 양허표상 당사자의 양허 내용과 조건에 따라, 협정 비당사자의 동종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당사자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
- 시장접근 (제8.5조)
 - ① 서비스 공급자의 수 제한, ②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 제한, ③ 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서비스 총 산출량의 제한, ④ 고용인의 총 수 제한, ⑤ 사업자의 법적 형태(법인, 합작투자 등) 제한, ⑥ 외국인 자본 참여를 제한하는 규제 도입 금지

□ 현지주재 (제8.11조)

- 국경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대표사무소, 지점 등의 설치 또는 거주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

※ 서비스 시장개방 방식에 따라 상기 일반적 의무에 대한 양허목록(포지티브 방식) 또는 유보목록(네거티브 방식) 기재방식 상이

참고 : 서비스 자유화 방식	
①	Positive 자유화 방식: 개방하려는 분야를 양허에 모두 열거하고, 열거한 분야에 시장접근(MA), 내국민 대우(NT) 의무에 대한 제한 및 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모두 기재
②	Negative 자유화 방식: 모든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전제로 하되, 특정 분야에 대해 내국민 대우(NT), 최혜국 대우(MFN), 시장접근(MA), 현지주재(LP) 의무를 제한하는 조치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유보에 기재하고, 유보에 기재하지 않은 분야는 개방된 것으로 간주

3. 투명성 (제8.14조)

- 서비스 무역을 규율하는 투명한 조치가 시장접근과 서비스 공급자의 영업을 위한 능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함을 인정하고, 각 당사자는 서비스 무역 규제의 투명성을 증진할 것을 규정

4. 국내 규제 (제8.15조)

-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보장
-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결정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행정 결정에 대한 적절한 구제를 제공할 사법, 중재, 행정 재판소 등을 설치하거나 유지할 의무
- 자격 요건 및 절차, 기술표준 그리고 면허 요건 관련 조치가 서비스 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을 구성하지 않도록, 각 당사자는 다음을 보장하도록 노력할 의무

- 1) 서비스를 공급할 자격 및 능력과 같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기초할 것, 2)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의 부담을 지우지 않을 것, 3) 면허절차의 경우, 그러한 조치 자체가 서비스 공급에 대한 제한이 아닐 것
- 서비스 공급에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 신청서의 제출 이후 합리적 기간 내에 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보(신청이 종료 또는 거절되는 경우 가능한 한 서면 통보)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의 처리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
 - ※ 당사자가 내국민 대우 또는 시장접근 의무에 대한 조건 및 제한(포지티브) 또는 유보(네거티브)를 기재한 경우, 기재된 분야 또는 조치에는 미적용

5. 인정 (제8.16조)

- 특정 국가에서 습득한 교육이나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나 증명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정은 조화 또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하거나, 관련 국가와의 협정 또는 약정에 기초하여 부여 가능
- 당사자에게는 이와 같은 인정을 위한 협정 또는 약정을 교섭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

6. 지불 및 송금 (제8.19조)

- 당사자는 자신의 약속과 관련된 경상거래에 대한 국제 송금 및 지불을 제한하지 않을 의무
- 단, 제17.15조(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조치)에 따라, 당사자가 심각한 국제수지 및 대외적 금융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서비스 양허에 관련된 거래에 대한 지불 또는 송금을 제한 가능

7. 혜택의 부인 (제8.20조)

□ 다음 경우 협정상 혜택을 부인하는 것이 가능

- ① 서비스가 비당사자 영역으로부터 또는 영역에서 공급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그러한 서비스 공급에 대해,
- ② 서비스 공급자가 법인이고, 해당 법인이 다른 당사자의 서비스 공급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경우,
- ③ 해상운송 서비스가 1) 비당사자 법과 규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의해 공급되고, 2) 선박을 전부 또는 일부 운영하거나 사용하는 비당사자 인에 의해 공급됨을 입증하는 경우,
- ④ 다른 당사자의 서비스 공급자가 비당사자 국적의 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고, 혜택을 부인하는 당사자가 해당 비당사자 또는 비당사자의 해당 인에 대하여 1) 거래금지 조치 또는 2) RCEP 상의 혜택이 해당인에게 부여될 경우 위반이 발생하거나 우회가 가능해질 조치를 채택·유지하는 경우

금융서비스 (부속서 8-가)

1. 적용범위 (제2조)

- 원칙적으로 금융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의 모든 조치에 적용
- 다만, 당사자가 당사자의 영역에서 공급하는 다음의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음
 - 중앙은행, 통화당국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이 통화 또는 환율정책 추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
 - 법정사회보장제도 또는 공적퇴직연금제도의 일부를 구성하는 활동
 - 공공기관이 정부의 계좌로, 정부의 보증 하에, 또는 정부의 금융재원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그 밖의 활동

2. 신금융서비스 (제3조)

- 각 유치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금융기관이 신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노력
 - 추가적 입법행위 없이 신금융서비스가 당사자 국내법상 허용될 것
 - 당사자가 동종 상황에서 당사자의 금융기관이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 것

3. 건전성 조치 (제4조)

- 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을 포함한 건전성 사유로 조치를 취할 당사자의 권한을 확인(예시규정)
 - 투자자, 예금자, 보험계약자 등 금융소비자 보호
 - 금융제도의 완전성과 안전성 보장
 - 건전성 사유에는 지급·청산 제도의 안전성, 금융·운영상 완전성 뿐 아니라 개별 금융기관·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성 또는 금융 책임 유지가 포함됨

- 건전성 예외를 인정하는 한편, 당사자의 약속 또는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건전성 조치를 남용하지 않도록 약속

4. 투명성 (제7조)

-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활동을 규율하는 투명한 조치가 다른 당사자 시장에 대한 접근과 다른 당사자 시장에서의 영업 촉진에 있어 중요함을 인정하고 금융서비스 규제의 투명성 증진에 합의
- 투명성 증진을 위해 당사자는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 금융서비스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당사자 규정의 사전 공표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시 기회 제공
 -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최종 규정의 공표일과 발효일간에 합리적 기간을 허용하기 위해 노력

5. 정보의 이전 및 정보의 처리 (제9조)

- 각 당사자가 정보의 이전 및 정보의 처리에 관한 자국만의 규제 요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
- 당사자가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
 - 자국에서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일상적인 영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전자적 또는 그 밖의 수단에 의한 데이터 이전 포함) 이전을 금지하는 조치
 - 자국에서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일상적인 영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처리를 금지하는 조치
- ※ 단, ① 당사자가 규제 또는 건전성 사유로 데이터 관리 및 저장 등과 관련된 자국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음, ② 개인정보 및 사생활 등을 보호할 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음, ③ 당사자가 약속하지 않은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 또는 해외 소비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음

통신서비스 (부속서 8-나)

1. 적용범위 (제2조)

- 공중 통신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의 조치에 적용되며, 아래 사항을 포함
 -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관련된 조치
 -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에 관한 의무에 관련된 조치
- 다만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케이블 또는 방송 배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케이블 또는 방송 서비스 공급자가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 제외)는 적용 배제

2. 규제에 대한 접근방식 (제3조)

- 통신 서비스 공급에 넓은 선택권을 부여하고 소비자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경쟁시장의 가치를 인정하며, 유효경쟁이 존재하는 경우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
 - 규제 필요성과 접근방식이 시장마다 다름을 인정하고, 각 당사자가 동 부속서에 따른 의무 이행 방법을 결정할 수 있음을 인정
- 이러한 측면에서 당사자가 특히 다음을 할 수 있음을 인정
 -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되거나 이미 시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접 규제에 참여 가능, 또는
 - 경쟁적인 시장에 대해 시장 원리 역할에 의존 가능

3. 공중통신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 (제4조)

- 당사자로 하여금 다른 당사자의 사업자가 공중통신망 및 서비스에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고 투명한 조건으로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명시
- 공공서비스의 책임성 확보 또는 공중통신망 및 서비스의 기술적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당사자 사업자의 접근 및 이용에 대해 일정한 조건* 부여 가능
 - ※ 공중통신망 및 서비스와의 접속을 위한 구체적 기술 요건, 통신서비스의 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 확보를 위한 요건, 단말기 등 장비의 공중통신망 부착과 관련된 기술 요건, 전용 또는 소유 회선의 공중통신망 또는 서비스와의 접속 제한, 통보 및 면허 요건 등을 예시적으로 규정

4. 번호이동성 (제5조)

- 공중통신사업자가 실현 가능한 한도에서 시의적절하게 합리적이고 비차별적 조건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한 번호이동성을 제공하도록 보장
 - ※ 번호이동성(number portability): 통신서비스 이용자가 가입회사를 변경해도 기존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5. 경쟁보장장치 (제6조)

- 지배적 사업자인 공급자가 교차보조 행위 등 반경쟁적인 관행에 관여하거나 지속하는 것을 금지
 - ※ 교차보조(cross-subsidization): 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독점력을 통해 획득한 초과이윤을 경쟁적인 다른 통신시장에 종사하는 자회사·계열사 등에 보조하는 행위

6. 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대우 (제7조)

-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당사자의 공중통신사업자에게 다음과 관련하여 자회사·계열회사 등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도록 보장
 - 공중통신서비스의 이용가능성, 공급, 효율, 품질 및 상호접속에 필요한 기술적 인터페이스의 이용 가능성

7. 재판매 (제8조)

- 당사자는 경쟁 증진 또는 최종이용자의 장기 이익에 혜택을 주기 위하여 어떤 공중통신 서비스가 지배적 사업자에 의해 재판매용으로 제공되어야 하는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결정 가능
 - 지배적 사업자에 의해 재판매용으로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를 결정한 경우, 당사자는 지배적 사업자가 재판매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지 않도록 보장
 - ※ 재판매(resale) : 다른 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 설비 또는 통신서비스를 도매로 구입하여 일반이용자에게 소매로 제공하는 것

8. 상호접속 (제9조)

- (공중통신사업자) 다른 당사자 사업자에게 상호접속을 제공
- (지배적 공중통신사업자) 다른 당사자 공중통신서비스 공급자의 설비 및 장비를 위한 상호접속을 투명하고 합리적인 조건과 원가지향적인 효율로 비차별적으로 제공
 - ※ 지배적 사업자와 상호접속을 위해서는 표준상호접속협정, 발효 중인 상호접속협정의 조건, 또는 상업적 협상을 통한 새로운 상호접속협정 중 최소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 보장

9. 전용회선 서비스의 공급 및 가격 책정 (제10조)

- 다른 당사자 서비스 공급자에게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고 투명한 조건과 요율로 전용회선 서비스 제공

※ 전용회선(leased circuits): 공중통신사업자와의 임차 계약에 따라 특정 사용자가 원하는 두지점간 또는 다지점간을 직통으로 연결하여 독점 사용하는 전기통신회선

10. 설비병설 (제11조)

- 상호접속에 필요한 장비의 물리적 설비 병설을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으로 제공

11. 보편적 서비스 (제13조)

- 각 당사자는 자국이 유지하려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의 종류를 정의할 권리를 보유하며, 이러한 의무는 그 자체로 반경쟁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

※ 다만, 그러한 의무는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경쟁중립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그 당사자가 정의한 종류의 보편적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것보다 더 부담을 주지 않을 것

12. 희소 자원의 분배 및 이용 (제15조)

- 주파수·번호 등 희소 통신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절차를 객관적이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 방식으로 운영

- 공중통신 서비스 공급자의 수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전파 및 주파수 관리 조치를 수립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리 보유

13. 전주, 관로 및 도관에 대한 접근 (제20조)

-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당사자의 사업자에게 전주, 관로 및 도관의 이용 등을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 및 요율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14. 통신 분쟁의 해결 (제23조)

- 동 부속서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당사자 공중통신 서비스 공급자가 당사자의 통신규제기관 등에 시의적절하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보장

전문직서비스 (부속서 8-다)

- 각 당사자는 전문직 자격을 인정하고 면허 또는 등록 절차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간 대화 수립을 장려

- 각 당사자는 상호 관심 있는 분야의 자격, 면허 또는 등록의 상호 인정을 위하여 다른 당사자 또는 관련 기관과 모든 형태의 약정을 협상하도록 장려

- 다른 당사자 요청 시, 실행 가능한 경우 다른 쪽 당사자에 자국 전문직 서비스 공급자의 면허 및 증명을 위한 표준 등 관련 정보를 제공

개요

- 당사자 간 교역 증진의 일환으로 당사자의 출입국조치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당사자의 자연인에 대한 입국 허용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으로서, 이민·구직행위 등은 불포함
- 적용범위, 일시입국의 허용, 분쟁해결, 투명성 등 총 9개의 조항과 1개의 부속서로 구성
- (주요내용) 일시 입국 및 체류를 원활하게 보장하기 위한 내용 규정
 - 자연인의 일시입국 신청에 대한 신속한 처리, 신청인의 요청 시 신청 처리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 노력, 합리적인 신청 수수료 보장
 - 모든 관련 출입국 절차 설명자료 및 일시 입국에 대한 요건 공표
 - 역내국 간 일시입국 및 일시체류를 보다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합의된 협력분야를 논의하는 등 협력
 - 입국 거부 관련 분쟁 발생시, 일정요건 하에 제19장 분쟁해결절차에의 회부 가능
- (양허) 각 국가는 동 챕터의 적용범위 내 Mode 4 유형*에 대하여 자국에의 일시입국 및 체류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양허표에 작성
 - * 상용방문자(BV), 기업내 전근자(ICT), 계약서비스공급자(CSS), 독립전문가(IP) 등
 - 대다수 국가가 상용방문자, 기업내 전근자를 기본으로 양허하였고 한, 중, 일, 호주, 베트남은 계약서비스공급자도 양허에 포함
 - 다만, 일본·뉴질랜드는 독립전문가까지 양허 대상에 포함하였고 싱가포르 가장 협소하게 기업내 전근자에 대해서만 양허

상세내용

1. 적용범위 (제9.2조)

- 당사자 자연인의 다른 당사자 영역으로의 입국 또는 일시적 체류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당사자의 조치에 적용
- 자연인의 일시이동 첩터는 고용시장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연인이나 영구적 차원의 국적, 시민권 또는 거주나 고용에 관한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음

2. 일시입국의 허용 (제9.3조)

- 일시입국을 하고자 하는 자연인이 출입국 절차를 위한 신청절차 및 모든 관련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속서에 명시된 자국의 구체적 약속에 따라 일시입국 및 체류를 허용함

3. 신청의 처리 (제9.6조)

- 각 당사자는 출입국 절차를 위한 신청을 수령한 뒤,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
- 요청이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합리적인 기간 내 신청의 접수, 승인되었을 경우 체류기간 및 그 밖의 조건을 포함하여 신청과 관련된 결정을 통보
 -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신청 상태를 통보하기 위해 노력

4. 분쟁해결 (제9.9조)

- 양 당사자는 이 장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이견을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
- 다만 일시입국 허용 거절에 관해, ① 그 사항이 반복된 관행과 관련이 있고, ② 해당 당사자의 자연인이 가능한 모든 행정적 구체절차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제19장(분쟁해결)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 적용 가능

개요

- RCEP 투자 분야는 제10장 본문(①정의, ②투자규범) 및 관련 부속서로 구성
 - 정의 조항(제10.1조)에서는 투자챕터상 관련 용어 정의를 규정
 - 투자규범 조항(제10.3조~제10.17조)에서는 외국인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해 투자유치국 정부가 제공해야 하는 대우 및 예외를 규정
 -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투자의 대우, 손실에 대한 보상, 투자관련 이행요건 부과 금지,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국적 제한 금지, 비합치조치*, 송금 보장, 혜택의 부인 등
 - * 투자 챕터상 일부 의무(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이행요건,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부합하지 않는 비합치조치를 유보목록에 기재
 - 작업계획 조항(제10.18조)에서는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절차(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등에 대해 협정 발효 2년 내 논의를 개시하고, 논의 개시 3년 내 타결할 것을 규정
 - 관련 부속서에서는 국제관습법, 간접수용 판단 법리에 대해 규정
- 투자 유보 목록 작성에 합의하여, 각국 현재·미래 유보를 별도의 부속서로 작성

상세내용

1. 정의 (제10.1조)

□ (투자)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하며, 자본 또는 기타 자원의 약속, 이득 또는 이윤에 대한 기대, 위험의 감수 등과 같은 투자의 성격을 가진 모든 자산으로서, 아래 형태를 포함

- ① 주식, 증권, 기타 기업의 지분 참여
- ② 채권, 회사채, 기타 채무증서 및 대부
- ③ 완성품 인도, 건설, 경영, 생산, 양허, 수익배분 및 기타 유사한 계약
- ④ 지식재산권
- ⑤ 면허, 인가, 허가 및 국내법에 따라 부여되는 유사한 권리
- ⑥ 동산 또는 부동산, 리스, 저당권, 유치권, 질권 등 관련 재산권*

* 시장점유율, 시장접근, 기대이익, 이윤창출 기회는 그 자체로서 투자가 아님을 명시하는 각주 추가

○ 그러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상업적 계약 또는 그러한 상업적 계약과 연결된 신용의 공여로부터만 발생하는 지급청구권은 투자에 해당되지 않음

□ (투자자) 다른 당사자의 영역에 투자하고자 시도하거나*, 투자 중이거나, 이미 투자한 다른 당사자의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

* 구체적인 투자 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설립전 투자로 인정한다는 각주 추가

2. 적용범위 (제10.2조)

□ 외국인투자자 및 적용대상투자자와 관련된 당사자의 조치

○ 협정 발효 전에 발생한 사실 및 행위, 발효 이전에 종료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소급효 배제)

3. 내국민 대우 (제10.3조)

- 다른 당사자의 투자자 및 적용대상투자자에 대해 동종 상황* 하에서 내국민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할 의무

* '동종상황' 판단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함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에 의해 차별이 정당화되는 경우도 고려하도록 규정

- 설립전 투자(설립, 인수, 확장)에 대해서도 내국민 대우를 보장
- 연방제를 취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내주민 대우 부여 약속

< 내주민 대우 >

- ▶ 특정주(A주) 내에서 FTA 체결 상대국 투자자에게 A주 주민과 동등한 대우를 제공. 이에 비해 타주민 대우는 특정주(A주) 내에서 FTA 체결 상대국 투자자에게 A주 주민과 동등한 대우는 아니나, 다른주(B주)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제공하는 것으로, 내주민 대우가 타주민 대우보다 더 우월한 대우

4. 최혜국 대우 (제10.4조)

- 외국인투자 및 투자자에 대해 동종 상황*에서 제 3국(다른 당사자 및 비당사자)의 투자 및 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 부여

* '동종상황' 판단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함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에 의해 차별이 정당화되는 경우도 고려하도록 규정

- 다른 협정에서 이 협정보다 유리한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이 협정의 당사자에게 자동적으로 그러한 추가적 혜택이 부여
- 다만 동 최혜국 대우는 다른 국제협정상의 국제분쟁해결 절차(ISDS 등)나 메커니즘을 포함하지 않음

5. 투자의 대우 (제10.5조)

-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국제관습법에 따른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fair and equitable treatment, FET)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보장
 - ※ RCEP의 다른 규정 위반 또는 그 외 국제협정 위반이 있었다는 판정이 있었다 하여 곧바로 제10.5조 위반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함

6. 이행요건 금지 (제10.6조)

-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 매각 등에 대하여 아래의 이행의무를 금지
 -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수출,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국내재료 사용, 국내상품 사용, 수출과 수입간의 연계, 수출과 판매간의 연계, 기술이전, 특정지역으로의 독점공급, 일정 비율 또는 금액의 로열티 채택 등 8가지
 - 단, 이 중 인센티브 제공의 조건으로서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수출 △기술이전 △특정지역으로의 독점공급 △일정 비율 또는 금액의 로열티 채택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은 협정상 금지되지 않음
- △생산 입지 △서비스 공급 △근로자 훈련·고용 △특정 시설의 건설·확장 △연구·개발 수행이 당사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또한 협정상 금지되지 않음

7.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제10.7조)

- 외국투자기업의 고위경영진 임명에 국적요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
- 외국투자기업의 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산하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에 대한 국적요건 및 거주요건은 부과 가능

- 단, 그러한 요건이 외국인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자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아야 함

8. 유보 및 비합치 조치 (제10.8조)

- 유보목록에 기술된 조치에 대해서는 협정상 의무에 대한 예외를 아래와 같이 규정
 - ① 내국민대우(NT), ② 최혜국대우(MFN), ③ 이행요건(PR) 금지, ④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SMBD) 조항에 합치하지 않는 조치를 협정 부속서 유보목록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동 조치에는 상기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9. 송금 (제10.9조)

- 최초출자금, 이윤, 자본이득, 배당, 이자, 로열티 등을 자유롭게, 그리고 지체없이 당사자 내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규정
 -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
 - 파산, 지급불능, 채권자 보호, 증권 등의 거래, 형사범죄, 법 집행 또는 금융규제당국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법 또는 행정절차에서의 명령이나 판결의 준수 보장, 과세, 사회보장, 공적퇴직연금, 퇴직금, 중앙은행이 부과하는 형식 등록 요건 등
- 송금 보장 조항의 예외로서 외환위기 시 자본거래 통제 등 단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인정하고, 이를 일반 규정 및 예외 챕터 제17.15조(국제수지 보호조치)에 규정

10. 대위변제 (제10.12조)

- 당사자의 지정된 기관이 투자에 부여한 보증·보험계약 등에 따라 자국 투자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불한 경우, 투자가 이루어진 영역의 다른쪽 당사자는 그 투자에 관련된 모든 권리 또는 청구가 대위되거나 이전됨을 인정

11. 수용 (제10.13조)

- 정부는 1) 공공목적을 위해 2)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3) 보상을 지불할 것을 전제로, 그리고 4) 적법절차에 따라 투자자의 재산을 수용 및 국유화할 수 있으나, 보상은 지체 없이 지불할 것 등을 규정
- 또한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 없이도 당사자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직접수용과 동등한 정도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간접수용에 대해서도 정당한 보상을 제공할 것을 규정
 - ※ 간접수용의 판정 법리 및 예외적 상황 등에 대해서는 부속서 10-나(수용)에서 규정

12. 혜택의 부인 (제10.14조)

- 다음에 대해서는 협정상 혜택을 부인하는 것이 가능함을 규정
 - ① 제3국인 또는 혜택부인 당사자의 인이 소유하고 다른 당사자 내에서 실질적으로 영업하지 않는 다른 당사자의 법인(이른바 paper company),
 - ② 제3국인이 소유하고 협정당사국이 거래를 금지하는 다른 당사자의 법인,
 - ③ 협정당사국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있는 제3국인이 소유하는 다른 당사자의 법인

수용 (부속서 10-나)

- 직접수용 및 간접수용의 정의와 간접수용의 판단 법리를 규정
 - 간접수용을 ‘당사자의 행위가 명의의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가 없더라도 직접 수용과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국가조치’라고 정의
 - 간접수용 해당 여부 판단은 ① 정부행위의 경제적 영향, ② 정부행위가 투자자에 대한 정부의 구속력 있는 사전 서면약속을 위반하는지 여부, ③ 정부행위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결정
 - 상기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가격안정화 등 정당한 공공복지*를 위한 비차별적인 정부의 규제 행위는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
- *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은 한정적이지 않음
-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간접수용 판단법리에 한국 대법원의 수용 법리상 원칙인 ‘특별희생’ 법리를 추가하여 정부조치로 인하여 특정 투자자에게 “공익을 위하여 감수해야 할 범위를 초과하는 ‘특별한 희생’이 투자자 또는 투자에 부과되었는지 여부”가 정부조치의 성격을 판단하는데 고려될 수 있음을 규정

개요

- 저작권·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재권 전반에 걸쳐 WTO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이상의 보호 규범을 마련
 - 일부 분야에서는 CPTPP 등 최근 통상규범과 유사하거나 현대적인 규범 요소(예: 악의적으로 출원된 상표의 출원 거절 의무, 부분디자인 보호, 유전자원·전통지식 등)를 포함함
 -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구제 및 지재권 침해 의심물품에 대한 통관 보류가 가능하게 하는 등 집행규범 전반에 걸쳐 WTO TRIPs 이상의 보호 규범을 포함하여 지재권 침해에 대해 실효적 구제장치 마련함
 - 특히, 온라인 지재권 침해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구제절차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

주요 내용

< 일반 조항 >

1. 내국민대우 (제11.7조)

- WTO TRIPs 및 다자 협정에서 규정된 예외에 따라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고, 보호 범위에 효과적인 기술조치** 및 권리 관리 정보*** 포함
 - * 지식재산의 보호에 대하여 자신의 국민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당사자들의 국민에게 부여
 - ** CD 복제 방지, 웹페이지 마우스 우클릭 금지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조치
 - *** 저작권자 식별을 위한 로고 또는 워터마크(예: 방송화면 상단의 방송사 로고)

2. TRIPs 협정과 공중보건 (제11.8조)

- WTO TRIPs 및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 선언을 재확인하고,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취하는 조치를 금지하지 않을 것에 동의하고, 모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하는 것을 지지

3. 다자협정과의 관계 (제11.9조)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다자 협정의 비준·가입을 의무화하거나 노력하고, 특정 당사자가 협정을 비준·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 규정 도입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

4. 저작자·저작인접권자의 배타적 권리 (제11.10조)

- 저작자에게 저작물을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공중에게 전달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 제공
-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도 그 음반에 고정된 실연과 음반을 각각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 제공
- 저작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어떠한 방식 또는 형태로든 저작물 및 음반에 고정된 실연 및 음반의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제공

5. 방송에 대한 보상청구권 (제11.11조)

-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는 방송을 위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의 직·간접적인 사용에 대하여 공평한 보상에 대한 권리 또는 로열티를 받을 권리를 향유

6. 방송사업자의 배타적 권리 (제11.12조제1항)

- 방송사업자에게 최소한 무선 수단에 의한 그들의 방송의 재방송*, 방송의 고정** 및 방송의 고정물의 복제를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제공

* 재방송 : 방송사에서 송출한 신호를 동시에 다른 매체로 송출하는 행위로서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동시중계방송을 의미

** 고정(fixation) : 방송을 녹화하는 행위 및 녹화한 방송을 배포·송신하는 행위

7.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신호의 보호 (제11.12조제2항)

-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신호가 배포자의 허락 없이 해독된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①수신, ②배포 또는 ③수신 및 추가 배포한 행위에 대하여 조치를 제공하도록 노력

8. 집중관리단체 (제11.13조)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집중 관리를 위한 적절한 단체(집중관리단체)의 설립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

*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방송사업자의 권리 등

- 집중관리단체가 로열티의 징수 및 분배에 대한 투명하고 공개된 기록을 관리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장려

9.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 (제11.14조)

-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에 관하여 저작자,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가 허락하지 않거나 법·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제한하는 효과적인 기술 조치*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구제 제공

* 기술적 보호조치 : 권리침해행위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기술적 장치나 수단을 활용해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보호조치 (예: DVD 복제방지기술)

10. 전자적 권리 관리 정보의 보호 (제11.15조)

- 권한 없이 고의로 전자적 권리 관리 정보*를 제거·변경하거나 제거·변경 사실을 알면서 저작물, 음반에 고정된 실연, 음반의 복제물을 배포·수입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효과적인 법적 구제 제공

* 권리관리정보 : 저작물·실연·음반, 저작자·실연자·음반제작자(권리자) 식별 정보 또는 저작물·실연·음반의 이용조건에 관한 정보 등

11. 정부의 소프트웨어 사용 (제11.17조)

- 중앙 정부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적절한 법·규정 또는 정책을 유지하고, 지역 및 지방 정부 또한 유사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도록 장려

< 상표 >

12. 비전형 상표 및 단체표장·증명표장 보호 (제11.19, 20조)

- 이름, 글자, 숫자, 3차원 도형, 색깔 및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된 상표 및 소리로 구성된 상표 등록 가능
- 상표의 보호 범위에 단체표장 및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표지 포함

13. 상표 등록 및 출원 (제11.22조)

- 상표 등록 전·후 과정에서 이의제기 등 불복절차를 제공하고, 상표 등록 거절 사유에 대한 통지를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제공
- 상표의 출원·등록을 위한 전자출원제도 및 상표 출원·등록에 관해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전자적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도입

14. 유명상표 보호 (제11.26조)

-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유명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사용이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상표의 등록 거절·등록취소·사용금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 어떠한 상표가 유명상표인지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그 상표가 등록되어 있거나, 유명상표 목록에 등재되어 있거나 또는 유명상표로 사전에 인지되었을 것을 요구하지 않음

15. 악의적 상표의 출원 거절·등록취소 (제11.27조)

- 상표 등록을 위한 출원이 사용할 의도 없이 악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한당국이 법·규정에 따라 출원을 거절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규정

16. 다상표 출원 (제11.28조)

- 상표 등록을 위하여 하나의 출원으로 니스 협정*에 의하여 수립된 상표 분류 체계의 분류와 관계없이 다수의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상품·서비스 조합에 출원할 수 있음

*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 협정」

< 지리적 표시 >

17. 지리적 표시의 보호 (제11.29조)

- 지리적 표시를 상표 제도, 독자적 제도 또는 그 밖의 법적 수단을 통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단을 통해 보호하도록 보장

18. 지리적 표시 보호의 이익제기·취소 등 절차 규정 (제11.30조)

- 상표 또는 독자적 제도를 통해서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위한 국내 행정 절차를 제공하는 경우, 그 보호를 위한 출원에 대하여 이익제기 절차 및 지리적 표시에 부여되는 보호의 취소를 위한 절차 규정

19. 지리적 표시의 이익제기 및 취소 근거 (제11.31조)

- 이익제기의 근거로 지리적 표시가 그 당사자 영역에서 관련 상품에 대한 보통 명칭으로서 통용어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 포함
 - 보통 명칭으로서 통용어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지 결정할 때, 권한 당국이 소비자가 그 당사자 영역 내에서 그 용어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고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보장
 - 그러한 소비자 이해와 관련된 요소로 ①그 용어가 사전, 신문 및 관련 웹사이트와 같은 권한 있는 출처에 표시된 것과 같이 해당 상품 유형을 지칭하기 위하여 사용되는지 여부, ②그 용어에 의하여 참조되는 상품이 그 당사자의 영역에서 어떻게 판매되고 거래에 사용되는지를 포함할 수 있음
- 취소 근거 관련, 보호되는 용어가 원래 부여되었던 보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리적 표시의 보호가 취소 또는 중단될 수 있음

20. 지리적 표시의 복합 명칭 (제11.32조)

- 지리적 표시로 보호되는 복합 명칭의 일부인 개별 명칭은 그 개별 명칭이 당사자의 영역에서 관련 상품을 위한 보통 명칭으로서 통용어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 경우 그 당사자 영역에서 보호되지 않음

21. 국제협정에 따른 지리적 표시의 보호 (제11.34, 35조)

- 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일 후에 체결한 국제협정에 따라 지리적 표시를 보호 또는 인정하는 경우* 다음을 준수하여야 함
 - * ① 당사자 또는 비당사자가 참여하는 국제협정에 따라 지리적 표시를 보호·인정하고,
 - ② 그 협정이 그 당사자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 후 체결되고,
 - ③ 그 지리적 표시가 이 협정상 언급된 국내 행정절차(제11.30조)를 통하여 보호되지 않는 경우
- 지리적 표시의 보호·인정 절차 관련 정보 및 세부 사항을 공중이 이용 가능하도록 함
- 이의제기 절차를 위하여 지리적 표시를 공표하고, 지리적 표시가 그 당사자 영역에서 관련 상품에 대한 보통 명칭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근거로 이의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
- 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체결된 국제협정에 따라 새로운 지리적 표시를 보호·인정하는 경우, 보호·인정 전 합리적인 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 보장

< 특허 >

22. 특허 대상 및 특허 제외 범위 (제11.36조~40조)

- 발명이 신규성이 있고 진보성을 수반하며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경우 모든 기술 분야에서 물건 또는 방법에 관한 어떠한 발명에 대해서도 특허 가능
- 아래 사항은 특허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인간·동물·식물의 생명·건강 보호, 환경 피해 방지,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 보호 등을 위해 상업적 이용의 금지가 필요한 발명
 - 인간 또는 동물의 진단·치료·수술 방법
 - 미생물을 제외한 동물·식물, 이들의 생산에 이용되는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절차

- 특허에 의하여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에 대하여 제한적인 예외가 가능하며, 특허 발명의 대상과 관련된 실험적 목적으로 행해지는 행위의 경우에는 배타적 권리에 대한 예외에 한정하지 않고 특허의 실시 가능

*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해당 물건의 제조, 사용, 판매, 수입 등 금지, 해당 방법 사용 및 그 방법에 의하여 획득된 물건의 사용 등 금지

23. 특허 심사 및 등록의 절차 (제11.41조)

- 특허 제도의 모든 사용자 및 공중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특허 제도의 효율성 향상, 권한 당국의 절차와 과정의 단순화 및 간소화의 중요성 인정
- 특허 출원인에게 출원의 보정 및 의견 진술, 이의제기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특허 부여 거절시 서면으로 사유를 제공하도록 규정
- 특허 등록 이후 제3자가 해당 특허 부여에 대한 이의제기, 취소, 무효 등을 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24. 특허 공지 예외 (제11.42조)

- 발명의 신규성 판단시 발명의 특정 공지를 고려하지 않도록 하는 특허 공지 예외*의 이점 인정
- * 원칙적으로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은 신규성이 없으나, 공지예외제도는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된 때에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그 발명은 선행기술에서 제외

25. 전자 특허 출원 제도 장려 (제11.43조)

- 특허 출원인에 의한 출원의 편의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 특허 출원 제도를 채택하도록 장려

26. 18개월 공개 (제11.44조)

- 특허출원이 조기에 공개되었거나 취하, 포기 또는 거절되지 않는 한, 출원일부터 또는 (우선권이 주장되는 경우) 최선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후 신속하게 출원을 공개

27. 인터넷상에서 대중에게 공개된 선행기술 정보 (제11.45조)

- 인터넷상에서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가 선행 기술의 일부를 형성할 수 있음을 인정
 - ※ 특허심사 시 인터넷에 공지된 해외문헌도 선행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신규성 국제주의제도 반영

28. 특허 우선 심사제도 도입 노력 (제11.46조)

- 특허 출원인이 자신의 특허 출원의 심사를 신속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국내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노력

29. 식물 신품종 보호 (제11.48조)

- 효과적인 식물 품종 독자적 보호 제도를 통하여 식물 신품종의 보호

< 산업 디자인 >

30. 산업 디자인의 보호 (제11.49조)

-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 또는 이를 고려한 전체 디자인의 보호 인정
- 산업 디자인의 소유자에게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제3자가 상업적 목적으로 디자인의 복제 또는 실질적 복제인 디자인을 지니거나 형체화한 물품을 제작, 판매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할 권리를 제공

31. 인터넷상 공개된 디자인의 선행기술 인정 (제11.50조)

- 인터넷에서 대중에게 이용 가능하게 된 정보가 디자인에 대한 선행 기술의 일부를 구성할 수 있음을 인정

< 유전자원 · 전통지식 · 민간전승물 >

32. 유전자원, 전통지식, 민간전승물 보호 (제11.53조)

- 각 당사자의 국제적 의무에 따라,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 수립 가능

* '적절한 조치'는 각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 제도를 수반할 필요 없음

- 특허제도의 일부로서 유전자원의 출처 관련 요건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러한 요건에 대한 법·규정·절차를 이해관계인과 다른 당사자들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인지하고, 이용 가능하도록 노력

-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양질의 특허 심사를 추구하도록 노력

- 선행 기술을 결정할 때, 유전자원에 연계된 전통지식과 관련하여 대중이 이용 가능한 관련 문서 고려
- 제3자들이 특허요건과 관련 있을 수 있는 공개된 선행 기술(유전자원에 연계된 전통지식과 관련한 선행 기술 공개 포함)을 심사 당국에 서면으로 인용할 기회
- 적용 가능하고 적절한 경우, 유전자원에 연계된 전통지식에 대한 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디지털 도서관의 사용

< 부정경쟁 >

33. 도메인 이름 보호 (제11.55조)

- 국가코드최상위도메인(country code top-level domain, ccTLD) 관리 제도와 관련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악의적 의도로,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될 정도로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보유하는 경우 적절한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34. 미공개정보 보호 (제11.56조)

- WTO TRIPs 관련 조항*에 따라 미공개 정보에 대한 보호 제공
 - * WTO TRIPs 제39조 제2항: 자연인 및 법인은 합법적으로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정보가 자신의 동의 없이 건전한 상업적 관행에 반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개되거나, 타인에 의해 획득 또는 사용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가능성 보유

< 국가명칭 >

35. 국가명칭의 상업적 사용 방지 (제11.57조)

- 상품과 관련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에 대하여 소비자를 오도하는 방식으로 당사자의 국가명칭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법적 수단 제공

< 지식재산권의 집행 >

36. 침해에 대한 집행 일반 규정 (제11.58조)

-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집행 절차를 이행할 때, 지식재산권 침해의 심각성과 적용 가능한 구제·처벌뿐만 아니라, 적용 가능한 경우 제3자들의 이익 간의 비례성에 대한 필요를 고려

- 저작권과 관련된 민사절차에서 저작물의 저작자로 성명이 표시된 자를 그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하고, 당사국의 법·규정에서 적용 가능한 경우 형사 및 행정절차에도 적용

37. 대체적 분쟁해결절차 (제11.59조제2항)

-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의 이용 허용

38. 손해배상 (제11.60조)

- 권리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행위로 권리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적절한 손해배상을 침해자가 권리자에게 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사법 당국에 부여
- 사법 당국은 손해배상액 결정시 고려하는 요소 중 특히 권리자가 제출하는 정당한 가치의 측정 및 시장가격에 의하여 산정된 침해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치를 고려할 수 있는 권한 보유
- 저작권·저작인접권·상표 침해의 경우 사법 당국은 침해자에게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권리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권한 보유

39. 소송비용 및 수수료 (제11.61조)

- 사법 당국이 최소한 저작권·저작인접권·상표 침해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의 종결 시 패소자로 하여금 승소자에게 소송비용, 수수료, 적절한 변호사 보수 또는 법에 따라 규정된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

40. 침해 상품, 재료 및 도구의 폐기 (제11.62조)

- 사법 당국은 민사 사법절차에서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 및 위조된 상표 상품의 폐기 또는 상거래 밖에서 처분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 보유
- 사법 당국은 그 지배적인 용도가 침해 상품의 생성과 관련된 재료 및 도구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보상 없이 추가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상거래 밖에서 처분 또는 폐기를 명령 가능

41. 민사 사법절차의 비밀 정보 (제11.63조)

- 지식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의 당사자, 변호인, 전문가 또는 법원의 관할권이 미치는 그 밖의 사람이 그 절차에서 생산 또는 교환된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법(법원) 명령의 위반 시 처벌 가능

42. 잠정조치 (제11.64조)

- 상표 위조,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침해 의심 상품 및 침해 혐의 행위에 지배적으로 사용된 재료 및 도구, 침해와 관련된 증거 문서 등의 압류 또는 그 밖의 보관조치 등 잠정조치 가능

43. 지재권 침해 의심상품의 반출 정지 (제11.65조)

-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 또는 위조된 상표 상품의 수입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타당한 근거를 가진 권리자는 권한 있는 당국에 해당 상품의 반출 정지 신청 가능

44. 직권조치에 의한 침해 의심상품 반출 정지 (제11.69조)

- 권한 있는 당국은 수입·수출 선적에 대하여 직권으로 의심스러운 불법 복제 저작권 상품 또는 위조 상표 상품의 반출을 정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입자 및 권리자가 그 정지를 신속히 통보받도록 규정

45. 합리적인 기간 내 침해 결정 (제11.71조)

- 권리자의 신청 또는 권한 있는 당국의 직권에 의한 침해 의심상품의 반출 정지 절차의 개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 채택·유지

46. 통관당국에 의한 침해물품의 폐기 및 처분 (제11.72조)

- 권한 있는 당국은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 또는 위조 상표 상품으로 결정된 상품의 폐기 및 처분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 보유

47. 형사절차 및 처벌 (제11.74조제1항, 2항, 3항)

-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저작권·저작권접권 침해, 상표 위조의 경우 형사절차 및 처벌 규정
- 상업적 규모의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 또는 위조된 상표 상품의 고의적인 수입행위도 형사절차 및 처벌의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에 해당
- 사법 당국은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①벌금형·징역형, ②압수, ③보상 없는 몰수 또는 폐기를 명령할 권한 보유

48. 영화관에서의 무단 복제 처벌 (제11.74조제4항)

- 영화관 내 상영으로부터 상업적 규모의 영상저작물을 무단 복제하는 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형사절차 및 처벌을 포함한 조치 채택·유지

49. 디지털 환경에서의 침해에 대한 조치 (제11.75조)

-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저작인접권, 상표 침해행위에 대하여 오프라인 상의 침해행위에 대한 민·형사 집행 절차와 동일한 집행 절차 이용 가능

< 투명성 및 절차 문제 >

50. 투명성 (제11.77조)

- 지식재산권의 이용 가능성, 범위, 취득, 집행 및 남용 방지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최종 사법 결정과 행정판정의 공표 또는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규정
-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에 관한 정보, 등록 및 만료일과 같은 지식재산권의 법적 지위 정보를 공표하거나 대중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 규정

51. 절차의 개선 및 간소화 (제11.82, 83조)

- 지식재산 제도의 효율적인 관리 제공의 중요성 인정 및 지식재산권의 관리를 위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노력
- 특허 출원과 관련한 번역의 인증 및 특허·산업디자인·상표 출원과 관련한 서명의 인증에 대한 절차 요건의 간소화를 위하여 노력

개요

- 역내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해 전자적 무역 행정문서를 수용하고, 전자 인증·서명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도록 규정
- 소비자 중심의 안정적인 전자상거래 환경을 도모하기 위한 온라인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스팸메시지 방지 등 규정을 도입
- 국경간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우리 기체결 FTA 최초로 데이터 이전 원활화 및 서버 로컬화 금지 규정 마련
 -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 및 안보이익에 관해 당사자 정부의 규제 조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각국 정책 권한과 조화를 도모

상세 내용

1. 적용범위 (제12.3조)

- 전자상거래 챕터는 전자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의 조치에 적용되고, 정부조달, 정부 보유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음
 - 동 챕터의 의무는 WTO에서의 각국 입장과는 무관
- 서비스 무역 챕터와 투자 챕터의 유보 및 비합치 조치에는 제12.14조 (컴퓨팅 설비의 위치) 및 제12.15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가 적용되지 않음
 - 전자적으로 전달되는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는 서비스 무역 챕터 및 투자 챕터의 의무가 적용됨을 명확히 규정

2. 종이 없는 무역 (제12.5조)

- 세계관세기구(WCO) 등 국제 기구에서 논의된 종이 없는 무역 관련 이니셔티브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상기 의무의 이행을 5년 동안 유예
- 전자적 무역행정문서를 종이 형태의 무역행정문서와 법적으로 동등하게 수용하고, 이를 위해 국제 포럼에서 협력

3.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제12.6조)

- 전자적 형태 서명의 법적 효력을 인정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상기 의무의 이행을 5년 동안 유예
- 전자거래 참여자가 적절한 전자인증을 상호 결정하도록 허용하되, 특정한 범주의 전자거래는 당사국이 일정 기준을 요구 가능

4. 온라인 소비자 보호 (제12.7조)

- 전자상거래에 있어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과 각국의 소비자 보호 기관의 협력 중요성을 인정
- 사기 또는 기만행위로부터 전자상거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을 마련할 의무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상기 의무의 이행을 5년 동안 유예
- 소비자 구제 방법, 기업의 준수 방법 등 전자상거래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보를 공표

5.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제12.8조)

- 전자상거래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하는 법적 체제를 마련
 -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상기 의무의 이행을 5년 동안 유예
- 개인의 구제 방법, 기업의 준수 방법 등 전자상거래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보를 공표
-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정책 및 절차를 인터넷 등에 공표하도록 장려하고, 국가 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협력

6.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 (제12.9조)

- 수신자 거절 보장, 수신자 사전 동의, 스팸 최소화 등 스팸 메시지를 규제하는 조치 마련
- 스팸 메시지 규제 위반자에 대해 청구 제기가 가능하도록 제도 마련
 - * 상기 의무의 이행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5년 동안, 브루나이는 3년 동안 유예

7. 국내 규제의 틀 (제12.10조)

- UN 전자상거래 모델법(1996년), 국제계약의 전자통신 이용에 관한 UN 협약(2005년) 등 국제 협약 및 모델법을 고려하여 전자거래를 규율하는 법적 체제 마련

8. 관세 (제12.11조)

- 전자적 전송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현재의 관행을 유지
 - RCEP 상 '현재의 관행'은 WTO 각료회의 결정(2017.12.13)을 의미하고, 해당 결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 검토를 거쳐 관행 조정 가능
- 관세가 아닌 조세, 수수료, 그 밖의 부과금은 부과 가능

9. 투명성 (제12.12조)

- 전자상거래 챗터와 관련된 조치를 공표하고, 다른 당사자가 조치 관련 정보 요구 시 신속하게 응답

10. 사이버 보안 (제12.13조)

- 컴퓨터 보안사고 대응을 위한 역량 구축 및 당사자 간 협력의 중요성 인정

11. 컴퓨팅 설비의 위치 (제12.14조)

- 해당 당사자 영역 내에서 사업 수행의 조건으로 그 당사자 영역 내 컴퓨팅 설비를 사용하거나 위치하게 하는 현지화 조치를 금지

* 상기 의무의 이행을 베트남은 5년 동안,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기본 5년, 필요시 추가 3년 동안 유예

-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당사자가 판단하는 조치는 위 금지의무의 예외로서 인정

- 다만 상기 조치는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위장된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하며, 공공정책 이행의 필요성은 해당 국가가 판단

- 필수적인 안보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당사자가 판단하는 조치도 위 금지의무의 예외로서 인정

- 상기 조치는 다른 당사자가 분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

12.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 (제12.15조)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허용
 - * 상기 의무의 이행을 베트남은 5년 동안,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기본 5년, 필요시 추가 3년 동안 유예
-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당사자가 판단하는 조치는 위 허용의무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
 - 다만 상기 조치는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위장된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하며, 공공정책 이행의 필요성은 해당 국가가 판단
- 필수적인 안보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당사자가 판단하는 조치도 위 허용의무의 예외로서 인정
 - 상기 조치는 다른 당사자가 분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

13. 전자상거래에 관한 대화 (제12.16조)

- 당사자들은 전자상거래 발전을 반영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대화체를 설치
 - 제12.4조(협력) 사항, 디지털 제품, 소스코드, 데이터 관련 조항의 금융 분야 적용, 반경쟁적 행위, 기술전문가의 국경 간 이동 등 논의
- 전자상거래에 관한 대화는 RCEP 공동위원회의 절차를 따름

14. 분쟁해결 (제12.17조)

- 당사자 간 이견 발생 시 우선 협의를 하고,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RCEP 공동위원회에 사안을 회부
- 전자상거래 챕터에 의해 발생한 사안에는 분쟁해결 챕터가 적용되지 않으며, 향후 RCEP 협정 검토 절차에 따라 분쟁해결 챕터의 적용 여부를 검토

개요

- 경쟁 촉진, 경제적 효율성 및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하여 ①경쟁 관련 법·규정의 기본원칙, ②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조치 및 협력, ③정보교환 및 비밀 유지 등을 규정

경쟁 주요 내용

1. 목적 및 기본원칙 (제13.1조 및 제13.2조)

- 경제적 효율성과 소비자 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하되, 각국이 경쟁 관련 법·규정 및 정책을 독자적으로 규율할 주권적 권리를 인정
 - 아울러 경쟁 관련 법·규정 및 정책에 대해 당사자들간 발전단계 및 역량의 중대한 차이를 인정

2.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조치 (제13.3조)

- 반경쟁적 행위를 막기 위한 경쟁 관련 법·규정을 도입·유지하고, 법·규정 집행을 위한 의사결정 독립성이 보장된 권한당국을 설립·유지
 - 경쟁 관련 법·규정은 국적에 기초한 차별 없이, 상업적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주체에 대하여 적용 및 집행
 - 경쟁 관련 법·규정 적용을 면제하는 경우, 투명하고 및 공익에 근거해야 하며, 경쟁 관련 법·규정 등은 모두 공개 필요

- 경쟁 관련 법·규정에 따라 제재 등을 부과하는 최종결정의 근거, 최종 결정에 대한 불복청구를 공개하고, 피심인이 이용가능하도록 함
 -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피심인에게 제재의 이유를 가능한 서면으로 제공하고, 의견진술권 및 증거 제출권 부여
 - 경쟁 관련 법·규정에 따른 제재에 대해 피심인의 불복청구를 보장

3. 협력 (제13.4조)

- 당사자들은 각국의 권한당국간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권한당국을 통하여 경쟁법 집행 관련 사안에 대해 협력 가능
 - 각 당사자의 경쟁법 집행 활동이 다른 당사자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능한 범위 내 신속히 통보
 - 각 당사자의 경쟁법 집행 활동이 다른 당사자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해당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
 -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 정보 교환 및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집행 행위를 조정

4. 정보의 비밀 유지 (제13.5조)

- 각 당사자의 법·규정 및 중요한 이익에 반하는 정보에 대해 공유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
 - 비밀을 요청하는 당사자는 요청의 목적, 요청한 정보의 활용계획, 정보의 비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국 법·규정을 통보할 필요
 - 비밀정보의 공유 및 활용은 당사자간 합의된 조건에 기초해야 함
- 비밀 유지를 조건으로 정보가 공유된 경우, 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는 자국 법·규정을 따르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정한 의무를 준수

- 정보의 비밀 유지 및 요청 시의 목적으로만 정보를 사용
- 정보를 법원 등에서의 형사절차 증거로 사용 금지
- 정보 제공 당사자가 승인하지 않은 기관 등에 대해 정보 공개 금지, 정보 제공 당사자의 요구 조건을 준수

5. 기술 협력 및 역량 강화 (제13.6조)

- 각 당사자는 비밀이 아닌 정보의 공유, 경쟁당국 공무원의 교류 등 기술 협력이 당사자들의 공통된 관심사임을 인정

6. 소비자 보호 (제13.7조)

- 당사자들은 소비자보호법, 소비자 보호 관련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
 - 각 당사자는 무역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관행 등을 금지하기 위한 법·규정을 도입하거나 유지
 -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접근성 제고의 중요성을 인정
 - 소비자 보호 관련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당사자간 협력이 가능

7. 협의 (제13.8조)

- 특정 문제 해결이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를 개시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 의해 제기된 사항을 호의적으로 충분히 고려

8. 분쟁해결 절차 비적용 (제13.9조)

- 경쟁챕터에는 RCEP 분쟁해결 절차 적용을 배제

개요

- 중소기업 챗터의 목적(제1조)을 규정하고 중소기업 관련 정보 공유(제2조) 및 협력(제3조)에 대한 세부 조항 상세 명시
 - 정보공유 증진 및 중소기업의 가치사슬 참여, 시장접근 강화 등을 위한 협력 조항 규정
 - 또한 중소기업 역량 강화 및 투명성을 제고하며, 이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역내 교류 및 진출 확대 모색

주요 내용

1. 목적 (제14.1조)

-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경제성장, 고용·혁신 증진을 위해 정보 공유 및 협력 등을 통한 RCEP 활용 확대
- 당사자들은 중소기업의 RCEP 참여를 도모

2. 정보 공유 (제14.2조)

- 공개 접근 가능한 정보 플랫폼 포함하여 중소기업과 관련된 정보 공유, 당사자들간 지식, 경험 및 모범사례 공유를 위해 정보교환 증진
-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하게 되는 정보는 RCEP의 무역·투자 관련 법과 규정에 관한 정보 및 유용한 사업 관련 정보를 포함

3. 협력 (제14.3조)

- 중소기업의 무역규칙 및 규정의 이행, 시장접근 및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전자상거래 이용, 기업간의 경험 교류, 혁신 및 기술 교류, 지식재산체계 상호이해 증진 등의 분야 협력 강화
-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하는 규정, 정책 및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데 우수한 규제 관행 및 역량 강화
- 중소기업 역량 및 경쟁력 제고에 관련한 모범사례를 공유

4. 접촉선 (제14.4조)

- 각 당사자는 RCEP 발효일로부터 30일내에 하나 이상의 접촉선을 지정하여 다른 당사자들에게 접촉선 연락처 등 세부사항을 통보

5. 분쟁해결의 비적용 (제14.5조)

- 중소기업 챕터에는 RCEP 분쟁해결 절차가 적용되지 않음

개요

- 경제 및 기술협력을 정의하고(제1조), 경제 및 기술 협력 목적(제2조), 적용 범위(제3조) 및 자원(제4조)에 관련한 세부 조항 상세 명시
 - 참여국의 7개* 관심 분야와 당사자 합의에 따른 그 밖의 사안에 대해 다양한 협력 활동 및 위원회 설치를 통해 RCEP 당사자들과 세부 분야별 협력을 강화할 것을 명시
 - * 상품,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 전자상거래, 경쟁, 중소기업
- 당사자간 경제발전 격차 축소를 위해 향후 채택될 작업 계획에 따라 상품, 서비스 등 관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을 명시
 - 경제기술 협력 이행을 위해 위원회를 채택하고, 위원회에서 작업 계획 등 이행 관련 사항들을 최종 평가 및 수행을 규정

주요 내용

1. 목적 (제15.2조)

- 경제 및 기술 협력 이니셔티브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RCEP 당사자간의 노력과 자원 이용의 중복 최소화
- 국가별 개발 및 국가 역량 수준을 고려하여 당사간의 개발 격차축소, 이행 및 활용을 통해 상호 혜택 극대화 추진

2. 적용범위 (제15.3조)

- 작업 계획에 명시된 무역 또는 투자와 관련된 경제 및 기술 협력 활동을 통해, 포괄적이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이행 및 활용을 지원
-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투자, 지식재산, 전자상거래, 경쟁, 중소기업, 및 당사자들 간 합의된 그 밖의 사안의 협력 활동 모색

3. 자원 (제15.4조)

- 당사자들은 상호 혜택을 기반으로 작업 계획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호 호혜적인 협력 및 파트너십 개발 협력을 규정

4. 작업계획 (제15.5조)

- 제18장(제도규정)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에 의하여 작업 계획 개발
- RCEP의 효과적인 이행 및 활용을 위해 개발도상국 당사자들 및 최빈 개발도상국 당사자들에 역량 강화 및 기술 지원 제공, 대중 인식 제고, 기업을 위한 정보 접근 개선 및 당사자들 간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활동에 우선권을 부여

5. 아세안 회원국인 최빈개발도상국 당사자 (제15.6조)

- 아세안 회원국인 최빈개발도상국의 특정제약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역량 강화 및 기술 지원은 각 해당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에 의하여 합의를 통해 이행하여 이를 통해 이 협정의 활용을 도모

6. 분쟁해결의 비적용 (제14.5조)

- 경제 및 기술협력 챕터에는 RCEP 분쟁해결 절차가 적용되지 않음

개요

- ①정부조달 관련 법·규정 및 절차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②당사자간 정보 공유·기술 지원 등 상호 협력을 도모하며, ③향후 정부조달 촉진을 목적으로 동 챗터를 검토할 것을 규정

정부조달 주요 내용

1. 목적 및 원칙 (제16.1조 ~ 제16.3조)

- 정부조달 관련 법·규정 및 절차의 투명성 증진과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
 - 당사자들은 경제적 통합의 심화를 위한 정부조달의 역할을 인정
 - 정부조달 시장이 국제 경쟁에 개방된 경우, 각 당사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부조달의 일반적 원칙에 합치되도록 정부조달을 수행
 - 정부조달 챗터는 최빈개도국에 대해 투명성과 협력 관련 의무이행을 요구하지 않으며, 최빈개도국은 당사자간 협력에 따른 혜택 향유 가능

2. 투명성 (제16.4조)

- 정부조달 관련 법·규정의 공개 의무 및 관련 절차의 공개 노력 의무를 규정
 - 해당 정보는 입찰이 공시되는 장소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영어로 공개하도록 노력
 - 법·규정 및 절차 공개 시 전자적 수단을 통해 가능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이용가능하도록 하고,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3. 협력 (제16.5조)

- 정부조달 체계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정부조달 사안에 대해 당사자간 협력하도록 노력
 - 가능한 범위 내 자국의 법·규정 및 절차와 개정에 대한 정보 교환
 - 다른 당사자에 대해 훈련, 기술 지원 또는 역량 함양을 제공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
 - 가능한 경우, 중소기업 관련 모범 관행 정보 및 전자조달 체계에 대한 정보를 공유

4. 검토 및 연락처 지정 (제16.6조, 제16.7조)

- 협정의 발효일 후 5년째에, 그리고 그 후 5년마다 정부조달 촉진을 목적으로 정부조달 챗터 검토 가능
- 협정의 발효일 후 30일 내에 이 장에 따른 협력 및 정보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접촉선을 지정하고, 그 밖의 당사자들에 그 접촉선 또는 그러한 접촉선들의 관련 상세내용을 통보

5. 접촉선 (제16.7조)

- 협정의 발효일 후 30일 내에 협력 및 정보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접촉선을 지정하고 다른 당사자들에 통보

6. 분쟁해결 절차 비적용 (제16.8조)

- 정부조달 챗터에는 RCEP 분쟁해결 절차 적용을 배제

개요

- 협정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규정 및 예외에 관해 규정

주요 내용

< 1. 일반 규정 >

1. 지리적 적용 범위 (제17.2조)

- 당사자가 WTO 협정에 따라 다른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의무를 부담하는 지리적 범위에 적용
- 영토의 범위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와 관련하여 협정의 지리적 적용 범위가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협정의 지리적 적용 범위가 영역 주권 및 해양법 관련 사안에 대한 협정 당사자의 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시

2. 공표 (제17.3조)

- 당사자는 협정의 적용대상인 사안에 관한 자신의 법, 규정, 절차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을 실행 가능한 한 신속하게 공표하거나 이해관계자 또는 다른 협정 당사자들이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

* 판정 또는 해석의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인과 사실 상황에 적용되고 행위규범을 형성하는 행정판정 또는 해석으로, 구체적인 사건에서 특정한 인, 상품 또는 서비스에만 적용되는 행정 또는 준사법적 절차에서 내려진 결정이나 판정 또는 특정 행위 또는 관행에 대해 심사하는 판정은 제외

-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협정의 적용대상인 사안에 관한 법, 규정, 절차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관정을 사전에 공표하고 공표 내용에 대해 이해관계자 및 다른 협정 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 제공

3. 정보 제공 (제17.4조)

- 다른 협정 당사자가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과 관련하여 적용되고 있거나 또는 제안된 법, 규정, 절차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관정과 관련한 정보를 요청한 경우, 요청을 받은 당사자는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질의에 응답

4. 행정 절차 (제17.5조)

-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안과 관련한 법, 규정, 절차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관정의 공평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을 위해 다른 당사자의 인(人)*, 상품, 서비스에 대해 그를 적용하는 행정 절차에서 다음을 보장

*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

- 가능한 경우 언제나, 절차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인에게 절차의 성격에 대한 기술(description), 절차 개시의 법적 권한에 대한 진술 및 해당 문제에 대한 일반적 기술을 포함하여 절차가 개시된 때에 관한 합리적인 통보를 국내 절차에 따라 제공
- 시간, 절차의 성격, 공익이 허용하는 경우 절차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다른 당사자의 인이 최종 행정처분 전에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실과 주장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 제공

5. 재심사 및 불복청구 (제17.6조)

- 협정 당사자는 협정의 적용대상인 사안에 관한 행정처분에 대한 신속한 재심 또는 정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 준사법 또는 행정 재판소나 절차를 수립·유지
 - 그러한 사법, 준사법 또는 행정 재판소는 행정집행을 맡은 부서 또는 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사안의 결과에 대해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지 않아야 함

6. 정보의 공개 (제17.7조)

- 당사자는 공개될 경우 법, 규정 또는 공익에 반하거나, 법 집행을 저해하거나 특정한 공기업 또는 민간 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하는 정보에 대해 공개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7. 비밀 유지 (제17.8조)

- 협정에 따라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 제공하는 자신의 정보를 비밀로 지정한 경우 그 다른 당사자는 자신의 법, 규정 준수를 조건으로 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

8. 부패에 대한 조치 (제17.9조)

- 협정 당사자는 협정이 적용되는 사안과 관련한 부패를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자신의 법·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 단, 동 조 의무의 준수 여부와 관련한 다툼에 대해서는 분쟁해결 절차 (제19장)의 적용이 배제됨.

< II. 예외 >

9. 심사제도 및 분쟁해결 (제17.11조)

- 외국인 투자 제안의 승인 또는 허가에 관한 권한 당국의 결정 및 승인 또는 허가의 조건이나 요건의 집행은 분쟁해결절차(제19장)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 당사자별 권한 당국은 각주3에서 규정

10. 일반적 예외 (제17.12조)

- 제17.1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장들에 대해 각각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0조와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 제14조 및 그 주해를 준용
 - * 제2장(상품 무역), 제3장(원산지 규정), 제4장(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5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표준, 기술 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 제10장(투자), 제12장(전자상거래)
 - ** 제8장(서비스 무역), 제9장(자연인의 일시 이동), 제10장(투자), 제12장(전자상거래)

11. 안보 예외 (제17.13조)

- GATT 제21조 및 GATS 제14조의2에서 규정한 안보 예외 사항 이외에 통신, 전력, 수도 시설 등 중요 공공 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등을 안보 예외 대상으로 규정

12. 과세 조치 (제17.14조)

- 제17.14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과세조치에 대해 협정의 적용이 배제됨

- 협정은 조세협약에 따른 협정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조세협약상의 권리·의무와 협정 사이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조세협약이 우선
- 협정은 당사자의 기존 또는 미래의 조세협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대우, 우대조치, 특권의 혜택을 그 밖의 당사자에게 부여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음

13. 국제수지 보호조치 (제17.15조)

- 협정 당사자가 심각한 국제수지 및 금융상으로 대외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상품의 수입 또는 당사자가 약속한 서비스 무역(약속한 분야에서의 거래에 대한 지불·송금 포함)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
- 투자의 경우, 당사자가 심각한 국제수지와 대외 재정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자본 이동과 관련하여 지불 또는 송금이 거시 경제 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10장(투자)의 적용대상인 투자에 관련된 지불 또는 송금에 관한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 가능

14. 와이탕이 조약 (제17.16조)

- 와이탕이 조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포함하여 뉴질랜드가 마오리족에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데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치를 채택하는 것에 대해 협정 의무 예외 인정
- 분쟁해결 패널은 와이탕이 조약의 이행을 위해 취한 조치의 협정 위반 여부만을 판단할 수 있으며 와이탕이 조약의 해석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쟁해결 절차(제19장) 적용 배제

개요

- 협정의 운영, 이행의 점검 및 감독을 위한 위원회 및 그 부속기구의 설치 및 운영, 의사결정 규칙 등을 규정

주요 내용

1.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 장관 회의 (제18.1조)

- 협정에 관한 모든 사안을 검토하기 위해 협정의 장관들은 협정 발효일 부터 1년 내에, 이후에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매년 회합
 - 장관들은 모든 사안에 대해 컨센서스로 결정

2.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 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8.2조 제18.3조)

- 각 당사자가 지정하는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협정 공동위원회 설치
- 협정의 이행 및 운영과 관련한 사안 검토, 협정 개정 제안의 검토, 협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이견 논의 등 기능 수행
 - 이 외에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그 밖의 기능도 수행할 있도록 하여 위원회가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공동위원회는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 장관들에 보고하고, 적절한 경우 검토 및 결정을 위해 사안 회부

3.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 공동위원회의 절차 규칙 (제18.4조)

- 모든 사안에 대해 컨센서스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첫 번째 회의에서 구체적인 절차규칙 수립

* 결정이 이루어진 회의에 참석한 협정 당사자 중 제안된 결정에 반대한 당사자가 없는 경우 컨센서스에 의한 결정으로 간주

4.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 공동위원회의 회의 (제18.5조)

- 공동위원회는 협정 발효일*로부터 1년 내에 장관 회의 전에 회합하고, 이후에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매년 회합

* 아세안 서명국 중 6개국, 비아세안 서명국 중 3개국이 비준, 수락 또는 승인 문서 기탁 후 60일째 되는 날에 발효

- 공동위원회는 전자우편, 회상회의 등 적절한 수단을 통해 업무 수행

5.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 공동위원회의 부속기구 (제18.6조)

- 공동위원회는 첫 번째 회의에서 상품위원회, 서비스 및 투자위원회, 지속가능성장위원회, 기업환경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부속기구 설치

- 공동위원회에 의해 설치된 각 위원회는 협정 발효일로부터 1년 내에 회합하고,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후 매년 회합

6. 부속기구의 회의 (제18.7조)

- 부속기구는 그 기능 내 모든 사안에 대해 컨센서스로 결정을 내리고 공동위원회의 지시 또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회합

- 부속기구는 공동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전자우편, 화상회의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수단을 통해 업무 수행

7. 접촉선 (제18.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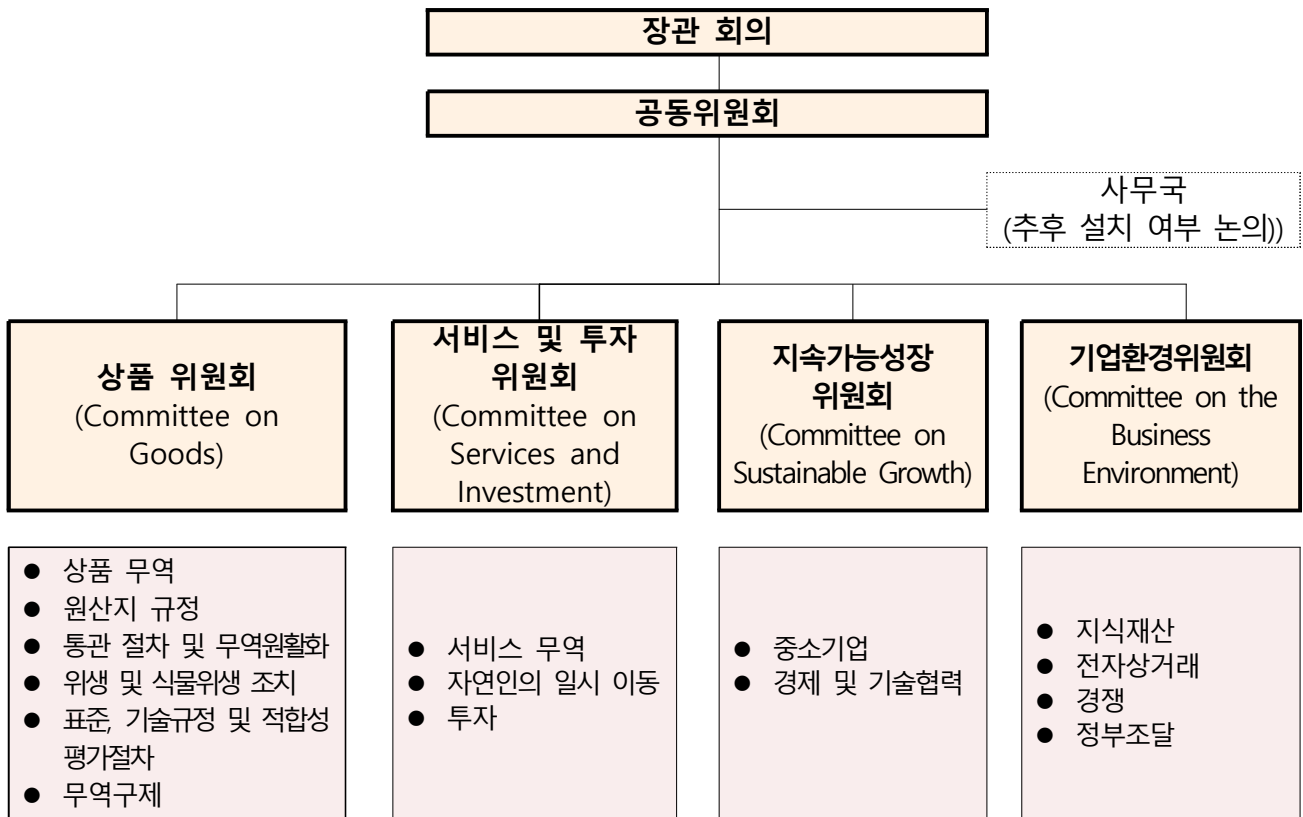
- 각 당사자는 자신에 대한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30일 내에, 협정의 모든 사안과 관련한 의사소통을 담당할 접촉선을 지정하고, 그 밖의 당사자들에게 접촉선의 상세 연락처를 통보

공동위원회 부속기구의 기능 (부속서 18-가)

1. 개관

- 변화하는 무역 환경과 미래 무역 어젠다에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장(chapter)별로 위원회를 두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유사 분야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4개 위원회를 설치

< RCEP 위원회 구조 >



2. 상품위원회

- 상품 무역 관련 장*의 이행 및 운영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안을 검토하고 그 밖의 관련 부속기구의 업무를 감독하고 조율하는 기능 수행

* 제2장(상품 무역), 제3장(원산지 규정), 제4장(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5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제7장(무역구제)

3. 서비스 및 투자위원회

- 서비스 및 투자와 관련한 장*의 이행,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안의 검토 및 그 밖의 관련 부속기구의 업무 감독 및 조율 등의 기능 수행

* 제8장(서비스 무역), 제9장(자연인의 일시 이동), 제10장(투자)

- (서비스 무역) 제8장(서비스 무역)의 이행, 운영 점검 및 검토, 제8.12조(전환)에 따라 제안된 유보안의 채택*, 제8.13조(양허표의 수정)에 따른 양허의 수정 또는 철회 절차 및 중재 수행 절차의 수립 및 개정 등 기능 수행

* 서명 당시 포지티브 방식의 서비스 양허안을 채택한 협정 당사자는 협정 발효일 후 3년 내에(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12년 내) 네거티브 방식의 유보안으로 전환

- (투자) 제10장(투자) 이행 점검, 제10.18조(작업 프로그램)에 따라 수립된 작업 프로그램의 이행, 투자 증진을 위한 협력 촉진 등 기능 수행

4. 지속가능성장위원회

- 제14장(중소기업) 및 제15장(경제 및 기술 협력)의 이행, 운영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안의 검토 등의 기능 수행

5. 기업환경위원회

- 제11장(지식재산), 제12장(전자상거래), 제13장(경쟁) 및 제16장(정부조달)의 이행,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안의 검토 등 기능 수행

개요

- 협정의 해석 및 적용, 협정 의무의 불이행 등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절차를 규정

주요 내용

< 1. 정의, 적용범위 및 일반규정 >

1. 정의 (제19.1조)

- 제19장(분쟁해결)에 사용된 용어의 의미에 대한 이해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제19장(분쟁해결)에 사용된 주요 용어의 의미를 규정

2. 적용범위 (제19.3조)

-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협정의 해석 및 적용 ▲당사자가 취한 조치의 협정 의무 위반 여부 ▲당사자의 협정 의무 이행 여부와 관련한 당사자들간의 분쟁에 적용*

* 비위반 제소(non-violation complaint)는 불가

3. 일반규정 (제19.4조)

- 협정 해석은 국제공법상 관습적 해석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협정에 통합된 WTO 협정 해석에 있어서는 WTO 패널과 상소기구의 관련 해석을 고려
- 분쟁해결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통보, 요청, 답변은 서면으로 하고, 절차 진행이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3자의 권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해 절차 기간 수정 가능

< II. 분쟁해결 절차 >

4. 분쟁해결절차의 선택 (제19.5조)

- 분쟁 당사자들이 협정 이외의 무역 또는 투자 협정의 당사자들이고, 분쟁이 그 다른 협정상의 실질적으로 동등한 권리·의무와 관련된 경우, 분쟁 당사자들은 협정 또는 그 다른 무역 또는 투자 협정의 분쟁해결 절차 중 하나를 선택 가능
- 분쟁해결절차 선택 시 다른 절차 이용 불가*
 - * 제소 당사자가 협정(제19.8조제1항)에 따라 패널의 설치를 요청했거나, 다른 무역 또는 투자 협정상의 분쟁해결 패널 또는 재판소의 설치를 요청했거나 해당 패널 또는 재판소에 사안을 회부한 경우 분쟁해결 절차를 선택한 것으로 간주
- 분쟁 당사자들은 서면 합의를 통해 특정한 분쟁에 대해 제19.5조 적용 배제 가능

5. 협의 (제19.6조)

- 당사자는 제19장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분쟁과 관련하여 그 밖의 당사자에게 협의 요청 가능
- 협의 요청(제소 당사자) → 협의 요청 접수 확인(피소 당사자) → 협의 요청에 대한 답변(피소 당사자) → 협의의 개시(분쟁 당사자) 순으로 진행

6. 주선, 조정 또는 중개 (제19.7조)

- 분쟁 당사자들은 분쟁해결절차 진행 중 언제든지 패널절차가 아닌 주선, 조정 또는 중개를 포함하는 대안적 방법을 사용하여 분쟁 해결 가능
- 대안적 분쟁해결 방법은 패널 절차 등 분쟁해결 절차와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고 그 밖의 절차에서 분쟁 당사자의 권리를 저해하지 않으며, 분쟁 당사자에 의해 언제든지 종료 가능

7. 패널의 설치를 위한 요청 (제19.8조)

- ① 피소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 내 협의 요청에 대해 답변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② 정해진 기간 내 협의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못한 경우***, 제소 당사자는 피소 당사자에 대한 통보의 방식으로 패널 설치 요청 가능

* 협의 요청 접수일 후 7일 내 ** 협의 요청 접수일 후 30일내(긴급한 경우 15일 내)

*** 협의 요청 접수일 후 60일내(긴급한 경우 20일 내)

8. 복수 제소자를 위한 절차 (제19.9조)

- 복수의 당사자가 동일한 사안과 관련하여 패널의 설치 또는 재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안 해결을 위해 가능한 경우 언제나 단일 패널 설치 또는 재소집
- 동일한 사안과 관련한 제소의 조사를 위해 2개 이상의 패널이 설치 또는 재소집 되는 경우 분쟁 당사자들은 동일한 개인이 각각의 패널의 패널 위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이 때 패널들은 가능한 최대한 패널들의 일정이 조화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다른 패널 및 분쟁 당사자들과 협의

9. 제3자들 (제19.10조)

- 패널에 회부된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당사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분쟁 당사자들에게 자신의 이해를 통보하고 제3자로서 분쟁 해결절차에 참여 가능
- 이해관계를 통보한 협정 당사자는 제3자의 권리 보유 및 의무 부담

< 제3자의 권리 >

▲잠정 보고서 제출 전 패널 심리(hearing) 참석 ▲제1차 심리 전 최소 1회의 서면 입장 제출 ▲제1차 심리 중 별도로 마련된 회기에서 패널에 대한 구두 진술 및 패널 질의에 대한 답변 ▲제3자들에 대한 패널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 등

10. 패널의 설치 및 재소집 (제19.11조)

- 분쟁 당사자들은 패널 설치의 요청 후 패널 구성을 위한 절차의 합의를 위한 협의 개시
 -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분쟁 당사자 일방의 통보로 제5항~제7항에 정해진 절차 따라 패널 구성
- 당사자가 패널 구성 절차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제5항~제7항에 따라 제소 당사자의 패널위원 임명(1인)→피소 당사자의 패널위원 임명(1인)→분쟁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패널의장(1인) 임명 순으로 구성 절차 진행
 - 피소 당사자의 경우 제소 당사자에 비해 패널위원 임명을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제소 당사자에 비해 패널위원 임명을 위한 보다 긴 시간 부여*
 - * 제소 당사자는 제5항~제7항 절차 이용 희망 통보의 접수일부터 10일 내, 피소 당사자는 20일 내에 패널위원 임명
 - 기한 내 패널위원이 임명되지 못한 경우 WTO 사무총장 →상설중재재판소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사무총장에 대해 임명 요청 가능

< PCA 사무총장의 패널위원 임명 절차 >

- 분쟁 당사자들에 최소 3인이 포함된 동일한 후보 명부 통보(PCA 사무총장) → 반대하는 후보자 삭제 후 선호 순서대로 번호를 매긴 후 명단 제출(각 분쟁 당사자) → 명부에 남은 후보자 중 분쟁 당사자의 선호 순서에 따라 임명 (PCA 사무총장)*
 - * 절차에 따라 패널위원을 임명할 수 없는 경우 PCA 사무총장이 자신의 재량으로 임명

□ 패널의 설치일은 마지막 패널위원이 임명된 날로 함

< 패널 구성 절차(제5항~제7항) >



□ 패널위원의 자격으로 관련 분야 전문성, 분쟁 당사자로부터의 독립성, 객관성·신뢰성 등 요구

○ 보다 높은 수준의 객관성, 중립성 확보를 위해 패널의장은 분쟁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분쟁 당사자나 제3자의 국민이 아니고, 어떠한 분쟁 당사자 내에도 통상적인 거주지를 갖지 않아야 함

○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 패널의장을 임명하지 못해 WTO 사무총장이나 PCA 사무총장이 패널의장을 임명하는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임명되는 경우에 비해 보다 강한 전문성 요구*

* PCA가 국제통상 기구가 아닌 점 등 고려

□ 패널위원이 사임하거나 역할 수행이 어려울 경우 후임 패널위원은 원래의 패널위원과 같은 절차를 통해 임명되고 원래 패널위원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보유

□ 제19.16조(이행 검토), 제19.17조(보상 및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에 따라 패널이 재소집 되는 경우, 실행 가능한 경우 재소집된 패널은 원래의 패널위원과 동일한 패널위원을 갖도록 하고, 불가능할 경우 대체 패널위원은 원래의 패널위원과 같은 방식으로 임명되고 원래 패널위원의 모든 권한 및 의무를 가짐

11. 패널의 기능 (제19.12조)

- 패널은 ▲사건의 사실관계, ▲분쟁 당사자들이 인용한 협정 규정의 적용 가능성, ▲문제된 피소 당사자 조치의 협정 의무 합치 여부 또는 피소 당사자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진행
- 패널은 분쟁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 설치의 요청에 언급된 사안을 협정 관련 규정에 비추어 조사하고 협정에 규정된 대로 조사 및 판정
- 패널은 ▲분쟁 당사자들 및 제3자들의 주장을 요약한 서술적 부분 ▲사건의 사실관계 및 협정 규정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조사 결과 및 그 사유 ▲문제가 된 조치의 협정 의무에 대한 불합치 또는 피소 당사자의 협정 의무 불이행 여부에 대한 판정 및 그 사유를 보고서에 명시
 - 또한, 분쟁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요청한 사항이나 자신의 위임사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그 밖의 조사 결과 및 판정을 보고서에 포함하고,
 - 피소 당사자가 조사 결과 및 판정을 이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안을 보고서에 포함할 수 있음

12. 패널 절차 (제19.13조)

- 패널은 제19장(분쟁해결)을 준수하고,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절차 규칙*에 따라 패널 절차를 진행
 - *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의 절차 규칙은 공동위원회에서 채택
- (일정표) 패널은 분쟁 당사자들과 협의 후 패널의 설치 또는 재소집일 부터 15일 내에 패널 과정을 위한 일정표를 정함
 - 제19.11조에 따라 설치된 패널의 경우 그 설치일부터 분쟁 당사자들에 대한 최종 보고서 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7개월을 넘지 않아야 함

- (절차) 패널은 컨센서스에 의해 조사 및 판정을 하며, 컨센서스에 이르지 못한 경우 다수결에 의해 조사 및 판정 가능
 - 패널위원은 만장일치로 합의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익명으로 반대 또는 별개 의견 제공 가능
 - 패널 심의는 비밀로 진행되며, 분쟁 당사자들 및 제3자들은 패널의 초청을 받는 경우에 한해 회의에 참석
 - 패널이 고려 중인 사안에 대해 패널과 분쟁 당사자 일방과의 의사소통 (*ex parte communication*)은 금지됨
- (심리) 패널 심리는 최소 1회가 열리며, 특별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한 2회를 넘지 않음
- (비밀유지) 패널에 제출하는 서면 입장과 분쟁 당사자 및 제3자가 비밀로 지정하여 패널에 제출한 정보는 비밀로 취급
 - 분쟁 당사자들 및 제19.10조에 규정된 경우 제3자는 서면입장 이용 가능
 - 분쟁 당사자 또는 제3자는 비밀로 지정된 진술 또는 정보를 제외하고 자신의 입장에 관한 진술 공개 가능
- (추가적인 정보 및 기술적 자문) 패널은 분쟁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자체 발의로, 적절하다고 여기는 개인 또는 기관으로부터 추가적인 정보 및 기술 자문을 구할 수 있음
 - 자문을 구하기 전 패널은 분쟁 당사자들의 의견을 구하고 분쟁 당사자들이 정보 또는 자문을 구하지 않기로 합의할 경우 이에 따름
 - 패널은 자신이 제공받은 추가적인 정보 또는 기술적 자문을 분쟁 당사자들에게 제공하고 분쟁 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
- (패널 보고서) 제19.11조에 따라 설치된 패널은 그 설치일로부터 150일 내 (긴급한 경우 90일 내)에 분쟁 당사자들에게 잠정 보고서를 제출하고*, 잠정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내에 최종 보고서 제출
 - * 제출할 수 없는 경우 30일의 추가 기간 내 제출

- 분쟁 당사자는 잠정 보고서 접수일부터 15일 내에 패널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패널은 분쟁 당사자 의견 고려 후 잠정 보고서 수정 가능

13. 절차의 정지 및 종료 (제19.14조)

- 분쟁 당사자들은 합의를 통해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패널 업무 정지 가능
 - 절차는 분쟁 당사자의 요청으로 재개 되고, 정지 상태가 12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된 경우 분쟁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 설치 권한 소멸*
 - * 기간이 정지된 경우 정지된 기간 만큼 관련 기간 연장
- 분쟁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에 의해 분쟁의 해결에 이른 경우 패널 절차를 합의에 의해 종료

14. 최종 보고서의 이행 (제19.15조)

- 패널의 조사 결과 및 판정은 최종적이며 분쟁 당사자들을 구속
 - 패널이 피소 당사자의 조치가 협정상 의무에 합치하지 않거나 피소 당사자가 협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경우, 피소 당사자는 조치를 협정 의무에 합치시키거나 협정 의무를 이행해야 함
- 피소 당사자는 최종 보고서 제출일부터 30일 내에 제소 당사자에 이행과 관련한 의사 통보
- 최종 보고서의 즉각적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피소 당사자는 이행을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및 가능한 조치를 제소 당사자에 통보

- 분쟁 당사자는 합의를 통해 이행을 위한 합리적 기간을 정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 기간에 대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 패널의장에 이행 기간의 결정 요청 가능
- 피소 당사자가 최종 보고서의 의무를 준수하였다고 여기는 경우, 최종 보고서 의무의 준수를 달성하였다고 여기는 조치의 기술, 동 조치의 효력 발생일 및 조치의 문안이 있는 경우 해당 문안을 포함하여 지체없이 제소 당사자에 통보

15. 이행 검토 (제19.16조)

- 최종 보고서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해 분쟁 당사자들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이행 검토 패널을 재소집할 수 있음
 - 최종 보고서 의무의 준수를 위한 합리적 기간의 만료일 또는 피소 당사자가 최종 보고서 의무의 준수를 제소 당사자에 통보한 날 중 이른 시기 후에 이행 검토 패널의 재소집 요청 가능
- 이행 검토 패널은 재소집의 요청일부터 15일 내에 재소집하고, 가능한 경우 재소집일부터 90일 내에 잠정 보고서를, 그로부터 30일 내에 최종 보고서를 분쟁 당사자들에 제출*
 - * 기한 내 최종 보고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재소집의 요청일부터 15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제출

16. 보상 및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 (제19.17조)

- 피소 당사자가 최종 보고서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겠다고 제소 당사자에 통보하거나, 그 준수의 사실을 기한 내에 통보하지 못하는 경우, 제소 당사자는 피소 당사자와 보상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음
- 분쟁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보상에 합의하지 못하거나, 합의에 도달했으나 피소 당사자가 합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소 당사자는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할 수 있음*
 - 제소 당사자는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 의사를 피소 당사자 및 협정 당사자들에 통보하고, 통보의 접수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정지를 개시할 수 있는 권리 보유
 - * 정지 수준의 적절성, 보상 합의 조건의 준수 여부 또는 정지 원칙 준수 여부와 관련하여 패널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상호 합의한 해결책에 도달한 경우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 권리 행사 불가
 -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는 패널이 협정 의무 위반을 판정한 분야와 동일한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실행가능하지 않거나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에만 그 밖의 분야에서 정지 가능
 -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의 수준은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과 동등해야 함
- 제소 당사자가 통보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 수준, 보상 합의 조건 준수 여부,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 원칙 준수 여부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피소 당사자는 패널의 재소집을 요청할 수 있음
 - 한편, 제소 당사자가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의 권리를 행사하고, 피소 당사자가 최종 보고서 의무의 준수를 통보한 경우, 피소 당사자가 최종 보고서 이행을 위해 취한 조치의 존재 또는 협정과 합의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는 패널의 재소집 요청 가능

< III. 기타 규정 >

17. 최빈개발도상국 당사자들과 관련한 특별 및 차등대우 (제19.18조)

- 분쟁이 최빈개발도상국* 당사자와 관련된 경우 분쟁해결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최빈개발도상국 당사자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사안의 제기 등에 있어 적절히 자제

* 국제연합(UN)에 의해 최빈개발도상국으로 지정되고 그 범주로부터 제외되지 않은 모든 국가

18. 경비 (제19.19조)

- 분쟁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분쟁 당사자는 자신이 임명한 패널위원의 비용과 자신의 경비 및 법적 비용을 부담
- 분쟁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의장의 비용 및 패널 절차 진행과 관련한 그 밖의 경비는 분쟁 당사자들이 동등하게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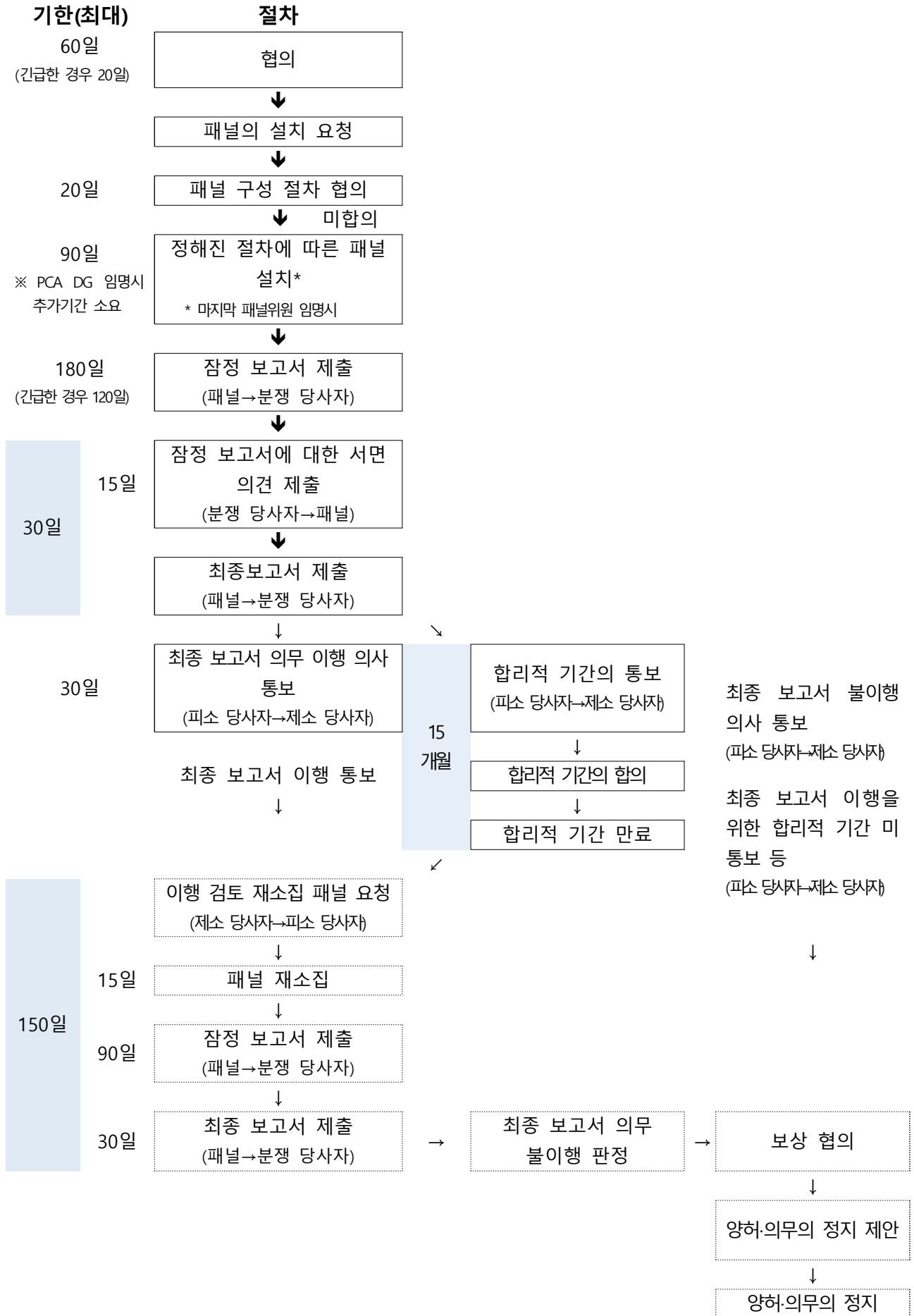
19. 접촉선 (제19.20조)

- 협정 당사자는 자신에 대한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30일 내에 제19장 (분쟁해결)을 위한 접촉선을 지정하고 그 밖의 당사자들에게 통보

20. 언어 (제19.21조)

- 분쟁해결 절차는 영어로 수행되고, 절차에서의 사용을 위해 영어 외 언어로 작성된 문서를 제출하는 당사자는 영어 번역본도 함께 제출

< RCEP 분쟁해결 절차 >



개요

- 협정의 발효, 개정, 다른 협정과의 관계 등과 관련한 조항을 규정

주요 내용

1. 부속서, 부록 및 각주 (제20.1조)

- 협정의 부속서, 부록 및 각주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

2. 다른 협정과의 관계 (제20.2조)

- 협정 당사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당사자인 기존의 국제 협정과 관련하여 해당 당사자들이 상호간에 갖는 권리·의무와 RCEP 협정의 권리·의무가 병존함을 확인
- 당사자가 기존의 국제 협정의 규정이 협정 규정에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 협의에 의해 해결*
 - * 다른 협정이 상품, 서비스, 투자 또는 인(person)에 대해 협정에 비해 더 유리한 대우를 부여한다는 사실은 협의 대상인 불합치가 있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음
- 협의에 의해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분쟁해결(제19장) 절차에 회부 가능

3. 개정된 또는 후속 국제 협정 (제20.3조)

- 협정에서 다른 국제 협정 또는 협정 규정을 언급하거나 협정에 통합한 경우*, 언급되거나 통합된 협정 또는 그 규정의 개정 시 어떠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정 관련 조항의 개정 필요성 여부에 대해 협의

* 예 : 일반적 예외(제17.12조) 등

4. 개정 (제20.4조)

- 당사자들은 합의에 의해 협정을 개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개정은 당사자들이 각자 적용 가능한 법적 절차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한 날 후 60일째 되는 날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

5. 기탁처 (제20.5조)

- 협정을 위한 기탁처로 아세안 사무총장을 지정하고 그 기능을 규정

6. 발효 (제20.6조)

- 아세안 서명국 중 6개국, 비아세안 서명국 중 3개국이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완료하고 그 문서를 기탁처에 기탁한 날 후 60일째 되는 날에 해당 문서를 기탁한 서명국에 대해 협정 발효
- 협정 발효시까지 국내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서명국에 대해서는 그 서명국이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완료하고 그 문서를 기탁처에 기탁한 날 후 60일째 되는 날에 발효

7. 탈퇴 (제20.7조)

- 당사자는 기탁처에 서면 통보의 제공을 통해 협정으로부터 탈퇴 가능
-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탈퇴의 서면 통보를 기탁처에 제공한 날 후 6개월 째 되는 날에 탈퇴의 효력이 발생하며, 남아 있는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협정 효력 유지

8. 일반 검토 (제20.8조)

- 미래에 당사자들이 당면하게 될 무역 및 투자 관련 문제와 도전에 대해 협정이 적절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정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협정 발효일 후 5년째에, 그리고 그 후 5년마다 협정의 일반 검토를 수행

9. 가입 (제20.9조)

- 협정은 그 발효일 후 18개월 째 되는 날에 모든 국가 및 개별 관세 영역의 가입을 위해 개방됨
 - 다만, 원교섭국으로서의 지위를 고려하여 인도는 협정의 발효일부터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
- 가입은 모든 당사자들의 동의 및 당사자들과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 또는 개별 관세 영역간에 합의된 조건에 따름
-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 또는 개별 관세 영역이 당사자들과 합의한 조건을 수용한다는 것을 명시한 가입 문서를 기탁처에 기탁한 날 후 60일째 되는 날, 또는 모든 당사자들이 각자 적용 가능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기탁처에 통보한 날 중 더 늦은 날에 가입 효력 발생

부록 1. 상품양허 주요내용

상품 양허 주요 내용

◇ 국별 RCEP 상품 양허안의 전체 수준을 분석하고, 한-아세안 FTA 등 상대국과의 기체결 FTA 대비 RCEP에서 추가 개선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구성

* 예) (RCEP) 10년철폐 / (한-아세안 FTA) 양허제외

※ (협상기준) 품목수 : (한국) HSK 2012 10단위 (2014년 기준)
(상대국) HS 2012 국별 최종 단위 (2014년 기준)

수입액 : '12-'13년 2개년 수입액 평균

기준 관세율 : '14년 MFN 실행세율

※ (분석순서) 협정문상 양허표 규정 순서(알파벳순) 등에 따라, 아세안*,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일본 순으로 작성

1. 한국 ↔ 아세안 (10개국)

[전반적 평가]

□ 아세안은 기체결 FTA(한-아세안 등) 관세철폐 수준(79.1~89.4%) 대비 품목별 관세를 추가로 철폐(1.7~14.7%p)하여 최종 관세철폐 비중을 국가별로 91.9~94.5%(싱가포르, 브루나이 제외)까지 확대

* 참고 : 싱가포르(기체결 FTA 100% 철폐), 브루나이(기체결+RCEP 100% 철폐)

○ 한국의 주요 수출 분야인 자동차(부품 포함), 철강, 석유화학과 기계부품, 섬유, 장신구 등 중소·중견기업 수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

□ 한국은 기체결 FTA(한-아세안 등) 관세철폐 수준(90.2~95.3%) 대비 품목별 관세를 추가 철폐(1.3~4.3%p)하여 최종 관세철폐 비중을 국가별로 94.6~96.6%로 확대

- 농·수·임산물은 민감성을 고려하여 대부분 기체결 FTA(한-베, 한-중 등)의 개방 수준을 유지
 - * 특히 개방시에도 장기철폐(10년이상), 관세감축 등 예외적 수단을 강구하여 개방에 따른 부정적 영향 최소화 노력
- 핵심 민감 품목은 추가 개방 없이 양허제외로 분류하여 현재 기체결 FTA 양허 수준 유지
 - * 쌀(관세율: 513%), 고추(270%), 마늘(360%), 양파(135%), 사과(45%), 배(45%), 명태(냉동)(25%) 등 전통적으로 민감성이 매우 높은 농수산물 및 수입액이 큰 주요 민감품목(바나나(30%), 파인애플(30%), 새우(20%), 오징어(10%) 등)
- 기존 FTA 대비 추가 관세철폐 품목은 농산물 130개, 수산물 110개이며, 대부분 장기 관세철폐(10-20년) 등으로 분류
 - * 일부 열대과일(구아바·망고스틴(30%, 10년), 두리안(45%, 10년), 파파야(30%, 10년), 기타과실(30%, 15년) 등), 뱀장어(27%, 20년), 게(20%, 20년) 등

< 참고 : 전체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기준) >

한국→아세안			아세안→한국		
기체결 FTA*	추가 철폐	최종 수준	기체결 FTA*	추가 철폐	최종 수준**
90.2~95.3%	1.3~4.3%p	<u>94.6~96.6%</u>	79.1~89.4%	1.7~14.7%p	<u>91.9~94.5%</u>

* 기체결 FTA :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싱가포르 FTA

** 기체결 FTA와 RCEP을 모두 고려한 최종 관세철폐 수준

< 참고 :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관세율: %) >

한국→아세안 (공통)	아세안→한국	
<p style="text-align: center;">< 공산품 (임산물 포함) ></p> <p>중유(3%), 윤활유(7%), 기타석유제품(5-6.5%), 면사(8%), 면직물(10%), 편직제의류(13%), 직물제의류(13%), 선박용엔진(8%), 건전지(13%), 전선(8%), 자전거(8%), 자전거 부품(8%), 윤활유(7%), 정밀화학제품(6.5-8%), 질소비료(2-6.5%), 세정위생용품(6.5%), 합성수지(6.5-8%), 제재목(5%), 파티클보드(8%), 합판(8-10%) 등</p> <p style="text-align: center;">< 농산물 ></p> <p>곡류가공품(8%), 식물성유지(5%), 키위(45%), 치즈(36%), 두류(27%), 캐슈넛(8%), 대추야자(30%), 구아바(30%), 망고스틴(30%), 레몬(30%), 두리안(45%), 김(20%), 과일주스(9-50%), 기타낙농품(49.5%), 기타농산가공품(45%), 맥주(30%), 위스키(20%), 기타주류(8-30%), 사료(5-50.6%) 등</p> <p style="text-align: center;">< 수산물 ></p> <p>참치(10%), 기타어류(10%), 넙치(20%), 한천(8%), 톳(20%), 조개(20%), 어류통조림(20%), 기타수산가공품(20%), 김(20%) 등</p>	인니	자동차부품(0-40%), 철강용기(8-15%), 형강 (7.5%), 합성수지(5-10%), 의료용품(5%), 사과(5%), 배(5%), 딸기(5%) 등
	말련	철강제품 (5%), 철강관(20%), 화물자동차 (30%), 승용차 (30%), 기계요소(5), 전선 (5%), 기타플라스틱제품(20%) 등
	필리핀	화물자동차 (30%), 자동차부품 (10%), 철강관(10%), 세정용품 (10%), 면사(7%), 꿀(3%), 맥주(15%), 기타과실(15%) 등
	태국	화물자동차 (40%), 자동차부품 (10%), 타이어(10%), 섬유기계(10%), 세정용품 (20%), 딸기(40%), 감(40%), 맥주(60%), 꿀(30%) 등
	베트남	철구조물 (10-12%), 화물자동차 (15-20%), 철강선(10-15%), 자동차부품 (10%), 주류(55), 기타농산가공품(10%) 등
	브루나이	자동차부품 (20%), 음향기기(5%), 타이어 (20%), 건설중장비(15%), 영상기기(5%), 세탁기(5%) 등
	캄보디아	폴리에스터섬유(7%), 승용차 (35%), 화물자동차 (15%), 건설중장비(15%), 섬유기계(15%), 자동차부품 (15%), 사과(7%) 등
	라오스	화물자동차 (30%), 산업기계 (5%), 펌프(10%), 냉장고(10%), 섬유제품(10%), 장갑(5%), 타이어(10%) 등
	미얀마	화물자동차 (3%), 섬유제품(4-7.5%), 자동차부품 (5%), 기타고무제품(5%) 등

[① 한국 ↔ 브루나이]

① 전체 품목

(한국측 양허)

□ 한국은 RCEP에서 브루나이에게 ①품목수 기준 90.7%(11,105개), ②對브루나이 수입액 기준 99.95%(19.6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철폐

○ 한국은 기체결 FTA* 대비 ①품목수 기준 3.5%(428개), ②對브루나이 수입액 기준 0.0%(44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추가 철폐

* 한-아세안 FTA

⇒ 한국은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브루나이에게 ①품목수 기준 94.8%(11,601개), ②對브루나이 수입액 기준 99.99%(19.6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최종 철폐

< 한국의 對브루나이 상품 양허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한국→브루나이	11,173 (91.3%)	1,959 (99.99%)	11,105 (90.7%)	1,958 (99.95%)	428 (3.5%)	44불 (0.0%)	11,601 (94.8%)	1,959 (99.99%)

< 한국의 對브루나이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관세철폐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對브루나이 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전체	12,243		1,958,861,713		
한-아세안 FTA	11,173	91.3%	1,958,735,646	99.99%	
즉시 철폐	99	0.8%	17	0.00%	곡류가공품(8), 키위(45), 중유(3), 윤활유(7), 기타석유제품(5-6.5), 면사(8), 면직물(10), 편직제의류(13), 직물제의류(13), 선박용엔진(8), 건전지(13), 전선(8), 자전거(8), 자전거부품(8) 등
10년 철폐	97	0.8%	0	0.00%	치즈(36), 두류(27), 캐슈넛(8), 대추야자(30), 구아바(30), 망고스틴(30), 레몬(30), 두리안(45), 김(20), 식물성유지(5), 기타농산가공품(8), 과일주스(9-50), 제재목(5), 섬유판(8), 합판(8) 등
15년 철폐	197	1.6%	27	0.00%	윤활유(7), 기타정밀화학제품(6.5-8), 질소비료(2-6.5), 비누(6.5), 합성수지(6.5), 제재목(5), 파티클보드(8), 합판(8-10), 편직제의류(13), 오리고기(18), 참치(10), 기타어류(10), 납치(20), 기타낙농품(49.5), 토란(30), 포도(건조)(21), 어류통조림(20), 기타수산가공품(20), 기타농산가공품(45), 맥주(30), 위스키(20), 기타주류(8-30), 사료(5-50.6) 등
20년 철폐	35	0.3%	1	0.00%	삼푸(5), 비누(6.5), 합성수지(6.5), 합판(8), 모사(8), 면사(8), 실뱀장어(27), 게(20), 오징어(10), 녹용(20), 타피오카(냉동)(45), 기타해조류(20) 등
소계	428	3.5%	44	0.00%	
최종 관세철폐	11,601	94.8%	1,958,735,690	99.99%	

(브루나이측 양허)

□ 브루나이는 RCEP에서 한국에게 ①품목수 기준 97.9%(9,720개), ②對한국 수입액 기준 99.9%(1.9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철폐

○ 브루나이는 기체결 FTA* 대비 ①품목수 기준 1.7%(167개), ②對한국 수입액 기준 7.0%(0.1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추가 철폐

* 한-아세안 FTA

⇒ 브루나이는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한국에게 전 품목 관세 철폐

< 브루나이의 對한국 상품 양허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브루나이 →한국	9,762 (98.3%)	181 (93.0%)	9,720 (97.9%)	194 (99.9%)	167 (1.7%)	14 (7.0%)	9,929 (100.0%)	194 (100.0%)

< 브루나이의 對한국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관세철폐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對한국수입액 평균(불)		주요 수입품목 (관세율, %)
전체	9,929		194,474,761		
한-아세안 FTA	9,762	98.3%	180,869,944	93.0%	
즉시 철폐	3	0.0%	7,318	0.0%	자동차부품(20)
10년 철폐	16	0.2%	48,693	0.0%	수상기(5), 레코드플레이어(5), 기타응향기기(5), 전신기기(5), 기타응향기기(5), VCR(5), 통신기기부품(5), 의자(5) 등
15년 철폐	129	1.3%	13,548,491	7.0%	환기통(5), 자동차부품(20), 스위치(5), 무선수신기(기타)(5), 항공기부품(20), 축전지(5), 건설중장비(15), 냉장고(5), 냉방기(5), 타이어튜브(20), 타이어(20), 세탁기(5), 영상기기(5) 등
20년 철폐	19	0.2%	315	0.0%	자동차부품(20), 축냉방기(5), 축전지(5), 스위치(5), 기타무선통신기기부품(5), TV(5) 등
소계	167	1.7%	13,604,817	7.0%	
최종 관세철폐	9,929	100.0%	194,474,761	100.0%	

2 공산품(임산물 포함)

(한국측 양허)

□ 한국은 RCEP에서 브루나이에게 전체 공산품(임산물 포함) 중 ①품목수 기준 95.5%(9,538개), ②對브루나이 수입액 기준 99.96%(19.6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철폐

○ 한국은 기체결 FTA* 대비 ①품목수 기준 1.9%(188개), ②對브루나이 수입액 기준 0.0%(17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추가 철폐

* 한-아세안 FTA

⇒ 한국은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브루나이에게 ①품목수 기준 98.4%(9,829개), ②對브루나이 수입액 기준 100%(19.6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최종 철폐

< 한국의 對브루나이 공산품(임산물 포함)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한국→브루나이	9,641 (96.5%)	1,959 (100.0%)	9,538 (95.5%)	1,958 (99.96%)	188 (1.9%)	17불 (0.0%)	9,829 (98.4%)	1,959 (100.0%)

< 한국의 對브루나이 공산품(임산물 포함)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對브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전체	9,989		1,958,738,681		
한-아세안 FTA	9,641	96.5%	1,958,694,428	100%	
즉시 철폐	91	0.9%	17	0.0%	중유(3), 윤활유(7), 기타석유제품(5-6.5), 면사(8), 면직물(10), 편직제의류(13), 직물제의류(13), 선박용엔진(8), 건전지(13), 전선(8), 자전거(8), 자전거부품(8) 등
10년 철폐	42	0.4%	0	0.0%	제재목(5), 섬유판(8), 합판(8), 시멘트(5) 등
15년 철폐	40	0.4%	0	0.0%	윤활유(7), 기타정밀화학제품(6.5-8), 질소비료(2-6.5), 비누(6.5), 합성수지(6.5-8), 제재목(5), 파티클보드(8), 합판(8-10), 편직제의류(13) 등
20년 철폐	15	0.2%	1	0.0%	삼푸(5), 비누(6.5), 합성수지(6.5), 합판(8), 모사(8), 면사(8) 등
소계	188	1.9%	17	0.0%	
최종 관세철폐	9,829	98.4%	1,958,694,445	100%	

(브루나이측 양허)

□ 브루나이는 RCEP에서 한국에게 전체 공산품(임산물 포함) 중 ①품목수 기준 98.2%(8,114개), ②對한국 수입액 기준 99.9%(1.9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철폐

○ 브루나이는 기체결 FTA* 대비 ①품목수 기준 2.0%(167개), ②對한국 수입액 기준 7.0%(0.1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추가 철폐

* 한-아세안 FTA

⇒ 브루나이는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한국에게 전 품목 관세 철폐

< 브루나이의 對한국 공산품(임산물 포함)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브루나이 →한국	8,092 (98.0%)	180 (93.0%)	8,114 (98.2%)	194 (99.9%)	167 (2.0%)	14 (7.0%)	8,259 (100%)	194 (100%)

< 브루나이의 對한국 공산품(임산물 포함)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관세철폐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對한국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전체	8,259		193,827,182		
한-아세안 FTA	8,092	98.0%	180,222,366	93.0%	
즉시 철폐	3	0.0%	7,318	0.0%	자동차부품(20)
10년 철폐	16	0.2%	48,693	0.0%	수상기(5), 레코드플레이어(5), 기타음향기기(5), 전신기기(5), 기타음향기기(5), VCR(5), 통신기기부품(5), 의자(5) 등
15년 철폐	129	1.6%	13,548,491	7.0%	환기통(5), 자동차부품(20), 스위치(5), 무선수신기(기타)(5), 항공기부품(20), 축전지(5), 건설중장비(15), 냉장고(5), 냉방기(5), 타이어튜브(20), 타이어(20), 세탁기(5), 영상기기(5) 등
20년 철폐	19	0.2%	315	0.0%	자동차부품(20), 축냉방기(5), 축전지(5), 스위치(5), 기타무선통신기기부품(5), TV(5) 등
소계	167	2.0%	13,604,817	7.0%	
최종 관세철폐	8,259	100.0%	193,827,182	100.0%	

3 농산물

(한국측 양허)

□ 한국은 RCEP에서 브루나이에게 전체 농산물 중 ①품목수 기준 63.4%(1,029개), ②對브루나이 수입액 기준 99.8%(4만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철폐

○ 한국은 기체결 FTA* 대비 ①품목수 기준 8.0%(130개), ②對브루나이수입액 기준 0.0%(27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추가 철폐

* 한-아세안 FTA

⇒ 한국은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브루나이에게 ①품목수 기준 75.4%(1,223개), ②對브루나이 수입액 기준 100%(4만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최종 철폐

< 한국의 對브루나이 농산물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한국→브루나이	1,093 (67.3%)	0.04 (99.93%)	1,029 (63.4%)	0.04 (99.8%)	130 (8.0%)	27불 (0.07%)	1,223 (75.4%)	0.04 (100%)

< 한국의 對브루나이 농산물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對브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전체	1,623		41,245		
한-아세안 FTA	1,093	67.3%	41,218	99.93%	
즉시 철폐	4	0.2%	0	0.00%	곡류가공품(8), 식물성유지(5), 키위(45), 치즈(36)
10년 철폐	54	3.3%	0	0.00%	치즈(36), 두류(27), 캐슈넛(8), 대추야자(30), 구아바(30), 망고스틴(30), 레몬(30), 두리안(45), 김(20), 식물성유지(5), 기타농산가공품(8), 과일주스(9-50) 등
15년 철폐	62	3.8%	27	0.07%	오리고기(18), 기타낙농품(49.5), 토란(30), 포도(건조)(21), 기타농산가공품(45), 맥주(30), 위스키(20), 기타주류(8-30), 사료(5-50.6) 등
20년 철폐	10	0.6%	0	0.00%	강낭콩(27), 오리고기(18), 쇠고기(18), 녹용(20), 타피오카(냉동)(45) 등
소계	130	8.0%	27	0.07%	
최종 관세철폐	1,223	75.4%	41,245	100.0%	

(브루나이측 양허)

□ 브루나이는 RCEP에서 한국에게 전체 농산물 중 ①품목수 기준 95.0%(1,216개),
 ②대한국 수입액 기준 100%(0.6백만불)에 대한 관세를 15년내로 철폐

○ 브루나이는 기체결 FTA*에서 농산물 전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

* 한-아세안 FTA

< 브루나이의 대한국 농산물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브루나이 →한국	1,280 (100%)	0.6 (100%)	1,216 (95.0%)	0.6 (100%)	-	-	1,280 (100%)	0.6 (100%)

< 브루나이의 대한국 농산물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관세철폐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대한국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전체	1,280		625,995		
한-아세안 FTA	1,280	100.0%	625,995	100.0%	
즉시 철폐	-	-	-	-	
10년 철폐	-	-	-	-	
15년 철폐	-	-	-	-	
20년 철폐	-	-	-	-	
소계	-	-	-	-	
최종 관세철폐	1,280	100.0%	625,995	100.0%	

4 수산물

(한국측 양허)

□ 한국은 RCEP에서 브루나이에게 전체 수산물 중 ①품목수 기준 85.3%(538개), ②對브루나이 수입액 기준 0.0%(無)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철폐

○ 한국은 기체결 FTA* 대비 ①품목수 기준 17.4%(110개), ②對브루나이 수입액 기준 0.0%(無)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추가 철폐

* 한-아세안 FTA

⇒ 한국은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브루나이에게 ①품목수 기준 87.0%(549개), ②對브루나이 수입액 기준 0.0%(無)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최종 철폐

< 한국의 對브루나이 수산물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한국→브루나이	439 (69.6%)	0 (0.0%)	538 (85.3%)	0 (0.0%)	110 (17.4%)	0 (0.0%)	549 (87.0%)	0 (0.0%)

< 한국의 對브루나이 수산물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對브 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전체	631		81,787		
한-아세안 FTA	439	69.6%	0	0.0%	
즉시 철폐	4	0.6%	0	0.0%	뱅장어(0), 피조개(0), 기타어류(농어)(0) 등
10년 철폐	1	0.2%	0	0.0%	김(20)
15년 철폐	95	15.1%	0	0.0%	참치(10), 기타어류(10), 넙치(20), 한천(8), 툫(20), 조개(피조개)(20), 조개(바지락)(20), 오징어(훈제)(20), 오징어(갈오징어)(10), 어류통조림(20), 기타수산물(20) 등
20년 철폐	10	1.6%	0	0.0%	실뱅장어(27), 게(20), 오징어(10), 기타해조류(20) 등
소계	110	17.4%	0	0.0%	
최종 관세철폐	549	87.0%	0	0.0%	

(브루나이측 양허)

□ 브루나이는 RCEP에서 한국에게 수산물 전 품목에 대해 즉시철폐

○ 브루나이는 기체결 FTA*에서도 수산물 전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

* 한-아세안 FTA

< 브루나이의 對한국 수산물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브루나이 →한국	390 (100%)	0.02 (100%)	390 (100%)	0.02 (100%)	-	-	390 (100%)	0.02 (100%)

< 브루나이의 對한국 수산물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관세철폐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對한국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품목수	관세철폐율	수입액	관세철폐율	
전체	390		21,584		
한-아세안 FTA	390	100.0%	21,584	100.0%	
즉시 철폐	-	-	-	-	
10년 철폐	-	-	-	-	
15년 철폐	-	-	-	-	
20년 철폐	-	-	-	-	
소계	-	-	-	-	
최종 관세철폐	390	100.0%	21,584	100.0%	

[② 한국 ↔ 캄보디아]

① 전체 품목

(한국측 양허)

□ 한국은 RCEP에서 캄보디아에게 ① 품목수 기준 90.7%(11,105개), ② 對캄보디아 수입액 기준 87.5%(1.15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철폐

○ 한국은 기체결 FTA* 대비 ① 품목수 기준 3.5%(428개), ② 對캄보디아 수입액 기준 11.3%(0.15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추가 철폐

* 한-아세안 FTA

⇒ 한국은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캄보디아에게 ① 품목수 기준 94.8%(11,601개), ② 對캄보디아 수입액 기준 94.2%(1.24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최종 철폐

< 한국의 對캄보디아 상품 양허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한국→ 캄보디아	11,173 (91.3%)	109 (82.9%)	11,105 (90.7%)	115 (87.5%)	428 (3.5%)	15 (11.3%)	11,601 (94.8%)	124 (94.2%)

< 한국의 對캄보디아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관세철폐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對캄보디아 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전체	12,243		131,335,869		
한-아세안 FTA	11,173	91.3%	108,932,003	82.9%	
즉시 철폐	99	0.8%	5,480,423	4.2%	곡류가공품(8), 키위(45), 중유(3), 윤활유(7), 기타석유제품(5-6.5), 면사(8), 면직물(10), 편직제의류(13), 직물제의류(13), 선박용엔진(8), 건전지(13), 전선(8), 자전거(8), 자전거부품(8) 등
10년 철폐	97	0.8%	3,213	0.0%	치즈(36), 캐슈넛(8), 대추야자(30), 구아바(30), 망고스틴(30), 레몬(30), 두리안(45), 김(20), 과일주스(9-50), 제재목(5), 섬유판(8), 합판(8) 등
15년 철폐	197	1.6%	8,211,472	6.3%	윤활유(7), 기타정밀화학제품(6.5-8), 질소비료(2-6.5), 비누(6.5), 합성수지(6.5), 제재목(5), 파티클보드(8), 합판(8-10), 편직제의류(13), 오리고기(18), 참치(10), 기타어류(10), 넙치(20), 기타낙농품(49.5), 토란(30), 포도(건조)(21), 맥주(30), 위스키(20), 기타주류(8-30), 사료(5-50.6) 등
20년 철폐	35	0.3%	1,145,926	0.9%	삼푸(5), 비누(6.5), 합성수지(6.5), 합판(8), 모사(8), 면사(8), 실뱀장어(27), 게(20), 오징어(10), 녹용(20), 타피오카(생동)(45), 기타해조류(20) 등
소계	428	3.5%	14,841,033	11.3%	
최종 관세철폐	11,601	94.8%	123,773,036	94.2%	

(캄보디아측 양허)

□ 캄보디아는 RCEP에서 한국에게 ①품목수 기준 87.1%(8,322개), ②對한국 수입액 기준 63.3%(4.0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철폐

○ 캄보디아는 기체결 FTA* 대비 ①품목수 기준 14.7%(1,401개), ②對한국 수입액 기준 27.7%(1.7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추가 철폐

* 한-아세안 FTA

⇒ 캄보디아는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한국에게 ①품목수 기준 94.5%(9,032개), ②對한국 수입액 기준 69.0%(4.3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최종 철폐

< 캄보디아의 對한국 상품 양허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캄보디아 →한국	7,631 (79.8%)	260 (41.3%)	8,322 (87.1%)	399 (63.3%)	1,401 (14.7%)	174 (27.7%)	9,032 (94.5%)	435 (69.0%)

< 캄보디아의 對한국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관세철폐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對한국수입액 평균(불)		주요 수입품목 (관세율, %)
전체	9,558		629,750,551		
한-아세안 FTA	7,631	79.8%	260,138,506	41.3%	
즉시 철폐	283	3.0%	6,899,956	1.1%	폴리에스터섬유(7), 기타정밀화학원료(7), 기타고무제품(15), 호두(7), 타피오카(7), 치즈(35), 식물성유지(7), 가공육류(35), 식물성한약재(7-35), 쇠고기(5-35), 곡분(15), 밀가루(15), 돼지고기(35), 고구마(7), 참치(15), 어류통조림(35), 새우(15), 낱치(15), 꽃게(15), 전복(35) 등
13년 철폐	527	5.5%	2,151,452	0.3%	TV(15), VCR(15), 기타고무제품(15), 승용차(35), 음향기기(15), 컴퓨터(15), 표면활성제(7), 이륜차(15), 밸브(15), 원동기(7), 섬유기계(15), 자동차부품(15), 용안(7), 과일주스(35), 낙농품(35), 계란류(35), 돼지고기(35), 밤(7), 버터(7), 사과(7), 송로(7), 쇠고기(35), 참깨(15-35), 치즈(35), 계(15), 새우(15), 합판(7) 등
15년 철폐	293	3.1%	32,392,319	5.1%	반도체(7), 건설용중장비(15), 광학기기(15), 고무제품(7-15), 플라스틱제품(7-15), 섬유기계(15), 승용차(35), 원동기(7), 자동차부품(15), 화물자동차(15), 화학기계(15), 쇠고기(35), 돼지고기(35), 견과류(7-35), 딸기(7), 키위(7), 사과(7), 포도(건조)(7), 과일주스(35), 주류(15), 해조류(15), 합판(7), 섬유판(7) 등
20년 철폐	298	3.1%	133,028,269	21.1%	건설중장비(15), 기타고무제품(15), 기타섬유제품(7), 밸브(15), 승용차(35), 자동차부품(15), 원동기(7), 석유제품(7-15), 주철관(7), 화물자동차(15), 가공육(15), 닭고기(35), 열대과일(7), 자두(7), 수박(7), 파인애플(7), 당류(7), 빵(7), 과일주스(35), 주류(15), 양배추(7) 등
소계	1,401	14.7%	174,471,996	27.7%	
최종 관세철폐	9,032	94.5%	434,610,502	69.0%	

2 공산품(임산물 포함)

(한국측 양허)

□ 한국은 RCEP에서 캄보디아에게 전체 공산품(임산물 포함) 중 ①품목수 기준 95.5%(9,538개), ②對캄보디아 수입액 기준 91.4%(1.1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철폐

○ 한국은 기체결 FTA* 대비 ①품목수 기준 1.9%(188개), ②對캄보디아 수입액 기준 11.5%(0.14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추가 철폐

* 한-아세안 FTA

⇒ 한국은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캄보디아에게 ①품목수 기준 98.4%(9,829개), ②對캄보디아 수입액 기준 98.8%(1.18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최종 철폐

< 한국의 對캄보디아 공산품(임산물 포함)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한국→ 캄보디아	9,641 (96.5%)	104 (87.4%)	9,538 (95.5%)	109 (91.4%)	188 (1.9%)	14 (11.5%)	9,829 (98.4%)	118 (98.8%)

< 한국의 對캄보디아 공산품(임산물 포함)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對캄보디아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전체	9,989		119,426,068		
한-아세안 FTA	9,641	96.5%	104,360,852	87.4%	
즉시 철폐	91	0.9%	5,480,423	4.6%	종유(3), 윤활유(7), 기타석유제품(5-6.5), 면사(8), 면직물(10), 편직제의류(13), 직물제의류(13), 선박용엔진(8), 건전지(13), 전선(8), 자전거(8), 자전거부품(8) 등
10년 철폐	42	0.4%	3,213	0.0%	제재목(5), 섬유판(8), 합판(8), 시멘트(5) 등
15년 철폐	40	0.4%	8,199,502	6.9%	윤활유(7), 기타정밀화학제품(6.5-8), 질소비료(2-6.5), 비누(6.5), 합성수지(6.5-8), 제재목(5), 파티클보드(8), 합판(8-10), 편직제의류(13) 등
20년 철폐	15	0.2%	206	0.0%	삼푸(5), 비누(6.5), 합성수지(6.5), 합판(8), 모사(8), 면사(8) 등
소계	188	1.9%	13,683,343	11.5%	
최종 관세철폐	9,829	98.4%	118,044,195	98.8%	

(캄보디아측 양허)

□ 캄보디아는 RCEP에서 한국에게 전체 공산품(임산물 포함) 중 ①품목수 기준 86.2%(6,801개), ②對한국 수입액 기준 64.3%(4.0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철폐

○ 캄보디아는 기체결 FTA* 대비 ①품목수 기준 11.4%(897개), ②對한국 수입액 기준 28.1%(1.7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추가 철폐

* 한-아세안 FTA

⇒ 캄보디아는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한국에게 ①품목수 기준 94.3%(7,437개), ②對한국 수입액 기준 69.7%(4.3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최종 철폐

< 캄보디아의 對한국 공산품(임산물 포함)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캄보디아 →한국	6,540 (82.9%)	257 (41.5%)	6,801 (86.2%)	397 (64.3%)	897 (11.4%)	174 (28.1%)	7,437 (94.3%)	431 (69.7%)

< 캄보디아의 對한국 공산품(임산물 포함)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관세철폐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對한국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전체	7,886		618,313,560		
한-아세안 FTA	6,540	82.9%	256,869,698	41.5%	
즉시 철폐	79	1.0%	6,476,044	1.0%	폴리에스터섬유(7), 종이제품(7), 재생직물(7), 인쇄용지(7), 순면직물(7), 소가죽(7), 판지(7), 기타정밀화학원료(7), 기타고무제품(15) 등
13년 철폐	424	5.4%	2,148,010	0.3%	TV(15), VCR(15), 건축용목제품(15), 기타고무제품(15), 기타공예품(7-35), 기타사(7), 승용차(35), 종이제품(7), 음향기기(15), 컴퓨터(15), 표면활성제(7), 이론차(15), 밸브(15), 원동기(7), 섬유기계(15), 스위치(15), 연결부품(15), 자동차부품(15) 합판(7) 등
15년 철폐	207	2.6%	32,346,794	5.2%	반도체(7), 건설용중장비(15), 광산기계(15), 광학기기(15), 기타가구(35), 고무제품(7-15), 플라스틱제품(7-15), 회전발전기(15), 기계요소(15), 섬유기계(15), 스위치(15), 승용차(35), 안경렌즈(15), 원동기(7), 자동차부품(15), 화물자동차(15), 화학기계(15), 합판(7), 섬유판(7) 등
20년 철폐	187	2.4%	132,985,923	21.5%	가열난방기(15), 건설중장비(15), 중량계(15), 기타고무제품(15), 기타문구(15), 기타섬유제품(7), 밸브(15), 볼링공구(35), 승용차(35), 자동차부품(15), 원동기(7), 석유제품(7-15), 주철관(7), 의류부속품(15), 화물자동차(15) 등
소계	897	11.4%	173,956,770	28.1%	
최종 관세철폐	7,437	94.3%	430,826,468	69.7%	

3 농산물

(한국측 양허)

□ 한국은 RCEP에서 캄보디아에게 전체 농산물 중 ①품목수 기준 63.4%(1,029개), ②對캄보디아 수입액 기준 53.5%(5백만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철폐

○ 한국은 기체결 FTA* 대비 ①품목수 기준 8.0%(130개), ②對캄보디아 수입액 기준 0.1%(1만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추가 철폐

* 한-아세안 FTA

⇒ 한국은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캄보디아에게 ①품목수 기준 75.4%(1,223개), ②對캄보디아 수입액 기준 53.5%(5백만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최종 철폐

< 한국의 對캄보디아 농산물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한국→ 캄보디아	1,093 (67.3%)	5 (53.4%)	1,029 (63.4%)	5 (53.5%)	130 (8.0%)	0.01 (0.1%)	1,223 (75.4%)	5 (53.5%)

< 한국의 對캄보디아 농산물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對캄보디아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전체	1,623		8,559,074		
한-아세안 FTA	1,093	67.3%	4,567,869	53.4%	
즉시 철폐	4	0.2%	0	0.0%	곡류가공품(8), 식물성유지(5), 키위(45), 치즈(36)
10년 철폐	54	3.3%	0	0.0%	치즈(36), 두류(27), 캐슈넛(8), 대추야자(30), 구아바(30), 망고스틴(30), 레몬(30), 두리안(45), 김(20), 식물성유지(5), 기타농산가공품(8), 과일주스(9-50) 등
15년 철폐	62	3.8%	11,970	0.1%	오리고기(18), 기타낙농품(49.5), 토란(30), 포도(건조)(21), 기타농산가공품(45), 맥주(30), 위스키(20), 기타주류(8-30), 사료(5-50.6) 등
20년 철폐	10	0.6%	0	0.0%	강낭콩(27), 오리고기(18), 쇠고기(18), 녹용(20), 타피오카(냉동)(45) 등
소계	130	8.0%	11,970	0.1%	
최종 관세철폐	1,223	75.4%	4,579,838	53.5%	

(캄보디아측 양허)

□ 캄보디아는 RCEP에서 한국에게 전체 농산물 중 ①품목수 기준 88.4%(1,130개), ②對한국 수입액 기준 9.5%(1백만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철폐

○ 캄보디아는 기체결 FTA* 대비 ①품목수 기준 30.4%(388개), ②對한국 수입액 기준 4.5%(0.5백만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추가 철폐

* 한-아세안 FTA

⇒ 캄보디아는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한국에게 ①품목수 기준 94.1%(1,203개), ②對한국 수입액 기준 33.0%(3.8백만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최종 철폐

< 캄보디아의 對한국 농산물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캄보디아 →한국	815 (63.8%)	3 (28.6%)	1,130 (88.4%)	1 (9.5%)	388 (30.4%)	0.5 (4.5%)	1,203 (94.1%)	4 (33.0%)

< 캄보디아의 對한국 농산물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관세철폐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對한국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전체	1,278		11,430,216		
한-아세안 FTA	815	63.8%	3,268,231	28.6%	
즉시 철폐	139	10.9%	423,912	3.7%	호두(7), 타피오카(7), 치즈(35), 식물성유지(7), 가공육류(35), 식물성한약재(7-35), 쇠고기(5-35), 곡분(15), 밀가루(15), 돼지고기(35), 기타식물성유지(7), 기타농산가공품(35), 고구마(7) 등
13년 철폐	70	5.5%	1,223	0.0%	용안(7), 서류(7), 과일주스(35), 기타곡분(7-15), 낙농품(35), 계란류(35), 돼지고기(35), 밤(7), 버찌(7), 버터(7), 사과(7), 송로(7), 쇠고기(35), 참깨(15-35), 치즈(35) 등
15년 철폐	73	5.7%	41,545	0.4%	쇠고기(35), 돼지고기(35), 견과류(7-35), 곡분(7-15), 딸기(7), 키위(7), 사과(7), 기타과실(7), 포도(건조)(7), 식물성유지(7), 과일주스(35), 주류(15) 등
20년 철폐	106	8.3%	42,347	0.4%	가금류(15), 닭고기(35), 열대과일(7), 자두(7), 수박(7), 파인애플(7), 기타농산가공품(35), 낙농품(7-35), 당류(7), 기타두류(7), 빵(7), 과일주스(35), 주류(15), 양배추(7), 화초류(15) 등
소계	388	30.4%	509,027	4.5%	
최종 관세철폐	1,203	94.1%	3,777,258	33.0%	

4 수산물

(한국측 양허)

□ 한국은 RCEP에서 캄보디아에게 전체 수산물 중 ①품목수 기준 85.3%(538개), ②對캄보디아 수입액 기준 34.3%(1백만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철폐

○ 한국은 기체결 FTA* 대비 ①품목수 기준 17.4%(110개), ②對캄보디아 수입액 기준 34.2%(1백만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추가 철폐

* 한-아세안 FTA

⇒ 한국은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캄보디아에게 ①품목수 기준 87.0%(549개), ②對캄보디아 수입액 기준 34.3%(1백만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최종 철폐

< 한국의 對캄보디아 수산물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한국→ 캄보디아	439 (69.6%)	3천불 (0.1%)	538 (85.3%)	1 (34.3%)	110 (17.4%)	1 (34.2%)	549 (87.0%)	1 (34.3%)

< 한국의 對캄보디아 수산물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對캄보디아 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전체	631		3,350,727		
한-아세안 FTA	439	69.6%	3,283	0.1%	
즉시 철폐	4	0.6%	0	0.0%	뱅장어(0), 피조개(0), 기타어류(농어)(0) 등
10년 철폐	1	0.2%	0	0.0%	김(20)
15년 철폐	95	15.1%	0	0.0%	참치(10), 기타어류(10), 넙치(20), 한천(8), 톳(20), 조개(피조개)(20), 조개(바지락)(20), 오징어(훈제)(20), 오징어(갑오징어)(10), 어류통조림(20), 기타수산물가공품(20) 등
20년 철폐	10	1.6%	1,145,721	34.2%	실뱅장어(27), 게(20), 오징어(10), 기타해조류(20) 등
소계	110	17.4%	1,145,721	34.2%	
최종 관세철폐	549	87.0%	1,149,003	34.3%	

(캄보디아측 양허)

□ 캄보디아는 RCEP에서 한국에게 수산물 전 품목에 대해 ①품목수 기준 99.2%(391개), ②對한국 수입액 기준 93.9%(6.3천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철폐

○ 캄보디아는 기체결 FTA* 대비 ①품목수 기준 29.4%(116개), ②對한국 수입액 기준 91.5%(6.2천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추가 철폐

* 한-아세안 FTA

⇒ 캄보디아는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한국에게 ①품목수 기준 99.5%(392개), ②對한국 수입액 기준 100%(6.7천불)에 대한 관세를 철폐

< 캄보디아의 對한국 수산물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캄보디아 →한국	276 (70.1%)	577불 (8.5%)	391 (99.2%)	0.01 (93.9%)	116 (29.4%)	0.01 (91.5%)	392 (99.5%)	0.01 (100%)

< 캄보디아의 對한국 수산물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관세철폐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對한국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전체	394		6,776		
한-아세안 FTA	276	70.1%	577	8.5%	
즉시 철폐	65	16.5%	0	0.0%	참치(15), 어류통조림(35), 새우(15), 납치(15), 꽃게(15), 기타조개(15), 기타어류(15), 전복(35), 기타수산물(15-35) 등
13년 철폐	33	8.4%	2,219	32.7%	게(15), 기타수산가공품(35), 기타수산물(35), 기타어류(15), 해조류(15), 새우(15), 어류통조림(35), 오징어(훈제) (35) 등
15년 철폐	13	3.3%	3,980	58.7%	기타수산가공품(35), 기타어류(7-15), 해조류(15), 수산물가공품(35) 등
20년 철폐	5	1.3%	0	0.0%	기타어류(15)
소계	116	29.4%	6,199	91.5%	
최종 관세철폐	392	99.5%	6,776	100.0%	

[③ 한국 ↔ 인도네시아]

1 전체 품목

(한국측 양허)

□ 한국은 RCEP에서 인니에게 ①품목수 기준 90.7%(11,105개), ②對인니 수입액 기준 96.9%(139.9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 철폐

○ 한국은 기체결 FTA* 대비 ①품목수 기준 4.1%(499개), ②對인니 수입액 기준 4.6%(6.6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추가 철폐

* 한-아세안 FTA

⇒ 한국은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인니에게 ①품목수 기준 94.6%(11,583개), ②對인니 수입액 기준 98.6%(142.3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최종 철폐

< 한국의 對인니 상품 양허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한→인니	11,084 (90.5%)	13,569 (94.0%)	11,105 (90.7%)	13,986 (96.9%)	499 (4.1%)	660 (4.6%)	11,583 (94.6%)	14,229 (98.6%)

< 한국의 對인니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관세철폐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對인니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전체	12,243		14,433,135,080		
한-아세안 FTA	11,084	90.5%	13,568,619,748	94.0%	
즉시 철폐	152	1.2%	438,008,534	3.0%	뱅장어(0), 원당(3), 키위(45), 곡류가공품(8), 중유(3), 윤활유(7), 기타석유제품(5-6.5), 면사(8), 면직물(10), 편직제의류(13), 직물제의류(13), 선박용엔진(8), 건전지(13), 전선(8), 경작기계(8), 중고차(8-10), 화물차(10), 이륜차(8), 자전거(8), 자전거부품(8) 등
10년 철폐	100	0.8%	15,636,353	0.1%	치즈(36), 두류(27), 캐슈넛(8), 대추야자(30), 구아바(30), 망고스틴(30), 레몬(30), 두리안(45), 김(20), 식물성유지(5), 기타농산가공품(8), 과일주스(9-50), 제재목(5), 섬유판(8), 합판(8), 자동차부품(8) 등
15년 철폐	212	1.7%	201,285,706	1.4%	윤활유(7), 기타정밀화학제품(6.5-8), 질소비료(2-6.5), 비누(6.5), 합성수지(6.5), 제재목(5), 파티클보드(8), 합판(8-10), 편직제의류(13), 자동차부품(8), 오리고기(18), 참치(10), 기타어류(10), 납치(20), 기타낙농품(49.5), 토란(30), 포도(건조)(21), 한천(8), 어류통조림(20), 기타수산가공품(20), 기타농산가공품(45), 맥주(30), 위스키(20), 기타주류(8-30), 사료(5-50.6) 등
20년 철폐	35	0.3%	5,488,181	0.0%	삼푸(5), 비누(6.5), 합성수지(6.5), 합판(8), 모사(8), 면사(8), 실뱅장어(27), 계(20), 오징어(10), 녹용(20), 타피오카(냉동)(45), 기타해조류(20) 등
소계	499	4.1%	660,418,774	4.6%	
최종 관세철폐	11,583	94.6%	14,229,038,522	98.6%	

(인니측 양허)

□ 인니는 RCEP에서 한국에게 ① 품목수 기준 89.5%(8,959개), ② 대한민국 수입액 기준 80.3%(94.6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철폐

○ 인니는 기체결 FTA* 대비 ① 품목수 기준 11.3%(1,134개), ② 대한민국 수입액 기준 3.9%(4.6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추가 철폐

* 한-아세안 FTA

⇒ 인니는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한국에게 ① 품목수 기준 93.6%(9,368개), ② 대한민국 수입액 기준 89.7%(105.6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최종 철폐

< 인니의 대한국 상품 양허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인니→한	8,234 (82.2%)	10,106 (85.8%)	8,959 (89.5%)	9,460 (80.3%)	1,134 (11.3%)	458 (3.9%)	9,368 (93.6%)	10,563 (89.7%)

< 인니의 대한국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관세철폐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대한민국수입액 평균(불)		주요 수입품목 (관세율, %)
전체	10,012		11,779,546,525		
한-아세안 FTA	8,234	82.2%	10,105,639,126	85.8%	
즉시 철폐	623	6.2%	135,476,881	1.2%	합성수지(5), 면사(5), 필름류(10), 편직제의류(15), 합성고무(5), 모사(5), 섬유사(5), 플라스틱제품(10-15), 접착제(5), 볼베어링(5), 섬유기계(7.5), 인삼류(5), 배(5), 당류(5), 버섯류(5), 사과(5), 감(5), 포도(5), 기타농산가공품(5), 해조류(5), 기타어류(5), 참치(5), 새우(5), 목재류(5-10) 등
10년 철폐	286	2.9%	181,744,750	1.5%	저밀도에틸렌(10), 기타플라스틱제품(10), 철강재용기(7.5), 산업기계(7.5), 자동차부품(10), 원동기(10), 펌프(5), 주철(12.5), 형강(7.5), 기타석유화학제품(5), 스크류(5), 면류(5), 곡류가공품(5), 낙농품(5), 고추류(5), 강냉콩(5), 양(5), 파인애플(5), 딸기(5), 해조류(5), 기타어류(5), 기타수산물통조림(5) 등
15년 철폐	156	1.6%	71,751,807	0.6%	섬유사(5), 합성수지(5), 기타석유화학제품(5), 자동차부품(40), 냉장고(10), 무선통신기기(10), 철강재용기(15), 직물제의류(15), 기타의료위생용품(5), 편직제의류(15), 기타정밀화학원료(5), 음료(5), 기타농산가공품(5), 가축육류(5), 낙농품(5), 곡분(5), 마늘(5), 양배추(5), 레몬(5), 녹차(5), 수산물통조림(참치)(10), 기타수산가공품(5), 기타어류(5) 등
20년 철폐	69	0.7%	68,765,587	0.6%	합성수지(5-10), 기타플라스틱제품(15), 필름류(15), 음향기기(10), 기타정밀화학원료(10), 가열기구(7.5), 가공육류(5), 어류(틸라피아)(10), 기타수산가공품(5), 계(5) 등
소계	1,134	11.3%	457,739,025	3.9%	
최종 관세철폐	9,368	93.6%	10,563,378,151	89.7%	

2) 공산품(임산물 포함)

(한국측 양허)

□ 한국은 RCEP에서 인니에게 전체 공산품(임산물 포함) 중 ① 품목수 기준 95.5%(9,538개), ② 對인니 수입액 기준 97.1%(135.8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철폐

○ 한국은 기체결 FTA* 대비 ① 품목수 기준 2.5%(247개), ② 對인니 수입액 기준 4.6%(6.5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추가 철폐

* 한-아세안 FTA

⇒ 한국은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인니에게 ① 품목수 기준 98.2%(9,811개), ② 對인니 수입액 기준 98.8%(138.2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최종 철폐

< 한국의 對인니 공산품(임산물 포함)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한→인니	9,564 (95.7%)	13,167 (94.1%)	9,538 (95.5%)	13,580 (97.1%)	247 (2.5%)	648 (4.6%)	9,811 (98.2%)	13,815 (98.8%)

< 한국의 對인니 공산품(임산물 포함)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對인니 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전체	9,989		13,984,714,906		
한-아세안 FTA	9,564	95.7%	13,166,509,552	94.1%	
즉시 철폐	139	1.4%	437,039,808	3.1%	종유(3), 윤활유(7), 기타석유제품(5-6.5), 면사(8), 면직물(10), 편직제의류(13), 직물제의류(13), 선박용엔진(8), 건전지(13), 전선(8), 경작기계(8), 중고차(8-10), 화물차(10), 이륜차(8), 자전거(8), 자전거부품(8) 등
10년 철폐	43	0.4%	11,093,696	0.1%	제재목(5), 섬유판(8), 합판(8), 자동차부품(8) 등
15년 철폐	50	0.5%	199,518,505	1.4%	윤활유(7), 기타정밀화학제품(6.5-8), 질소비료(2-6.5), 비누(6.5), 합성수지(6.5), 제재목(5), 파티클보드(8), 합판(8-10), 편직제의류(13), 자동차부품(8) 등
20년 철폐	15	0.2%	533,270	0.0%	삼푸(5), 비누(6.5), 합성수지(6.5), 합판(8), 모사(8), 면사(8) 등
소계	247	2.5%	648,185,278	4.6%	
최종 관세철폐	9,811	98.2%	13,814,694,830	98.8%	

(인니측 양허)

□ 인니는 RCEP에서 한국에게 전체 공산품(임산물 포함) 중 ①품목수 기준 88.9%(7,348개), ②對한국 수입액 기준 80.2%(93.4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 내로 철폐

○ 인니는 기체결 FTA* 대비 ①품목수 기준 6.8%(563개), ②對한국 수입액 기준 3.9%(4.5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추가 철폐

* 한-아세안 FTA

⇒ 인니는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한국에게 ①품목수 기준 93.6%(7,733개), ②對한국 수입액 기준 89.6%(104.4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 내로 최종 철폐

< 인니의 對한국 공산품(임산물 포함)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인니→한	7,170 (86.8%)	9,993 (85.8%)	7,348 (88.9%)	9,340 (80.2%)	563 (6.8%)	450 (3.9%)	7,733 (93.6%)	10,443 (89.6%)

< 인니의 對한국 공산품(임산물 포함)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관세철폐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對한국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전체	8,264		11,651,716,438		
한-아세안 FTA	7,170	86.8%	9,993,332,095	85.8%	
즉시 철폐	250	3.0%	129,930,504	1.1%	합성수지(5), 면사(5), 필름류(10), 편직제의류(15), 합성고무(5), 모사(5), 섬유사(5), 플라스틱제품(10-15), 접착제(5), 볼베어링(5), 섬유기계(7.5) 등
10년 철폐	168	2.0%	179,977,868	1.5%	저밀도에틸렌(10), 기타플라스틱제품(10), 철강재용기(7.5), 산업기계(7.5), 자동차부품(10), 원동기(10), 펌프(5), 주철(12.5), 형강(7.5), 기타석유화학제품(5) 등
15년 철폐	92	1.1%	71,143,077	0.6%	섬유사(5), 합성수지(5), 기타석유화학제품(5), 자동차부품(40), 냉장고(10), 무선통신기기(10), 철강재용기(15), 직물제의류(15), 기타의료위생용품(5), 편직제의류(15), 기타정밀화학원료(5) 등
20년 철폐	53	0.6%	68,735,035	0.6%	합성수지(5-10), 기타플라스틱제품(15), 필름류(15), 음향기기(10), 기타정밀화학원료(10), 가열기구(7.5) 등
소계	563	6.8%	449,786,483	3.9%	
최종 관세철폐	7,733	93.6%	10,443,118,578	89.6%	

3 농산물

(한국측 양허)

□ 한국은 RCEP에서 인니에게 전체 농산물 중 ① 품목수 기준 63.4%(1,029개), ② 對인니 수입액 기준 93.6%(3.6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철폐

○ 한국은 기체결 FTA* 대비 ① 품목수 기준 8.3%(134개), ② 對인니 수입액 기준 2.8%(0.1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추가 철폐

* 한-아세안 FTA

⇒ 한국은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인니에게 ① 품목수 기준 75.4%(1,223개), ② 對인니 수입액 기준 95.6%(3.6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최종 철폐

< 한국의 對인니 농산물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한→인니	1,089 (67.1%)	355 (92.8%)	1,029 (63.4%)	358 (93.6%)	134 (8.3%)	11 (2.8%)	1,223 (75.4%)	366 (95.6%)

< 한국의 對인니 농산물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對인니 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전체	1,623		382,640,506		
한-아세안 FTA	1,089	67.1%	354,919,294	92.8%	
즉시 철폐	6	0.4%	88	0.0%	원당(3), 키위(45), 곡류가공품(8), 식물성유지(5), 치즈(36) 등
10년 철폐	55	3.4%	4,542,658	1.2%	치즈(36), 두류(27), 캐슈넛(8), 대추야자(30), 구아바(30), 망고스틴(30), 레몬(30), 두리안(45), 식물성유지(5), 기타농산가공품(8), 과일주스(9-50) 등
15년 철폐	63	3.9%	1,404,957	0.4%	기타낙농품(49.5), 토란(30), 포도(건조)(21), 기타농산가공품(45), 맥주(30), 위스키(20), 기타주류(8-30), 사료(5-50.6) 등
20년 철폐	10	0.6%	4,954,906	1.3%	녹용(20), 타피오카(냉동)(45) 등
소계	134	8.3%	10,902,608	2.8%	
최종 관세철폐	1,223	75.4%	365,821,901	95.6%	

(인니측 양허)

□ 인니는 RCEP에서 한국에게 전체 농산물 중 ① 품목수 기준 91.1%(1,184개), ② 대한국 수입액 기준 93.0%(1.0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철폐

○ 인니는 기체결 FTA* 대비 ① 품목수 기준 30.3%(394개), ② 대한국 수입액 기준 5.7%(5.9백만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추가 철폐

* 한-아세안 FTA

⇒ 인니는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한국에게 ① 품목수 기준 92.8%(1,206개), ② 대한국 수입액 기준 93.3%(1.0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최종 철폐

< 인니의 대한국 농산물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인니→한	812 (62.5%)	90 (87.5%)	1,184 (91.1%)	96 (93.0%)	394 (30.3%)	6 (5.7%)	1,206 (92.8%)	96 (93.3%)

< 인니의 대한국 농산물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관세철폐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대한국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전체	1,300		102,951,560		
한-아세안 FTA	812	62.5%	90,125,277	87.5%	
즉시 철폐	275	21.2%	4,003,595	3.9%	인삼류(5), 배(5), 당류(5), 버섯류(5), 사과(5), 감(5), 포도(5), 기타농산가공품(5), 유류가공품(5), 곡류가공품(5), 견과류(5), 기타식물성물질(5), 식물성유지(5), 쇠고기(5), 돼지고기(5), 기타가축육류(5) 등
10년 철폐	76	5.8%	1,696,255	1.6%	소스류(5), 식물성액즙(5), 면류(5), 식물성유지(5), 빵 제조용재료(5-10), 곡류가공품(5), 낙농품(5), 고추류(5), 강낭콩(5), 양(5), 파인애플(5), 딸기(5) 등
15년 철폐	40	3.1%	203,874	0.2%	음료(5), 기타농산가공품(5), 가축육류(5), 낙농품(5), 곡분(5), 마늘(5), 양배추(5), 레몬(5), 녹차(5) 등
20년 철폐	3	0.2%	0	0.0%	가금육류(5) 등
소계	394	30.3%	5,903,723	5.7%	
최종 관세철폐	1,206	92.8%	96,029,000	93.3%	

4 수산물

(한국측 양허)

□ 한국은 RCEP에서 인니에게 전체 수산물 중 ① 품목수 기준 85.3%(538개), ② 對인니 수입액 기준 72.4%(0.5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철폐

○ 한국은 기체결 FTA* 대비 ① 품목수 기준 18.7%(118개), ② 對인니 수입액 기준 2.0%(1백만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추가 철폐

* 한-아세안 FTA

⇒ 한국은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인니에게 ① 품목수 기준 87.0%(549개), ② 對인니 수입액 기준 73.8%(0.5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최종 철폐

< 한국의 對인니 수산물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한→인니	431 (68.3%)	47 (71.7%)	538 (85.3%)	48 (72.4%)	118 (18.7%)	1 (2.0%)	549 (87.0%)	49 (73.8%)

< 한국의 對인니 수산물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對인니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전체	631		65,779,669		
한-아세안 FTA	431	68.3%	47,190,903	71.7%	
즉시 철폐	7	1.1%	968,639	1.5%	뱅장어(0), 수산부산물(5-8), 피조개(0), 기타어류(농어)(0) 등
10년 철폐	2	0.3%	0	0.0%	김(20), 바닷가재(20)
15년 철폐	99	15.7%	362,245	0.6%	참치(10), 기타어류(10), 넙치(20), 한천(8), 톳(20), 조개(피조개)(20), 조개(바지락)(20), 오징어(훈제)(20), 오징어(갇오징어)(10), 어류통조림(20), 기타수산가공품(20) 등
20년 철폐	10	1.6%	6	0.0%	실뱀장어(27), 게(20), 오징어(10), 기타해조류(20) 등
소계	118	18.7%	1,330,889	2.0%	
최종 관세철폐	549	87.0%	48,521,792	73.8%	

(인니측 양허)

□ 인니는 RCEP에서 한국에게 전체 수산물 중 ①품목수 기준 95.3%(427개), ②對한국 수입액 기준 97.4%(0.2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철폐

○ 인니는 기체결 FTA* 대비 ①품목수 기준 39.5%(177개), ②對한국 수입액 기준 8.2%(2백만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추가 철폐

* 한-아세안 FTA

⇒ 인니는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한국에게 ①품목수 기준 95.8%(429개), ②對한국 수입액 기준 97.4%(0.2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최종 철폐

< 인니의 對한국 수산물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인니→한	252 (56.3%)	22 (89.2%)	427 (95.3%)	24 (97.4%)	177 (39.5%)	2 (8.2%)	429 (95.8%)	24 (97.4%)

< 인니의 對한국 수산물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관세철폐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對한국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전체	448		24,878,527		
한-아세안 FTA	252	56.3%	22,181,754	89.2%	
즉시 철폐	98	21.9%	1,542,783	6.2%	해조류(5), 기타어류(5), 가자미(5), 대구(5), 참치(5), 새우(5), 기타수산물가공품(5), 조개(5), 수산물통조림(5) 등
10년 철폐	42	9.4%	70,628	0.3%	해조류(5), 기타어류(5), 참치(5), 기타수산물가공품(5), 새우(5), 기타연체동물(5), 기타수산물통조림(5) 등
15년 철폐	24	5.4%	404,857	1.6%	수산물통조림(참치)(10), 명태(5), 넙치(5), 대구(5), 한천(5), 기타수산물가공품(5), 기타어류(5) 등
20년 철폐	13	2.9%	30,553	0.1%	어류(틸라피아)(10), 기타수산물가공품(5), 계(5) 등
소계	177	39.5%	2,048,820	8.2%	
최종 관세철폐	429	95.8%	24,230,574	97.4%	

[④ 한국 ↔ 라오스]

① 전체 품목

(한국측 양허)

□ 한국은 RCEP에서 라오스에게 ①품목수 기준 90.7%(11,105개), ②對라오스 수입액 기준 56.1%(7백만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철폐

○ 한국은 기체결 FTA* 대비 ①품목수 기준 3.5%(428개), ②對라오스 수입액 기준 4.4%(0.5백만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추가 철폐

* 한-아세안 FTA

⇒ 한국은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라오스에게 ①품목수 기준 94.8%(11,601개), ②對라오스 수입액 기준 98.2%(0.1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최종 철폐

< 한국의 對라오스 상품 양허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한국→ 라오스	11,173 (91.3%)	11 (93.8%)	11,105 (90.7%)	7 (56.1%)	428 (3.5%)	0.5 (4.4%)	11,601 (94.8%)	12 (98.2%)

< 한국의 對라오스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관세철폐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對라오스 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전체	12,243		11,913,602		
한-아세안 FTA	11,173	91.3%	11,172,665	93.8%	
즉시 철폐	99	0.8%	341,529	2.9%	곡류가공품(8), 키위(45), 중유(3), 윤활유(7), 기타석유제품(5-6.5), 면사(8), 면직물(10), 편직제의류(13), 직물제의류(13), 선박용엔진(8), 건전지(13), 전선(8), 자전거(8), 자전거부품(8) 등
10년 철폐	97	0.8%	149,760	1.3%	치즈(36), 두류(27), 캐슈넛(8), 대추야자(30), 구아바(30), 망고스틴(30), 레몬(30), 두리안(45), 김(20), 제재목(5), 섬유판(8), 합판(8) 등
15년 철폐	197	1.6%	32,325	0.3%	윤활유(7), 기타정밀화학제품(6.5-8), 비누(6.5), 합성수지(6.5), 제재목(5), 파티클보드(8), 합판(8-10), 편직제의류(13), 오리고기(18), 참치(10), 기타어류(10), 낚치(20), 기타낙농품(49.5), 토란(30), 포도(건조)(21), 어류통조림(20), 맥주(30), 위스키(20), 사료(5-50.6) 등
20년 철폐	35	0.3%	277	0.0%	샴푸(5), 비누(6.5), 합성수지(6.5), 합판(8), 모사(8), 면사(8), 실백장어(27), 게(20), 오징어(10), 녹용(20), 타피오카(냉동)(45), 기타해조류(20) 등
소계	428	3.5%	523,891	4.4%	
최종 관세철폐	11,601	94.8%	11,696,556	98.2%	

(라오스측 양허)

□ 라오스는 RCEP에서 한국에게 ① 품목수 기준 86.0%(8,219개), ② 對한국 수입액 기준 50.7%(0.3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철폐

○ 라오스는 기체결 FTA* 대비 ① 품목수 기준 9.1%(868개), ② 對한국 수입액 기준 20.7%(0.1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추가 철폐

* 한-아세안 FTA

⇒ 라오스는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한국에게 ① 품목수 기준 93.5%(8,941개), ② 對한국 수입액 기준 51.4%(0.3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최종 철폐

< 라오스의 對한국 상품 양허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라오스 → 한국	8,073 (84.5%)	17 (30.7%)	8,219 (86.0%)	28 (50.7%)	868 (9.1%)	11 (20.7%)	8,941 (93.5%)	29 (51.4%)

< 라오스의 對한국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관세철폐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對한국수입액 평균(불)		주요 수입품목 (관세율, %)
전체	9,558		55,515,106		
한-아세안 FTA	8,073	84.5%	17,050,884	30.7%	
즉시 철폐	199	2.1%	148,836	0.3%	가죽제품(10), 계측기(5), 계측기부품(5), 고무벨트(10), 기계요소(5), 산업기계(5), 냉장고(10), 무선통신기기(10), 반도체제조기계(5), 벨트(10), 선박용엔진(10), 운반하역기계(5), 의약품(10), 타이어(10), 타이어튜브(10), 펌프(10), 섬유제품(10), 곡류가공품(10), 코르크(5-10) 등
13년 철폐	5	0.1%	32,200	0.1%	화물자동차(탱크차, 폐기물차, 냉장차, 기타)(30)
15년 철폐	531	5.6%	11,310,704	20.4%	가죽제품(10), 건설중장비(5), 계측기(5), 공기조절기(10), 기타가정용전자기기(10), 가정용전자기기부품(10), 기타문구(10), 기타자동차(10), 장갑류(5), 플라스틱제품(10), 난방기기(10), 냉방기(10), 무선통신기기부품(10), 반도체제조용장비(10), 승용차(40), 원동기(10), 유선통신기기부품(10), 음향기기부품(10), 정밀화학제품(10), 자동차부품(10), 전기다리미(10), 기타전신기기(10), 타이어(10), 섬유제품(10), 당류(10), 곡류가공품(10), 목제생활용품(10) 등
20년 철폐	133	1.4%	0	0.0%	TV수상기(20), 공기조절기(20), 기타음향기기(20), 라디오(20), 연초류(5), 원동기(30-40), 음향기기부품(20), 레코트플레이어(20), 화초류(백합, 국화, 난, 카네이션, 장미 등)(30), 가정용전자제품(20), 공예품(20) 등
소계	868	9.1%	11,491,739	20.7%	
최종 관세철폐	8,941	93.5%	28,542,623	51.4%	

2 공산품(임산물 포함)

(한국측 양허)

□ 한국은 RCEP에서 라오스에게 전체 공산품(임산물 포함) 중 ①품목수 기준 95.5%(9,538개), ②對라오스 수입액 기준 54.3%(6백만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철폐

○ 한국은 기체결 FTA* 대비 ①품목수 기준 1.9%(188개), ②對라오스 수입액 기준 4.5%(0.5백만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추가 철폐

* 한-아세안 FTA

⇒ 한국은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라오스에게 ①품목수 기준 98.4%(9,829개), ②對라오스 수입액 기준 98.2%(0.1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최종 철폐

< 한국의 對라오스 공산품(임산물 포함)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한국→ 라오스	9,641 (96.5%)	11 (93.7%)	9,538 (95.5%)	6 (54.3%)	188 (1.9%)	0.5 (4.5%)	9,829 (98.4%)	11 (98.2%)

< 한국의 對라오스 공산품(임산물 포함)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對라오스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전체	9,989		11,428,474		
한-아세안 FTA	9,641	96.5%	10,711,066	93.7%	
즉시 철폐	91	0.9%	341,529	3.0%	중유(3), 윤활유(7), 기타석유제품(5-6.5), 면사(8), 면직물(10), 편직제의류(13), 직물제의류(13), 선박용엔진(8), 건전지(13), 전선(8), 자전거(8), 자전거부품(8) 등
10년 철폐	42	0.4%	149,729	1.3%	제재목(5), 섬유판(8), 합판(8), 시멘트(5) 등
15년 철폐	40	0.4%	17,235	0.2%	윤활유(7), 기타정밀화학제품(6.5-8), 질소비료(2-6.5), 비누(6.5), 합성수지(6.5-8), 제재목(5), 파티클보드(8), 합판(8-10), 편직제의류(13) 등
20년 철폐	15	0.2%	216	0.0%	샴푸(5), 비누(6.5), 합성수지(6.5), 합판(8), 모사(8), 면사(8) 등
소계	188	1.9%	508,708	4.5%	
최종 관세철폐	9,829	98.4%	11,219,774	98.2%	

(라오스측 양허)

□ 라오스는 RCEP에서 한국에게 전체 공산품(임산물 포함) 중 ①품목수 기준 91.2%(7,195개), ②對한국 수입액 기준 50.7%(0.3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철폐

○ 라오스는 기체결 FTA* 대비 ①품목수 기준 10.6%(833개), ②對한국 수입액 기준 20.7%(0.1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추가 철폐

* 한-아세안 FTA

⇒ 라오스는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한국에게 ①품목수 기준 96.0%(7,573개), ②對한국 수입액 기준 51.4%(0.3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최종 철폐

< 라오스의 對한국 공산품(임산물 포함)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라오스 → 한국	6,740 (85.5%)	17 (30.7%)	7,195 (91.2%)	28 (50.7%)	833 (10.6%)	11 (20.7%)	7,573 (96.0%)	28 (51.4%)

< 라오스의 對한국 공산품(임산물 포함)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관세철폐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對한국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전체	7,886		55,421,986		
한-아세안 FTA	6,740	85.5%	16,996,204	30.7%	
즉시 철폐	196	2.5%	148,836	0.3%	가죽제품(10), 계측기(5), 계측기부품(5), 고무벨트(10), 기계요소(5), 산업기계(5), 냉장고(10), 무선통신기기(10), 반도체제조기계(5), 벨트(10), 선박용엔진(10), 운반하역기계(5), 의약품(10), 타이어(10), 타이어튜브(10), 펌프(10), 석유제품(10) 등
13년 철폐	5	0.1%	32,200	0.1%	화물자동차(탱크차, 폐기물차, 냉장차, 기타)(30)
15년 철폐	529	6.7%	11,310,704	20.4%	가죽제품(10), 건설중장비(5), 계측기(5), 공기조절기(10), 기타가정용전자기기(10), 가정용전자기기부품(10), 기타문구(10), 기타자동차(10), 장갑류(5), 플라스틱제품(10), 난방기기(10), 냉방기(10), 무선통신기기부품(10), 반도체제조장비(10), 승용차(40), 원동기(10), 유선통신기기부품(10), 음향기기부품(10), 정밀화학제품(10), 자동차부품(10), 전기다리미(10), 기타전신기기(10), 타이어(10), 석유제품(10) 등
20년 철폐	103	1.3%	0	0.0%	TV수상기(20), 공기조절기(20), 기타음향기기(20), 라디오(20), 연초류(5), 원동기(30-40), 음향기기부품(20), 레코트플레이어(20), 가정용전자제품(20) 등
소계	833	10.6%	11,491,739	20.7%	
최종 관세철폐	7,573	96.0%	28,487,943	51.4%	

(한국측 양허)

□ 한국은 RCEP에서 라오스에게 전체 농산물 중 ①품목수 기준 63.4%(1,029개), ②對라오스 수입액 기준 98.2%(0.5백만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철폐

○ 한국은 기체결 FTA* 대비 ①품목수 기준 8.0%(130개), ②對라오스 수입액 기준 3.1%(2만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추가 철폐

* 한-아세안 FTA

⇒ 한국은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라오스에게 ①품목수 기준 75.4%(1,223개), ②對라오스 수입액 기준 98.3%(0.5백만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최종 철폐

< 한국의 對라오스 농산물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한국→라오스	1,093 (67.3%)	0.5 (95.1%)	1,029 (63.4%)	0.5 (98.2%)	130 (8.0%)	0.02 (3.1%)	1,223 (75.4%)	0.5 (98.3%)

< 한국의 對라오스 농산물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對라오스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전체	1,623		485,128		
한-아세안 FTA	1,093	67.3%	461,599	95.1%	
즉시 철폐	4	0.2%	0	0.0%	곡류가공품(8), 식물성유지(5), 키위(45), 치즈(36)
10년 철폐	54	3.3%	31	0.0%	치즈(36), 두류(27), 캐슈넛(8), 대추야자(30), 구아바(30), 망고스틴(30), 레몬(30), 두리안(45), 김(20), 식물성유지(5), 기타농산가공품(8), 과일주스(9-50) 등
15년 철폐	62	3.8%	15,091	3.1%	오리고기(18), 기타낙농품(49.5), 토란(30), 포도(건조)(21), 기타농산가공품(45), 맥주(30), 위스키(20), 기타주류(8-30), 사료(5-50.6) 등
20년 철폐	10	0.6%	62	0.0%	강낭콩(27), 오리고기(18), 쇠고기(18), 녹용(20), 타피오카(냉동)(45) 등
소계	130	8.0%	15,183	3.1%	
최종 관세철폐	1,223	75.4%	476,782	98.3%	

(라오스측 양허)

□ 라오스는 RCEP에서 한국에게 전체 농산물 중 ①품목수 기준 57.0%(728개), ②대한국 수입액 기준 50.4%(5만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철폐

○ 라오스는 기체결 FTA* 대비 ①품목수 기준 2.7%(35개), ②대한국 수입액 기준 0.0%(無)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추가 철폐

* 한-아세안 FTA

⇒ 라오스는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한국에게 ①품목수 기준 76.4%(976개), ②대한국 수입액 기준 58.7%(5만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최종 철폐

< 라오스의 대한국 농산물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라오스 → 한국	941 (73.6%)	0.05 (58.7%)	728 (57.0%)	0.05 (50.4%)	35 (2.7%)	0 (0.0%)	976 (76.4%)	0.05 (58.7%)

< 라오스의 대한국 농산물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관세철폐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대한국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전체	1,278		93,120		
한-아세안 FTA	941	73.6%	54,680	58.7%	
즉시 철폐	3	0.2%	0	0.0%	곡류가공품(10), 코르크(5-10) 등
13년 철폐	-	-	-	-	
15년 철폐	2	0.2%	0	0.0%	당류(10), 곡류가공품(10) 등
20년 철폐	30	2.3%	0	0.0%	화초류(백합, 국화, 난, 카네이션, 장미 등)(30), 연초류(5) 등
소계	35	2.7%	0	0.0%	
최종 관세철폐	976	76.4%	54,680	58.7%	

4 수산물

(한국측 양허)

□ 한국은 RCEP에서 라오스에게 전체 수산물 중 품목수 기준 85.3%(538개)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철폐(한국측 對라오스 수산물 수입액은 無)

○ 한국은 기체결 FTA* 대비 품목수 기준 17.4%(110개)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추가 철폐

* 한-아세안 FTA

⇒ 한국은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라오스에게 품목수 기준 87.0%(549개)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최종 철폐

< 한국의 對라오스 수산물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한국→라오스	439 (69.6%)	-	538 (85.3%)	-	110 (17.4%)	-	549 (87.0%)	-

< 한국의 對라오스 수산물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對라오스 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전체	631		-		
한-아세안 FTA	439	69.6%	-	-	
즉시 철폐	4	0.6%	-	-	뱅장어(0), 피조개(0), 기타어류(농어)(0) 등
10년 철폐	1	0.2%	-	-	김(20)
15년 철폐	95	15.1%	-	-	참치(10), 기타어류(10), 넙치(20), 한천(8), 툇(20), 조개(피조개)(20), 조개(바지락)(20), 오징어(훈제)(20), 오징어(갑오징어)(10), 어류통조림(20), 기타수산물(20) 등
20년 철폐	10	1.6%	-	-	실뱅장어(27), 게(20), 오징어(10), 기타해조류(20) 등
소계	110	17.4%	-	-	
최종 관세철폐	549	87.0%	-	-	

(라오스측 양허)

□ 라오스는 RCEP에서 한국에게 수산물 전 품목에 대해 품목수 기준 75.1%(296개)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철폐(對한국 수산물 수입 無)

○ 라오스는 기체결 FTA* 대비 추가 관세철폐는 없음

* 한-아세안 FTA

⇒ 라오스는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한국에게 품목수 기준 99.5%(392개)에 대한 관세를 철폐

< 라오스의 對한국 수산물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라오스 →한국	392 (99.5%)	-	296 (75.1%)	-	-	-	392 (99.5%)	-

< 라오스의 對한국 수산물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관세철폐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對한국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전체	394		0		
한-아세안 FTA	392	99.5%	-	-	
즉시 철폐	-	-	-	-	
10년 철폐	-	-	-	-	
15년 철폐	-	-	-	-	
20년 철폐	-	-	-	-	
소계	-	-	-	-	
최종 관세철폐	392	99.5%	-	-	

[⑤ 한국 ↔ 말레이시아]

① 전체 품목

(한국측 양허)

□ 한국은 RCEP에서 말련에게 ①품목수 기준 90.7%(11,105개), ②對말련 수입액 기준 94.4%(98.6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철폐

○ 한국은 기체결 FTA* 대비 ①품목수 기준 3.5%(428개), ②對말련 수입액 기준 13.8%(14.4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추가 철폐

* 한-아세안 FTA

⇒ 한국은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말련에게 ①품목수 기준 94.8%(11,601개), ②對말련 수입액 기준 96.0%(100.3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최종 철폐

< 한국의 對아세안 상품 양허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한→말련	11,173 (91.3%)	8,592 (82.2%)	11,105 (90.7%)	9,861 (94.4%)	428 (3.5%)	1,439 (13.8%)	11,601 (94.8%)	10,030 (96.0%)

< 한국의 對말련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관세철폐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對말련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전체	12,243		10,446,111,962		
한-아세안 FTA	11,173	91.3%	8,591,594,732	82.2%	
즉시 철폐	99	0.8%	1,299,756,013	12.4%	곡류가공품(8), 키위(45), 증유(3), 윤활유(7), 기타석유제품(5-6.5), 면사(8), 면직물(10), 편직제의류(13), 직물제의류(13), 선박용엔진(8), 건전지(13), 전선(8), 자전거(8), 자전거부품(8) 등
10년 철폐	97	0.8%	83,573,724	0.8%	치즈(36), 두류(27), 캐슈넛(8), 대추야자(30), 구아바(30), 망고스틴(30), 레몬(30), 두리안(45), 김(20), 식물성유지(5), 기타농산가공품(8), 과일주스(9-50), 제재목(5), 섬유판(8), 합판(8) 등
15년 철폐	197	1.6%	54,054,904	0.5%	윤활유(7), 기타정밀화학제품(6.5-8), 질소비료(2-6.5), 비누(6.5), 합성수지(6.5), 제재목(5), 파티클보드(8), 합판(8-10), 편직제의류(13), 오리고기(18), 참치(10), 기타어류(10), 납치(20), 기타낙농품(49.5), 토란(30), 포도(건조)(21), 어류통조림(20), 기타수산물가공품(20), 기타농산가공품(45), 맥주(30), 위스키(20), 기타주류(8-30), 사료(5-50.6) 등
20년 철폐	35	0.3%	1,134,138	0.0%	삼푸(5), 비누(6.5), 합성수지(6.5), 합판(8), 모사(8), 면사(8), 실뱀장어(27), 계(20), 오징어(10), 녹용(20), 타피오카(냉동)(45), 기타해조류(20) 등
소계	428	3.5%	1,438,518,779	13.8%	
최종 관세철폐	11,601	94.8%	10,030,113,510	96.0%	

(말련측 양허)

□ 말련은 RCEP에서 한국에게 ① 품목수 기준 90.0%(8,476개), ② 對한국 수입액 기준 86.2%(83.2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철폐

○ 말련은 기체결 FTA* 대비 ① 품목수 기준 3.8%(359개), ② 對한국 수입액 기준 4.0%(3.9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추가 철폐

* 한-아세안 FTA

⇒ 말련은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한국에게 ① 품목수 기준 93.2%(8,779개), ② 對한국 수입액 기준 91.4%(88.3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최종 철폐

< 말련의 對한국 상품 양허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말련→한	8,420 (89.4%)	8,434 (87.4%)	8,476 (90.0%)	8,324 (86.2%)	359 (3.8%)	390 (4.0%)	8,779 (93.2%)	8,825 (91.4%)

< 말련의 對한국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관세철폐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對한국수입액 평균(불)		주요 수입품목 (관세율, %)
전체	9,417		9,651,277,397		
한-아세안 FTA	8,420	89.4%	8,434,390,219	87.4%	
즉시 철폐	5	0.1%	0	0.0%	기타동제품(5), 기타육류(0), 어육(0)
10년 철폐	51	0.5%	19,994,303	0.2%	주단강(5), 축전지(20), 연선및와이어로프(5), 자동차부품(5), 철강관(20), 이륜차부품(25), 기타고무제품(5), 섬유사(20), 기타철강제품(5), 펌프(5) 자전거부품(5), 기타직물(20), 시계(5), 안료(5-15) 등
15년 철폐	278	3.0%	356,932,423	3.7%	무선통신기기부품(5), 형강(5), 화물자동차(30), 자동차부품(25-30), 승용차(10-35), 기계요소(5), 전선(5), 철강관(20), 기타플라스틱제품(5), 이륜차(5-30), 전구(15), 신발부분품(5), 식탁용구(25), 기타자동차(25-30), 타일(5-10), 필름류(5) 등
20년 철폐	25	0.3%	13,459,871	0.1%	라이터(30), 자동차부품(30), 시계(35), 공기조절기(30), 펌프부품(20), 철강선(5), 유리거울(30), 연마제품(25), 신발(25), 필름류(20), 기타플라스틱제품(20)
소계	359	3.8%	390,386,597	4.0%	
최종 관세철폐	8,779	93.2%	8,824,776,816	91.4%	

2 공산품(임산물 포함)

(한국측 양허)

□ 한국은 RCEP에서 말련에게 전체 공산품(임산물 포함) 중 ①품목수 기준 95.5%(9,538개), ②對말련 수입액 기준 94.7%(93.5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 내로 철폐

○ 한국은 기체결 FTA* 대비 ①품목수 기준 1.9%(188개), ②對말련 수입액 기준 14.5%(14.3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추가 철폐

* 한-아세안 FTA

⇒ 한국은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말련에게 ①품목수 기준 98.4%(9,829개), ②對인니 수입액 기준 96.4%(95.2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최종 철폐

< 한국의 對말련 공산품(임산물 포함)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한→말련	9,641 (96.5%)	8,090 (81.9%)	9,538 (95.5%)	9,353 (94.7%)	188 (1.9%)	1,431 (14.5%)	9,829 (98.4%)	9,521 (96.4%)

< 한국의 對말련 공산품(임산물 포함)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對말련 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전체	9,989		9,875,215,358		
한-아세안 FTA	9,641	96.5%	8,090,256,978	81.9%	
즉시 철폐	91	0.9%	1,299,755,969	13.2%	종유(3), 윤활유(7), 기타석유제품(5-6.5), 면사(8), 면직물(10), 편직제의류(13), 직물제의류(13), 선박용엔진(8), 건전지(13), 전선(8), 자전거(8), 자전거부품(8) 등
10년 철폐	42	0.4%	79,651,762	0.8%	제재목(5), 섬유판(8), 합판(8), 시멘트(5) 등
15년 철폐	40	0.4%	50,274,852	0.5%	윤활유(7), 기타정밀화학제품(6.5-8), 질소비료(2-6.5), 비누(6.5), 합성수지(6.5-8), 제재목(5), 파티클보드(8), 합판(8-10), 편직제의류(13) 등
20년 철폐	15	0.2%	1,107,891	0.0%	삼푸(5), 비누(6.5), 합성수지(6.5), 합판(8), 모사(8), 면사(8) 등
소계	188	1.9%	1,430,790,473	14.5%	
최종 관세철폐	9,829	98.4%	9,521,047,451	96.4%	

(말련측 양허)

□ 말련은 RCEP에서 한국에게 전체 공산품(임산물 포함) 중 ①품목수 기준 89.6%(7,008개), ②對한국 수입액 기준 86.3%(82.7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 내로 철폐

○ 말련은 기체결 FTA* 대비 ①품목수 기준 4.6%(356개), ②對한국 수입액 기준 4.1%(3.9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추가 철폐

* 한-아세안 FTA

⇒ 말련은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한국에게 ①품목수 기준 93.3%(7,294개), ②對한국 수입액 기준 91.4%(87.6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최종 철폐

< 말련의 對한국 공산품(임산물 포함)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말련→한	6,938 (88.7%)	8,372 (87.3%)	7,008 (89.6%)	8,268 (86.3%)	356 (4.6%)	390 (4.1%)	7,294 (93.3%)	8,762 (91.4%)

< 말련의 對한국 공산품(임산물 포함)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관세철폐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對한국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전체	7,821		9,583,983,334		
한-아세안 FTA	6,938	88.7%	8,371,504,595	87.3%	
즉시 철폐	2	0.0%	0	0.0%	기타동제품(5)
10년 철폐	51	0.7%	19,994,303	0.2%	주단강(5), 축전지(20), 연선및와이어로프(5), 자동차부품(5), 철강관(20), 이륜차부품(25), 기타고무제품(5), 섬유사(20), 기타철강제품(5), 펌프(5) 자전거부품(5), 기타직물(20), 시계(5), 안료(5-15) 등
15년 철폐	278	3.6%	356,932,423	3.7%	무선통신기기부품(5), 형강(5), 화물자동차(30), 자동차부품(25-30), 승용차(10-35), 기계요소(5), 전선(5), 철강관(20), 기타플라스틱제품(5), 이륜차(5-30), 전구(15), 신발부분품(5), 식탁용구(25), 기타자동차(25-30), 타일(5-10), 필름류(5) 등
20년 철폐	25	0.3%	13,459,871	0.1%	라이터(30), 자동차부품(30), 시계(35), 공기조절기(30), 펌프부품(20), 철강선(5), 유리거울(30), 연마제품(25), 신발(25), 필름류(20), 기타플라스틱제품(20)
소계	356	4.6%	390,386,597	4.1%	
최종 관세철폐	7,294	93.3%	8,761,891,192	91.4%	

3 농산물

(한국측 양허)

□ 한국은 RCEP에서 말련에게 전체 농산물 중 ① 품목수 기준 63.4%(1,029개), ② 對말련 수입액 기준 94.3%(5.0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철폐

○ 한국은 기체결 FTA* 대비 ① 품목수 기준 8.0%(130개), ② 對말련 수입액 기준 1.4%(8백만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추가 철폐

* 한-아세안 FTA

⇒ 한국은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말련에게 ① 품목수 기준 75.4%(1,223개), ② 對말련 수입액 기준 94.5%(5.0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최종 철폐

< 한국의 對말련 농산물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한→말련	1,093 (67.3%)	496 (93.1%)	1,029 (63.4%)	503 (94.3%)	130 (8.0%)	8 (1.4%)	1,223 (75.4%)	504 (94.5%)

< 한국의 對말련 농산물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對말련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전체	1,623		532,922,009		
한-아세안 FTA	1,093	67.3%	496,037,115	93.1%	
즉시 철폐	4	0.2%	45	0.0%	곡류가공품(8), 식물성유지(5), 키위(45), 치즈(36)
10년 철폐	54	3.3%	3,921,962	0.7%	치즈(36), 두류(27), 캐슈넛(8), 대추야자(30), 구아바(30), 망고스틴(30), 레몬(30), 두리안(45), 김(20), 식물성유지(5), 기타농산가공품(8), 과일주스(9-50) 등
15년 철폐	62	3.8%	3,767,074	0.7%	오리고기(18), 기타낙농품(49.5), 토란(30), 포도(건조)(21), 기타농산가공품(45), 맥주(30), 위스키(20), 기타주류(8-30), 사료(5-50.6) 등
20년 철폐	10	0.6%	26,247	0.0%	강낭콩(27), 오리고기(18), 쇠고기(18), 녹용(20), 타피오카(냉동)(45) 등
소계	130	8.0%	7,715,328	1.4%	
최종 관세철폐	1,223	75.4%	503,752,443	94.5%	

(말련측 양허)

□ 말련은 RCEP에서 한국에게 전체 농산물 중 ①품목수 기준 89.6%(1,107개), ②對한국 수입액 기준 80.5%(0.5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철폐

○ 말련은 기체결 FTA* 대비 ①품목수 기준 0.1%(1개), ②對한국 수입액 기준 0.0%(無)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

* 한-아세안 FTA

⇒ 말련은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한국에게 ①품목수 기준 91.0%(1,124개), ②對한국 수입액 기준 92.4%(0.5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최종 철폐

< 말련의 對한국 농산물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말련→한	1,123 (90.9%)	53 (92.4%)	1,107 (89.6%)	47 (80.5%)	1 (0.1%)	-	1,124 (91.0%)	53 (92.4%)

< 말련의 對한국 농산물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관세철폐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對한국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전체	1,235		57,818,429		
한-아세안 FTA	1,123	90.9%	53,409,989	92.4%	
즉시 철폐	1	0.1%	0	0.0%	기타육류(0)
10년 철폐	-	-	-	-	
15년 철폐	-	-	-	-	
20년 철폐	-	-	-	-	
소계	1	0.1%	0	0.0%	
최종 관세철폐	1,124	91.0%	53,409,989	92.4%	

4 수산물

(한국측 양허)

□ 한국은 RCEP에서 말련에게 전체 수산물 중 ①품목수 기준 85.3%(538개), ②對말련 수입액 기준 14.0%(5백만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철폐

○ 한국은 기체결 FTA* 대비 ①품목수 기준 17.4%(110개), ②對말련 수입액 기준 0.0%(1만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추가 철폐

* 한-아세안 FTA

⇒ 한국은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말련에게 ①품목수 기준 87.0%(549개), ②對말련 수입액 기준 14.0%(5백만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최종 철폐

< 한국의 對말련 수산물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한→말련	439 (69.6%)	5 (14.0%)	538 (85.3%)	5 (14.0%)	110 (17.4%)	0.01 (0.0%)	549 (87.0%)	5 (14.0%)

< 한국의 對말련 수산물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對말련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전체	631		37,974,596		
한-아세안 FTA	439	69.6%	5,300,639	14.0%	
즉시 철폐	4	0.6%	0	0.0%	뱅장어(0), 피조개(0), 기타어류(농어)(0) 등
10년 철폐	1	0.2%	0	0.0%	김(20)
15년 철폐	95	15.1%	12,978	0.0%	참치(10), 기타어류(10), 넙치(20), 한천(8), 톳(20), 조개(피조개)(20), 조개(바지락)(20), 오징어(훈제)(20), 오징어(갑오징어)(10), 어류통조림(20), 기타수산가공품(20) 등
20년 철폐	10	1.6%	0	0.0%	실뱅장어(27), 게(20), 오징어(10), 기타해조류(20) 등
소계	110	17.4%	12,978	0.0%	
최종 관세철폐	549	87.0%	5,313,617	14.0%	

(말련측 양허)

□ 말련은 RCEP에서 한국에게 전체 수산물 중 ①품목수 기준 100%(361개), ②對한국 수입액 기준 100%(9.5백만불)에 대한 관세를 10년내로 철폐

○ 말련은 기체결 FTA* 대비 ①품목수 기준 0.6%(2개), ②對한국 수입액 기준 0.0%(無)에 대한 관세를 추가로 즉시 철폐

* 한-아세안 FTA

⇒ 말련은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한국에게 ①품목수 기준 100%(361개), ②對한국 수입액 기준 100%(9.5백만불)에 대한 관세를 최종 철폐

< 말련의 對한국 수산물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말련→한	359 (99.4%)	9.5 (100%)	361 (100%)	9.5 (100%)	2 (0.6%)	-	361 (100%)	9.5 (100%)

< 말련의 對한국 수산물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관세철폐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對한국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전체	361		9,475,635		
한-아세안 FTA	359	99.4%	9,475,635	100%	
즉시 철폐	2	0.6%	0	0.0%	해양포유류고기(0), 어육(0)
10년 철폐	-	-	-	-	
15년 철폐	-	-	-	-	
20년 철폐	-	-	-	-	
소계	2	0.6%	0	0.0%	
최종 관세철폐	361	100%	9,475,635	100%	

[⑥ 한국 ↔ 미얀마]

① 전체 품목

(한국측 양허)

□ 한국은 RCEP에서 미얀마에게 ①품목수 기준 90.7%(11,105개), ②對미얀마 수입액 기준 87.5%(3.7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철폐

○ 한국은 기체결 FTA* 대비 ①품목수 기준 3.5%(428개), ②對미얀마 수입액 기준 3.6%(0.2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추가 철폐

* 한-아세안 FTA

⇒ 한국은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미얀마에게 ①품목수 기준 94.8%(11,601개), ②對미얀마 수입액 기준 93.8%(3.9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최종 철폐

< 한국의 對미얀마 상품 양허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한국→미얀마	11,173 (91.3%)	378 (90.2%)	11,105 (90.7%)	367 (87.5%)	428 (3.5%)	15 (3.6%)	11,601 (94.8%)	394 (93.8%)

< 한국의 對미얀마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관세철폐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對미얀마 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전체	12,243		419,466,653		
한-아세안 FTA	11,173	91.3%	378,355,097	90.2%	
즉시 철폐	99	0.8%	5,148,136	1.2%	곡류가공품(8), 키위(45), 중유(3), 윤활유(7), 기타석유제품(5-6.5), 면사(8), 면직물(10), 편직제의류(13), 직물제의류(13), 선박용엔진(8), 건전지(13), 전선(8), 자전거(8), 자전거부품(8) 등
10년 철폐	97	0.8%	5,423,967	1.3%	치즈(36), 두류(27), 캐슈넛(8), 대추야자(30), 구아바(30), 망고스틴(30), 레몬(30), 두리안(45), 김(20), 식물성유지(5), 기타농산가공품(8), 과일주스(9-50), 제재목(5), 섬유판(8), 합판(8) 등
15년 철폐	197	1.6%	4,687,064	1.1%	윤활유(7), 기타정밀화학제품(6.5-8), 질소비료(2-6.5), 비누(6.5), 합성수지(6.5), 제재목(5), 파티클보드(8), 합판(8-10), 편직제의류(13), 오리고기(18), 참치(10), 기타어류(10), 납치(20), 기타낙농품(49.5), 토란(30), 맥주(30), 위스키(20), 기타주류(8-30), 사료(5-50.6) 등
20년 철폐	35	0.3%	0	0.0%	삼푸(5), 비누(6.5), 합성수지(6.5), 합판(8), 모사(8), 면사(8), 실뱀장어(27), 게(20), 오징어(10), 녹용(20), 타피오카(생동)(45), 기타해조류(20) 등
소계	428	3.5%	15,259,167	3.6%	
최종 관세철폐	11,601	94.8%	393,614,263	93.8%	

(미얀마측 양허)

□ 미얀마는 RCEP에서 한국에게 ① 품목수 기준 86.0%(8,450개), ② 對한국 수입액 기준 97.7%(6.7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철폐

○ 미얀마는 기체결 FTA* 대비 ① 품목수 기준 8.4%(826개), ② 對한국 수입액 기준 5.5%(0.4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추가 철폐

* 한-아세안 FTA

⇒ 미얀마는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한국에게 ① 품목수 기준 93.7%(9,201개), ② 對한국 수입액 기준 99.1%(6.8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최종 철폐

< 미얀마의 對한국 상품 양허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미얀마 →한국	8,375 (85.3%)	639 (93.7%)	8,450 (86.0%)	667 (97.7%)	826 (8.4%)	37 (5.5%)	9,201 (93.7%)	677 (99.1%)

< 미얀마의 對한국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관세철폐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對한국수입액 평균(불)		주요 수입품목 (관세율, %)
전체	9,821		682,714,083		
한-아세안 FTA	8,375	85.3%	639,382,950	93.7%	
즉시 철폐	36	0.4%	41,439	0.0%	기타산동물(0), 새우(0), 기타비금속광물(3), 면(0), 기타정밀화학원료(1), 기타석유제품(0), 곡류(0) 등
13년 철폐	372	3.8%	13,219,008	1.9%	고무벨트(1), 고무플라스틱가공기(1), 금속성형가공기계(1), 기타석유화학제품(1), 기타정밀화학원료(1), 나일론사(2), 석유제품(1.5), 철강선(1.5), 축전지(2), 혼방면직물(7.5), 마직물(4) 식물성유지(1), 박류(1.5), 식물성한약재(1), 해조류(2) 등
15년 철폐	220	2.2%	4,790,072	0.7%	문구류(3-7.5), 자동차부품(5), 안경(2-7.5), 건축용목제품(3), 화물자동차(3), 기타철강금속제품(3), 판지(3), 인쇄용지(3), 양가죽(7.5), 타이어튜브(4), 기타표면활성제(3), 의약품(1.5), 기타어류(10), 대구(10), 명태(10) 등
20년 철폐	198	2.0%	19,353,813	2.8%	승용차(1), 화물자동차(3), 전선(1), 안료(7.5), 기타주류(5), 곡류(5), 기타식물성유지(5), 유지가공품(3), 기타고무제품(5) 등
소계	826	8.4%	37,404,333	5.5%	
최종 관세철폐	9,201	93.7%	676,787,283	99.1%	

2 공산품(임산물 포함)

(한국측 양허)

□ 한국은 RCEP에서 미얀마에게 전체 공산품(임산물 포함) 중 ①품목수 기준 95.5%(9,538개), ②對미얀마 수입액 기준 87.6%(3.2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철폐

○ 한국은 기체결 FTA* 대비 ①품목수 기준 1.9%(188개), ②對미얀마 수입액 기준 2.6%(9백만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추가 철폐

* 한-아세안 FTA

⇒ 한국은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미얀마에게 ①품목수 기준 98.4%(9,829개), ②對미얀마 수입액 기준 94.6%(3.4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최종 철폐

< 한국의 對미얀마 공산품(임산물 포함)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한국→미얀마	9,641 (96.5%)	333 (92.1%)	9,538 (95.5%)	317 (87.6%)	188 (1.9%)	9 (2.6%)	9,829 (98.4%)	343 (94.6%)

< 한국의 對미얀마 공산품(임산물 포함)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對미얀마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전체	9,989		361,998,868		
한-아세안 FTA	9,641	96.5%	333,299,581	92.1%	
즉시 철폐	91	0.9%	5,148,136	1.4%	중유(3), 윤활유(7), 기타석유제품(5-6.5), 면사(8), 면직물(10), 편직제의류(13), 직물제의류(13), 선박용엔진(8), 건전지(13), 전선(8), 자전거(8), 자전거부품(8) 등
10년 철폐	42	0.4%	887,737	0.2%	제재목(5), 섬유판(8), 합판(8), 시멘트(5) 등
15년 철폐	40	0.4%	3,205,894	0.9%	윤활유(7), 기타정밀화학제품(6.5-8), 질소비료(2-6.5), 비누(6.5), 합성수지(6.5-8), 제재목(5), 파티클보드(8), 합판(8-10), 편직제의류(13) 등
20년 철폐	15	0.2%	0	0.0%	삼푸(5), 비누(6.5), 합성수지(6.5), 합판(8), 모사(8), 면사(8) 등
소계	188	1.9%	9,241,766	2.6%	
최종 관세철폐	9,829	98.4%	342,541,347	94.6%	

(미얀마측 양허)

□ 미얀마는 RCEP에서 한국에게 전체 공산품(임산물 포함) 중 ①품목수 기준 90.9%(7,274개), ②對한국 수입액 기준 97.8%(6.6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철폐

○ 미얀마는 기체결 FTA* 대비 ①품목수 기준 8.2%(655개), ②對한국 수입액 기준 5.5%(0.4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추가 철폐

* 한-아세안 FTA

⇒ 미얀마는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한국에게 ①품목수 기준 95.5%(7,643개), ②對한국 수입액 기준 99.2%(6.7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최종 철폐

< 미얀마의 對한국 공산품(임산물 포함)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미얀마 → 한국	6,988 (87.3%)	633 (93.6%)	7,274 (90.9%)	661 (97.8%)	655 (8.2%)	37 (5.5%)	7,643 (95.5%)	670 (99.2%)

< 미얀마의 對한국 공산품(임산물 포함)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관세철폐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對한국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전체	8,006		675,561,335		
한-아세안 FTA	6,988	87.3%	632,593,686	93.6%	
즉시 철폐	10	0.1%	41,439	0.0%	기타정밀화학원료(1), 기타석유제품(0) 등
13년 철폐	299	3.7%	13,211,668	2.0%	고무벨트(1), 고무플라스틱가공기(1), 금속성형가공기계(1), 기타석유화학제품(1), 기타정밀화학원료(1), 나일론사(2), 석유제품(1.5), 철강선(1.5), 축전지(2), 혼방면직물(7.5), 마직물(4) 등
15년 철폐	185	2.3%	4,790,072	0.7%	문구류(3-7.5), 자동차부품(5), 안경(2-7.5), 건축용목제품(3), 화물자동차(3), 기타철강금속제품(3), 판지(3), 인쇄용지(3), 양가죽(7.5), 타이어튜브(4), 기타표면활성제(3), 의약품(1.5) 등
20년 철폐	161	2.0%	19,353,679	2.9%	승용차(1), 화물자동차(3), 전선(1), 안료(7.5), 기타고무제품(5) 등
소계	655	8.2%	37,396,858	5.5%	
최종 관세철폐	7,643	95.5%	669,990,544	99.2%	

3 농산물

(한국측 양허)

□ 한국은 RCEP에서 미얀마에게 전체 농산물 중 ①품목수 기준 63.4%(1,029개), ②對미얀마 수입액 기준 89.1%(0.5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철폐

○ 한국은 기체결 FTA* 대비 ①품목수 기준 8.0%(130개), ②對미얀마 수입액 기준 10.3%(6백만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추가 철폐

* 한-아세안 FTA

⇒ 한국은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미얀마에게 ①품목수 기준 75.4%(1,223개), ②對미얀마 수입액 기준 91.1%(0.5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최종 철폐

< 한국의 對미얀마 농산물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한국→미얀마	1,093 (67.3%)	44 (80.8%)	1,029 (63.4%)	49 (89.1%)	130 (8.0%)	6 (10.3%)	1,223 (75.4%)	50 (91.1%)

< 한국의 對미얀마 농산물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對미얀마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전체	1,623		54,603,012		
한-아세안 FTA	1,093	67.3%	44,132,902	80.8%	
즉시 철폐	4	0.2%	0	0.0%	곡류가공품(8), 식물성유지(5), 키위(45), 치즈(36)
10년 철폐	54	3.3%	4,536,230	8.3%	치즈(36), 두류(27), 캐슈넛(8), 대추야자(30), 구아바(30), 망고스틴(30), 레몬(30), 두리안(45), 김(20), 식물성유지(5), 기타농산가공품(8), 과일주스(9-50) 등
15년 철폐	62	3.8%	1,082,854	2.0%	오리고기(18), 기타낙농품(49.5), 토란(30), 포도(건조)(21), 기타농산가공품(45), 맥주(30), 위스키(20), 기타주류(8-30), 사료(5-50.6) 등
20년 철폐	10	0.6%	0	0.0%	강낭콩(27), 오리고기(18), 쇠고기(18), 녹용(20), 타피오카(냉동)(45) 등
소계	130	8.0%	5,619,084	10.3%	
최종 관세철폐	1,223	75.4%	49,751,986	91.1%	

(미얀마측 양허)

□ 미얀마는 RCEP에서 한국에게 전체 농산물 중 ①품목수 기준 68.1%(965개), ②대한국 수입액 기준 82.0%(5.8백만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철폐

○ 미얀마는 기체결 FTA* 대비 ①품목수 기준 8.8%(124개), ②대한국 수입액 기준 0.1%(7,475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추가 철폐

* 한-아세안 FTA

⇒ 미얀마는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한국에게 ①품목수 기준 88.5%(1,253개), ②대한국 수입액 기준 95.1%(6.8백만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최종 철폐

< 미얀마의 대한국 농산물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미얀마 →한국	1,129 (79.7%)	7 (95.0%)	965 (68.1%)	6 (82.0%)	124 (8.8%)	7,475불 (0.1%)	1,253 (88.5%)	7 (95.1%)

< 미얀마의 대한국 농산물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관세철폐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대한국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전체	1,416		7,143,633		
한-아세안 FTA	1,129	79.7%	6,785,243	95.0%	
즉시 철폐	15	1.1%	0	0.0%	기타산동물(0), 면(0), 곡류(0) 등
13년 철폐	72	5.1%	7,341	0.1%	식물성유지(1), 박류(1.5), 식물성한약재(1) 등
15년 철폐	-	-	-	-	
20년 철폐	37	2.6%	134	0.0%	기타주류(5), 곡류(5), 기타식물성유지(5), 유지가공품(3) 등
소계	124	8.8%	7,475	0.1%	
최종 관세철폐	1,253	88.5%	6,792,718	95.1%	

4 수산물

(한국측 양허)

□ 한국은 RCEP에서 미얀마에게 전체 수산물 중 ①품목수 기준 85.3%(538개), ②對미얀마 수입액 기준 46.1%(1백만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철폐

○ 한국은 기체결 FTA* 대비 ①품목수 기준 17.4%(110개), ②對미얀마 수입액 기준 13.9%(0.4백만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추가 철폐

* 한-아세안 FTA

⇒ 한국은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미얀마에게 ①품목수 기준 87.0%(549개), ②對미얀마 수입액 기준 46.1%(1백만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철폐

< 한국의 對미얀마 수산물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한국→미얀마	439 (69.6%)	1 (32.2%)	538 (85.3%)	1 (46.1%)	110 (17.4%)	0.4 (13.9%)	549 (87.0%)	1 (46.1%)

< 한국의 對미얀마 수산물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對미얀마 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전체	631		2,864,773		
한-아세안 FTA	439	69.6%	922,614	32.2%	
즉시 철폐	4	0.6%	0	0.0%	뱅장어(0), 피조개(0), 기타어류(농어)(0) 등
10년 철폐	1	0.2%	0	0.0%	감(20)
15년 철폐	95	15.1%	398,317	13.9%	참치(10), 기타어류(10), 넙치(20), 한천(8), 툇(20), 조개(피조개)(20), 조개(바지락)(20), 오징어(훈제)(20), 오징어(갑오징어)(10), 어류통조림(20), 기타수산물가공품(20) 등
20년 철폐	10	1.6%	0	0.0%	실뱀장어(27), 게(20), 오징어(10), 기타해조류(20) 등
소계	110	17.4%	398,317	13.9%	
최종 관세철폐	549	87.0%	1,320,931	46.1%	

(미얀마측 양허)

□ 미얀마는 RCEP에서 한국에게 수산물 전 품목에 대해 ①품목수 기준 52.9%(211개), ②對한국 수입액 기준 8.8%(800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철폐

○ 미얀마는 기체결 FTA* 대비 ①품목수 기준 11.8%(47개), ②對한국 수입액 기준 0.0%(無)에 대한 관세를 15년내로 추가 철폐

* 한-아세안 FTA

⇒ 미얀마는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한국에게 ①품목수 기준 76.4%(305개), ②對한국 수입액 기준 44.1%(4,021불)에 대한 관세를 15년내로 최종 철폐

< 미얀마의 對한국 수산물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미얀마 →한국	258 (64.7%)	4,021불 (44.1%)	211 (52.9%)	800불 (8.8%)	47 (11.8%)	0 (0.0%)	305 (76.4%)	4,021불 (44.1%)

< 미얀마의 對한국 수산물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관세철폐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對한국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전체	399		9,114		
한-아세안 FTA	258	64.7%	4,021	44.1%	
즉시 철폐	11	2.8%	0	0.0%	새우(0) 등
13년 철폐	1	0.3%	0	0.0%	해조류(2)
15년 철폐	35	8.8%	0	0.0%	기타어류(10), 대구(10), 명태(10) 등
20년 철폐	-	-	-	-	
소계	47	11.8%	0	0.0%	
최종 관세철폐	305	76.4%	4,021	44.1%	

[⑦ 한국 ↔ 필리핀]

① 전체 품목

(한국측 양허)

□ 한국은 RCEP에서 필리핀에게 ①품목수 기준 90.7%(11,105개), ②對필리핀 수입액 기준 83.5%(29.2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철폐

○ 한국은 기체결 FTA* 대비 ①품목수 기준 4.3%(529개), ②對필리핀 수입액 기준 2.2%(0.8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추가 철폐

* 한-아세안 FTA

⇒ 한국은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필리핀에게 ①품목수 기준 94.6%(11,577개), ②對필리핀 수입액 기준 90.0%(31.5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최종 철폐

< 한국의 對필리핀 상품 양허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한국→필리핀	11,048 (90.2%)	3,069 (87.8%)	11,105 (90.7%)	2,919 (83.5%)	529 (4.3%)	76 (2.2%)	11,577 (94.6%)	3,146 (90.0%)

< 한국의 對필리핀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관세철폐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對필리핀 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전체	12,243		3,495,082,231		
한-아세안 FTA	11,048	90.2%	3,069,306,477	87.8%	
즉시 철폐	172	1.4%	42,123,800	1.2%	뱅장어(0), 원당(3), 키위(45), 커피조제품(8), 곡류가공품(8), 종유(3), 윤활유(7), 기타석유제품(5-6.5), 면사(8), 면직물(10), 편직제의류(13), 직물제의류(13), 선박용엔진(8), 건전지(13), 전선(8), 경작기계(8), 중고차(8-10), 화물차(10), 이륜차(8), 자전거(8), 자전거부품(8) 등
10년 철폐	108	0.9%	12,514,920	0.4%	치즈(36), 두류(27), 캐슈넛(8), 대추야자(30), 구아바(30), 망고스틴(30), 레몬(30), 두리안(45), 김(20), 식물성유지(5), 기타농산가공품(8), 과일주스(9-50), 제재목(5), 시멘트(5), 섬유판(8), 합판(8), 자동차부품(8) 등
15년 철폐	213	1.7%	13,857,966	0.4%	윤활유(7), 기타정밀화학제품(6.5-8), 질소비료(2-6.5), 비누(6.5), 합성수지(6.5), 제재목(5), 파티클보드(8), 합판(8-10), 편직제의류(13), 자동차부품(8), 오리고기(18), 참치(10), 기타어류(10), 납치(20), 기타낙농품(49.5), 토란(30), 포도(건조)(21), 어류통조림(20), 기타수산가공품(20), 기타농산가공품(45), 맥주(30), 위스키(20), 기타주류(8-30), 사료(5-50.6) 등
20년 철폐	36	0.3%	7,724,367	0.2%	삼푸(5), 비누(6.5), 합성수지(6.5), 파티클보드(8), 합판(8), 모사(8), 면사(8), 자동차부품(8), 실뱅장어(27), 게(20), 오징어(10), 녹용(20), 타피오카(냉동)(45), 기타해조류(20) 등
소계	529	4.3%	76,221,052	2.2%	
최종 관세철폐	11,577	94.6%	3,145,527,529	90.0%	

(필리핀측 양허)

□ 필리핀은 RCEP에서 한국에게 ①품목수 기준 90.8%(8,918개), ②對한국 수입액 기준 91.7%(44.9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철폐

○ 필리핀은 기체결 FTA* 대비 ①품목수 기준 11.6%(1,140개), ②對한국 수입액 기준 33.4%(16.4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추가 철폐

* 한-아세안 FTA

⇒ 필리핀은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한국에게 ①품목수 기준 91.9%(9,023개), ②對한국 수입액 기준 92.4%(45.2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최종 철폐

< 필리핀의 對한국 상품 양허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필리핀→ 한국	7,883 (80.3%)	2,887 (59.0%)	8,918 (90.8%)	4,489 (91.7%)	1,140 (11.6%)	1,637 (33.4%)	9,023 (91.9%)	4,524 (92.4%)

< 필리핀의 對한국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관세철폐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對한국수입액 평균(불)		주요 수입품목 (관세율, %)
전체	9,820		4,896,474,363		
한-아세안 FTA	7,883	80.3%	2,886,735,750	59.0%	
즉시 철폐	723	7.4%	1,522,044,962	31.1%	석유제품(0), 휘발유(0), 기타석유화학제품(1), 시멘트(3), 전력용전선(15), 폴리에스터섬유(7), 동선(1), 기타석유화학제품(1), 합성수지(3), 의약품(1), 필름류(7), 질소비료(10), 베어링(1), 순면사(7), 기타당류(5), 소스류(7), 기타식물성물질(3), 기타곡분(3), 사료(1), 꿀(3), 주류(10-15), 열대과일(10), 참치(5), 오징어(냉동)(3), 해조류(10), 기타수산물가공품(15), 어류통조림(15), 기타수산물통조림(10), 파티클보드(15), 제재목(7), 섬유판(15), 합판(15) 등
15년 철폐	385	3.9%	112,984,331	2.3%	폴리에스터섬유(10), 기타의섬유(10-20), 알루미늄제품(15), 기타플라스틱제품(10-15), 기타종이제품(7), 편직물(10), 철강관(7), 연결부품(1-20), 필름류(15), 통신용전선(7), 플라스틱타일(15), 철강선(7), 의류부속품(15), 아연도강판(10-15), 기타전선(15-30), 아연도강판(10), 철강선(7), 기타플라스틱(15), 주류(맥주)(15), 위스키(15), 돼지고기(40), 시금치(20), 기타과실(15), 명품(15), 가오리(10), 새우(15) 등
20년 철폐	32	0.3%	2,021,830	0.0%	자동차부품(1-10), 화물자동차(1-30), 이륜차(1), 기타자동차(1), 이륜차부품(15) 등
소계	1,140	11.6%	1,637,051,122	33.4%	
최종 관세철폐	9,023	91.9%	4,523,786,872	92.4%	

2 공산품(임산물 포함)

(한국측 양허)

□ 한국은 RCEP에서 필리핀에게 전체 공산품(임산물 포함) 중 ①품목수 기준 95.5%(9,538개), ②對필리핀 수입액 기준 91.8%(26.9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철폐

○ 한국은 기체결 FTA* 대비 ①품목수 기준 2.7%(272개), ②對필리핀 수입액 기준 0.8%(0.2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추가 철폐

* 한-아세안 FTA

⇒ 한국은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필리핀에게 ①품목수 기준 98.2%(9,805개), ②對필리핀 수입액 기준 99.5%(29.2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최종 철폐

< 한국의 對필리핀 공산품(임산물 포함)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한국→필리핀	9,533 (95.4%)	2,893 (98.7%)	9,538 (95.5%)	2,691 (91.8%)	272 (2.7%)	24 (0.8%)	9,805 (98.2%)	2,917 (99.5%)

< 한국의 對필리핀 공산품(임산물 포함)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對필리핀 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전체	9,989		2,931,257,658		
한-아세안 FTA	9,533	95.4%	2,893,385,639	98.7%	
즉시 철폐	159	1.6%	16,508,397	0.6%	중유(3), 윤활유(7), 기타석유제품(5-6.5), 면사(8), 면직물(10), 편직제의류(13), 직물제의류(13), 선박용엔진(8), 건전지(13), 전선(8), 경작기계(8), 중고차(8-10), 화물차(10), 이륜차(8), 자전거(8), 자전거부품(8) 등
10년 철폐	43	0.4%	30,925	0.0%	제재목(5), 시멘트(5), 섬유판(8), 합판(8), 자동차부품(8) 등
15년 철폐	54	0.5%	7,089,680	0.2%	윤활유(7), 기타정밀화학제품(6.5-8), 질소비료(2-6.5), 비누(6.5), 합성수지(6.5), 제재목(5), 파티클보드(8), 합판(8-10), 편직제의류(13), 자동차부품(8) 등
20년 철폐	16	0.2%	161,982	0.0%	삼푸(5), 비누(6.5), 합성수지(6.5), 파티클보드(8), 합판(8), 모사(8), 면사(8), 자동차부품(8) 등
소계	272	2.7%	23,790,983	0.8%	
최종 관세철폐	9,805	98.2%	2,917,176,622	99.5%	

(필리핀측 양허)

□ 필리핀은 RCEP에서 한국에게 전체 공산품(임산물 포함) 중 ①품목수 기준 92.9%(7,451개), ②對한국 수입액 기준 91.7%(44.3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 내로 철폐

○ 필리핀은 기체결 FTA* 대비 ①품목수 기준 8.1%(650개), ②對한국 수입액 기준 33.2%(16.1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추가 철폐

* 한-아세안 FTA

⇒ 필리핀은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한국에게 ①품목수 기준 94.0%(7,544개), ②對한국 수입액 기준 92.4%(44.7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최종 철폐

< 필리핀의 對한국 공산품(임산물 포함)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필리핀→ 한국	6,894 (85.9%)	2,863 (59.2%)	7,451 (92.9%)	4,435 (91.7%)	650 (8.1%)	1,606 (33.2%)	7,544 (94.0%)	4,469 (92.4%)

< 필리핀의 對한국 공산품(임산물 포함)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관세철폐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對한국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전체	8,022		4,834,046,564		
한-아세안 FTA	6,894	85.9%	2,862,572,794	59.2%	
즉시 철폐	273	3.4%	1,491,519,343	30.9%	석유제품(0), 휘발유(0), 기타석유화학제품(1), 시멘트(3), 전력용전선(15), 폴리에스터섬유(7), 동선(1), 기타석유화학제품(1), 합성수지(3), 의약품(1), 필름류(7), 질소비료(10), 베어링(1), 순면사(7) 등
15년 철폐	345	4.3%	112,929,001	2.3%	폴리에스터섬유(10), 기타의섬유(10-20), 알루미늄제품(15), 기타플라스틱제품(10-15), 기타종이제품(7), 편직물(10), 철강관(7), 연결부품(1-20), 필름류(15), 통신용전선(7), 플라스틱타일(15), 철강선(7), 의류부속품(15), 아연도강판(10-15), 기타전선(15-30), 아연도강판(10), 철강선(7), 기타플라스틱(15) 등
20년 철폐	32	0.4%	2,021,830	0.0%	자동차부품(1-10), 화물자동차(1-30), 이륜차(1), 기타자동차(1), 이륜차부품(15) 등
소계	650	8.1%	1,606,470,174	33.2%	
최종 관세철폐	7,544	94.0%	4,469,042,968	92.4%	

3 농산물

(한국측 양허)

□ 한국은 RCEP에서 필리핀에게 전체 농산물 중 ①품목수 기준 63.4%(1,029개), ②對필리핀 수입액 기준 39.2%(2.1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철폐

○ 한국은 기체결 FTA* 대비 ①품목수 기준 9.1%(147개), ②對필리핀 수입액 기준 8.2%(0.4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추가 철폐

* 한-아세안 FTA

⇒ 한국은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필리핀에게 ①품목수 기준 75.4%(1,223개), ②對필리핀 수입액 기준 39.3%(2.1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최종 철폐

< 한국의 對필리핀 농산물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한국→필리핀	1,076 (66.3%)	168 (31.2%)	1,029 (63.4%)	211 (39.2%)	147 (9.1%)	44 (8.2%)	1,223 (75.4%)	211 (39.3%)

< 한국의 對필리핀 농산물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對필리핀 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전체	1,623		537,150,359		
한-아세안 FTA	1,076	66.3%	167,513,313	31.2%	
즉시 철폐	9	0.6%	17,622,879	3.3%	원당(3), 키위(45), 커피조제품(8), 곡류가공품(8), 식물성유지(5), 치즈(36) 등
10년 철폐	64	3.9%	12,483,996	2.3%	치즈(36), 두류(27), 캐슈넛(8), 대추야자(30), 구아바(30), 망고스틴(30), 레몬(30), 두리안(45), 식물성유지(5), 기타농산가공품(8), 과일주스(9-50) 등
15년 철폐	64	3.9%	6,165,166	1.1%	오리고기(18), 기타낙농품(49.5), 토란(30), 포도(건조)(21), 기타농산가공품(45), 맥주(30), 위스키(20), 기타주류(8-30), 사료(5-50.6) 등
20년 철폐	10	0.6%	7,561,703	1.4%	강낭콩(27), 오리고기(18), 쇠고기(18), 녹용(20), 타피오카(냉동)(45) 등
소계	147	9.1%	43,833,743	8.2%	
최종 관세철폐	1,223	75.4%	211,347,055	39.3%	

(필리핀측 양허)

□ 필리핀은 RCEP에서 한국에게 전체 농산물 중 ①품목수 기준 77.2%(1,072개), ②對한국 수입액 기준 87.1%(0.45억불)에 대한 관세를 15년내로 철폐

○ 필리핀은 기체결 FTA* 대비 ①품목수 기준 26.5%(368개), ②對한국 수입액 기준 43.6%(0.2억불)에 대한 관세를 15년내로 추가 철폐

* 한-아세안 FTA

⇒ 필리핀은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한국에게 ①품목수 기준 78.0%(1,082개), ②對한국 수입액 기준 87.3%(0.45억불)에 대한 관세를 15년내로 최종 철폐

< 필리핀의 對한국 농산물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필리핀→ 한국	714 (51.4%)	22 (43.7%)	1,072 (77.2%)	45 (87.1%)	368 (26.5%)	22 (43.6%)	1,082 (78.0%)	45 (87.3%)

< 필리핀의 對한국 농산물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관세철폐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對한국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전체	1,388		51,349,349		
한-아세안 FTA	714	51.4%	22,451,002	43.7%	
즉시 철폐	337	24.3%	22,322,184	43.5%	기타당류(5), 소스류(7), 기타식물성물질(3), 기타곡분(3), 사료(1), 꿀(3), 주류(10-15), 열대과일(10) 등
15년 철폐	31	2.2%	55,330	0.1%	주류(맥주)(15), 위스키(15), 돼지고기(40), 시금치(20), 기타과실(15), 땅콩(15) 등
20년 철폐	-	-	-	-	
소계	368	26.5%	22,377,513	43.6%	
최종 관세철폐	1,082	78.0%	44,828,516	87.3%	

4 수산물

(한국측 양허)

□ 한국은 RCEP에서 필리핀에게 전체 수산물 중 ①품목수 기준 85.3%(538개), ②對필리핀 수입액 기준 62.8%(0.2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철폐

○ 한국은 기체결 FTA* 대비 ①품목수 기준 17.4%(110개), ②對필리핀 수입액 기준 32.2%(9백만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추가 철폐

* 한-아세안 FTA

⇒ 한국은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말련에게 ①품목수 기준 87.0%(549개), ②對필리핀 수입액 기준 63.7%(0.2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최종 철폐

< 한국의 對필리핀 수산물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한국→필리핀	439 (69.6%)	8 (31.5%)	538 (85.3%)	17 (62.8%)	110 (17.4%)	9 (32.2%)	549 (87.0%)	17 (63.7%)

< 한국의 對필리핀 수산물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對필리핀 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전체	631		26,674,215		
한-아세안 FTA	439	69.6%	8,407,526	31.5%	
즉시 철폐	4	0.6%	7,992,524	30.0%	뱅장어(0), 피조개(0), 기타어류(농어)(0) 등
10년 철폐	1	0.2%	0	0.0%	김(20)
15년 철폐	95	15.1%	603,121	2.3%	참치(10), 기타어류(10), 넙치(20), 한천(8), 툏(20), 조개(피조개)(20), 조개(바지락)(20), 오징어(훈제)(20), 오징어(갑오징어)(10), 어류통조림(20), 기타수산물가공품(20) 등
20년 철폐	10	1.6%	683	0.0%	실뱅장어(27), 게(20), 오징어(10), 기타해조류(20) 등
소계	110	17.4%	8,596,327	32.2%	
최종 관세철폐	549	87.0%	17,003,852	63.7%	

(필리핀측 양허)

□ 필리핀은 RCEP에서 한국에게 전체 수산물 중 ①품목수 기준 96.3%(395개), ②대한국 수입액 기준 89.5%(9.9백만불)에 대한 관세를 15년내로 철폐

○ 필리핀은 기체결 FTA* 대비 ①품목수 기준 29.8%(122개), ②대한국 수입액 기준 74.0%(8.2백만불)에 대한 관세를 15년내로 추가 철폐

* 한-아세안 FTA

⇒ 필리핀은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한국에게 ①품목수 기준 96.8%(397개), ②대한국 수입액 기준 89.5%(9.9백만불)에 대한 관세를 15년내로 최종 철폐

< 필리핀의 대한국 수산물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필리핀→ 한국	275 (67.1%)	1.7 (15.5%)	395 (96.3%)	9.9 (89.5%)	122 (29.8%)	8.2 (74.0%)	397 (96.8%)	9.9 (89.5%)

< 필리핀의 대한국 수산물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관세철폐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대한국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전체	410		11,078,451		
한-아세안 FTA	275	67.1%	1,711,953	15.5%	
즉시 철폐	113	27.6%	8,203,435	74.0%	참치(5), 오징어(냉동)(3), 해조류(10), 기타수산물가공품(15), 어류통조림(15), 기타수산물통조림(10) 등
15년 철폐	9	2.2%	0	0.0%	가오리(10), 새우(15) 등
20년 철폐	-	-	-	-	
소계	122	29.8%	8,203,435	74.0%	
최종 관세철폐	397	96.8%	9,915,388	89.5%	

[⑧ 한국 ↔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기체결(한-싱 FTA) 및 RCEP 모두에서 전 품목 관세철폐

1 전체 품목

(한국측 양허)

□ 한국은 RCEP에서 싱가포르에게 ①품목수 기준 90.7%(11,105개), ②對싱가포르 수입액 기준 96.9%(97.2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철폐

○ 한국은 기체결 FTA* 대비 ①품목수 기준 1.7%(206개), ②對싱가포르 수입액 기준 15.3%(15.3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추가 철폐

* 한-아세안 FTA 및 한-싱가포르 FTA

⇒ 한국은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싱가포르에게 ①품목수 기준 96.1%(11,771개), ②對싱가포르 수입액 기준 98.0%(98.2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최종 철폐

< 한국의 對싱가포르 상품 양허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한국→ 싱가포르	11,565 (94.5%)	8,290 (82.7%)	11,105 (90.7%)	9,717 (96.9%)	206 (1.7%)	1,534 (15.3%)	11,771 (96.1%)	9,824 (98.0%)

< 한국의 對싱가포르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관세철폐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對싱가포르 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전체	12,243		10,022,918,540		
기체결 FTA	11,565	94.5%	8,289,738,859	82.7%	
즉시 철폐	21	0.2%	1,443,239,801	14.4%	실뱀장어(0), 기타어류(0), 중유(3), 윤활유(7), 기타석유제품(5) 등
10년 철폐	39	0.3%	2,659	0.0%	치즈(36), 대추야자(30), 구아바(30), 망고스틴(30), 두리안(45), 파티클보드(8), 섬유판(8), 합판(8) 등
15년 철폐	127	1.0%	76,254,216	0.8%	합성수지(6.5), 파티클보드(8), 합판(8-10), 오리고기(18), 참치(10), 기타어류(10), 넙치(20), 어류통조림(20), 기타낙농품(49.5), 기타수산물(20), 기타농산가공품(45) 등
20년 철폐	19	0.1%	14,775,725	0.1%	합판(8), 합성수지(6.5), 삼푸(5), 기타석유제품(5), 실뱀장어(27), 게(20), 오징어(10), 녹용(20), 타피오카(냉동)(45), 기타해조류(20) 등
소계	206	1.7%	1,534,272,401	15.3%	
최종 관세철폐	11,771	96.1%	9,824,011,260	98.0%	

2 공산품(임산물 포함)

(한국측 양허)

□ 한국은 RCEP에서 싱가포르에게 전체 공산품(임산물 포함) 중 ①품목수 기준 95.5%(9,538개), ②對싱가포르 수입액 기준 97.0%(96.2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철폐

○ 한국은 기체결 FTA* 대비 ①품목수 기준 0.6%(63개), ②對싱가포르 수입액 기준 15.5%(15.3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추가 철폐

* 한-아세안 FTA 및 한-싱가포르 FTA

⇒ 한국은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싱가포르에게 ①품목수 기준 99.2%(9,905개), ②對싱가포르 수입액 기준 98.0%(97.2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최종 철폐

< 한국의 對싱가포르 공산품(임산물 포함)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한국→ 싱가포르	9,842 (98.5%)	8,185 (82.6%)	9,538 (95.5%)	9,622 (97.0%)	63 (0.6%)	1,534 (15.5%)	9,905 (99.2%)	9,719 (98.0%)

< 한국의 對싱가포르 공산품(임산물 포함)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對싱가포르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전체	9,989		9,915,222,849		
기체결 FTA	9,842	98.5%	8,185,258,137	82.6%	
즉시 철폐	16	0.2%	1,443,239,801	14.6%	종유(3), 윤활유(7), 기타석유제품(5) 등
10년 철폐	22	0.2%	2,449	0.0%	파티클보드(8), 섬유판(8), 합판(8) 등
15년 철폐	19	0.2%	76,013,062	0.8%	합성수지(6.5), 파티클보드(8), 합판(8-10) 등
20년 철폐	6	0.1%	14,775,597	0.1%	합판(8), 합성수지(6.5), 삼푸(5), 기타석유제품(5) 등
소계	63	0.6%	1,534,030,908	15.5%	
최종 관세철폐	9,905	99.2%	9,719,289,045	98.0%	

3 농산물

(한국측 양허)

□ 한국은 RCEP에서 싱가포르에게 전체 농산물 중 ①품목수 기준 63.4%(1,029개), ②對싱가포르 수입액 기준 90.5%(1.0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철폐

○ 한국은 기체결 FTA* 대비 ①품목수 기준 3.7%(60개), ②對싱가포르 수입액 기준 0.2%(0.2백만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추가 철폐

* 한-아세안 FTA 및 한-싱가포르 FTA

⇒ 한국은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싱가포르에게 ①품목수 기준 79.9%(1,297개), ②對싱가포르 수입액 기준 98.8%(1.0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최종 철폐

< 한국의 對싱가포르 농산물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한국→ 싱가포르	1,237 (76.2%)	103 (98.6%)	1,029 (63.4%)	95 (90.5%)	60 (3.7%)	0.2 (0.2%)	1,297 (79.9%)	103 (98.8%)

< 한국의 對싱가포르 농산물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對싱가포르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전체	1,623		104,687,331		
기체결 FTA	1,237	76.2%	103,191,816	98.6%	
즉시 철폐	1	0.1%	0	0.0%	치즈(36)
10년 철폐	17	1.0%	210	0.0%	치즈(36), 대추야자(30), 구아바(30), 망고스틴(30), 두리안(45) 등
15년 철폐	34	2.1%	234,687	0.2%	오리고기(18), 기타낙농품(49.5), 기타농산가공품(45) 등
20년 철폐	8	0.5%	129	0.0%	녹용(20), 타피오카(냉동)(45) 등
소계	60	3.7%	235,025	0.2%	
최종 관세철폐	1,297	79.9%	103,426,841	98.8%	

4 수산물

(한국측 양허)

□ 한국은 RCEP에서 싱가포르에게 전체 수산물 중 ①품목수 기준 85.3%(538개), ②對싱가포르 수입액 기준 8.8%(0.3백만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철폐

○ 한국은 기체결 FTA* 대비 ①품목수 기준 13.2%(83개), ②對싱가포르 수입액 기준 0.2%(6천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추가 철폐

* 한-아세안 FTA 및 한-싱가포르 FTA

⇒ 한국은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싱가포르에게 ①품목수 기준 90.2%(569개), ②對싱가포르 수입액 기준 43.1%(1백만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최종 철폐

< 한국의 對싱가포르 수산물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한국→ 싱가포르	486 (77.0%)	1 (42.8%)	538 (85.3%)	0.3 (8.8%)	83 (13.2%)	6천불 (0.2%)	569 (90.2%)	1 (43.1%)

< 한국의 對싱가포르 수산물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對싱가포르 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전체	631		3,008,361		
기체결 FTA	486	77.0%	1,288,906	42.8%	
즉시 철폐	4	0.6%	0	0.0%	조개(피조개(0), 기타어류(0), 뱀장어(0))
10년 철폐	-	-	-	-	
15년 철폐	74	11.7%	6,468	0.2%	기타수산물(5-20), 어류통조림(20), 기타염장수산물(20), 새우전(35), 기타어류(10-20), 참치(10) 등
20년 철폐	5	0.8%	0	0.0%	기타조개(전복(냉동))(20), 오징어(10), 게(대게)(20), 기타어류(냉동)(25), 뱀장어(27)
소계	83	13.2%	6,468	0.2%	
최종 관세철폐	569	90.2%	1,295,374	43.1%	

[⑨ 한국 ↔ 태국]

1 전체 품목

(한국측 양허)

□ 한국은 RCEP에서 태국에게 ①품목수 기준 90.7%(11,105개), ②對태국 수입액 기준 87.0%(46.0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철폐

○ 한국은 기체결 FTA* 대비 ①품목수 기준 4.2%(516개), ②對태국 수입액 기준 5.5%(2.9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추가 철폐

* 한-아세안 FTA

⇒ 한국은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태국에게 ①품목수 기준 94.6%(11,576개), ②對태국 수입액 기준 89.7%(47.5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최종 철폐

< 한국의 對태국 상품 양허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한국→태국	11,060 (90.3%)	4,457 (84.2%)	11,105 (90.7%)	4,603 (87.0%)	516 (4.2%)	290 (5.5%)	11,576 (94.6%)	4,747 (89.7%)

< 한국의 對태국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관세철폐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對태국 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전체	12,243		5,292,123,347		
한-아세안 FTA	11,060	90.3%	4,457,153,878	84.2%	
즉시 철폐	161	1.3%	39,686,073	0.7%	뱅장어(0), 커피(3), 키위(45), 커피조제품(8), 곡류가공품(8), 중유(3), 윤활유(7), 기타석유제품(5-6.5), 면사(8), 면직물(10), 편직제의류(13), 직물제의류(13), 선박용엔진(8), 건전지(13), 전선(8), 중고차(8-10), 화물차(10), 이륜차(8), 자전거(8), 자전거부품(8) 등
10년 철폐	104	0.8%	46,234,605	0.9%	치즈(36), 두류(27), 캐슈넛(8), 대추야자(30), 구아바(30), 망고스틴(30), 레몬(30), 두리안(45), 커피(8), 김(20), 식물성유지(5), 기타농산가공품(8), 과일주스(9-50), 제재목(5), 시멘트(5), 섬유관(8), 합판(8), 자동차부품(8) 등
15년 철폐	215	1.8%	171,802,047	3.2%	윤활유(7), 기타정밀화학제품(6.5-8), 질소비료(2-6.5), 비누(6.5), 합성수지(6.5), 제재목(5), 파티클보드(8), 합판(8-10), 편직제의류(13), 자동차부품(8), 오리고기(18), 참치(10), 기타어류(10), 납치(20), 기타낙농품(49.5), 토란(30), 포도(건조)(21), 어류통조림(20), 기타수산가공품(20), 기타농산가공품(45), 맥주(30), 위스키(20), 기타주류(8-30), 사료(5-50.6) 등
20년 철폐	36	0.3%	32,110,315	0.6%	삼푸(5), 비누(6.5), 합성수지(6.5), 합판(8), 모사(8), 면사(8), 실뽕장어(27), 게(20), 오징어(10), 녹용(20), 타피오카(냉동)(45), 기타해조류(20) 등
소계	516	4.2%	289,833,039	5.5%	
최종 관세철폐	11,576	94.6%	4,746,986,917	89.7%	

(태국측 양허)

□ 태국은 RCEP에서 한국에게 ① 품목수 기준 90.3%(8,629개), ② 對한국 수입액 기준 87.0%(78.6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철폐

○ 태국은 기체결 FTA* 대비 ① 품목수 기준 13.0%(1,238개), ② 對한국 수입액 기준 8.9%(8.0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추가 철폐

* 한-아세안 FTA

⇒ 태국은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한국에게 ① 품목수 기준 92.0%(8,795개), ② 對한국 수입액 기준 89.3%(80.6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최종 철폐

< 태국의 對한국 상품 양허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태국→ 한국	7,557 (79.1%)	7,260 (80.4%)	8,629 (90.3%)	7,855 (87.0%)	1,238 (13.0%)	804 (8.9%)	8,795 (92.0%)	8,064 (89.3%)

< 태국의 對한국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관세철폐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對한국수입액 평균(불)		주요 수입품목 (관세율, %)
전체	9,558	79.1%	9,033,216,438	80.4%	
한-아세안 FTA	7,557	79.1%	7,260,096,127	80.4%	
즉시 철폐	532	5.6%	614,010,125	6.8%	섬유기계(10), 합성수지(5), 기타석유화학제품(5), 휘발유(10), 기타정밀화학원료(5), 베어링(1), 도료(10), 전동기(10), 인조섬유(5), 합성고무(5), 원동기(10), 동조가공품(5), 도료(10), 화물자동차(40), 모사(5), 퓨즈(10), 섬유(20), 고무제품(20), 냉방기(30), 비누(10), 기타휴대용품(20), 음료베이스(5), 혼합조미료(5), 딸기(40), 주류(60), 감(40), 면류(30), 곡류가공품(20), 기타식물성물질(5), 육류가공품(30), 잡치(5), 해조류(5), 전갱이(5), 파티클보드(5), 제재목(1), 등
10년 철폐	393	4.1%	166,962,188	1.8%	섬유기계(10), 기타석유화학제품(5), 저밀도에틸렌(5), 도료(10), 원동기(10), 합성수지(5), 원동기(10), 합성고무(5), 가열난방기(5), 장신구(20), 탄성사(5), 배전반(10), 비누(10), 직물제류(30), 공기조절기(1), 음료베이스(5), 기타농산가공품(30), 곡류가공품(30), 과일주스(30), 초코렛(10), 곡분(30), 대구(5), 전갱이(5), 기타어류(5), 기타(20), 명태(5), 어육(5), 계(5), 가자미(30), 오징어(5) 등
15년 철폐	261	2.7%	14,417,569	0.2%	전선(10), 기타가죽(5), 화물자동차(40), 퓨즈(10), 섬유기계(10), 기타고무제품(20), 냉방기(30), 냉장고(30), 변압기(10), 전기다리미(20), 자전거부품(10), 자전거(30), 기타농산가공품(30), 음료(30), 곡분(30), 마늘(40), 견과류(10), 고추류(27), 쌀가루(30), 가축육류(50), 새우(5-20), 어류가공품(10-30), 기타수산가공품(20), 어육(5), 기타어류(30) 등
20년 철폐	52	0.5%	8,181,166	0.1%	전동기(10), 항공기부품(10), 주류(브랜디, 맥주, 리큐르 등)(60), 천연꿀(30), 판유리(5), 타일(30), 기타농산가공품(30), 자전거부품(10), 타일(30), 참깨(40), 시멘트(10), 기타농산가공품(30) 등
소계	1,238	13.0%	803,571,049	8.9%	
최종 관세철폐	8,795	92.0%	8,063,667,176	89.3%	

2 공산품(임산물 포함)

(한국측 양허)

□ 한국은 RCEP에서 태국에게 전체 공산품(임산물 포함) 중 ①품목수 기준 95.5%(9,538개), ②對태국 수입액 기준 92.2%(40.9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철폐

○ 한국은 기체결 FTA* 대비 ①품목수 기준 2.7%(267개), ②對태국 수입액 기준 4.9%(2.2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추가 철폐

* 한-아세안 FTA

⇒ 한국은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태국에게 ①품목수 기준 98.1%(9,804개), ②對태국 수입액 기준 95.0%(42.1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최종 철폐

< 한국의 對태국 공산품(임산물 포함)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한국→태국	9,537 (95.5%)	3,995 (90.1%)	9,538 (95.5%)	4,091 (92.2%)	267 (2.7%)	218 (4.9%)	9,804 (98.1%)	4,214 (95.0%)

< 한국의 對태국 공산품(임산물 포함)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對태국 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전체	9,989		4,435,897,901		
한-아세안 FTA	9,537	95.5%	3,995,437,364	90.1%	
즉시 철폐	150	1.5%	39,672,930	0.9%	중유(3), 윤활유(7), 기타석유제품(5-6.5), 면사(8), 면직물(10), 편직제의류(13), 직물제의류(13), 선박용엔진(8), 건전지(13), 전선(8), 중고차(8-10), 화물차(10), 이륜차(8), 자전거(8), 자전거부품(8) 등
10년 철폐	44	0.4%	849,194	0.0%	시멘트(5), 석유판(8), 합판(8), 자동차부품(8) 등
15년 철폐	57	0.6%	158,074,382	3.6%	비누(6.5), 합성수지(6.5), 제재목(5), 파티클보드(8), 합판(8-10), 편직제의류(13), 자동차부품(8) 등
20년 철폐	16	0.2%	19,900,319	0.4%	삼무(5), 비누(6.5), 합성수지(6.5), 합판(8), 모사(8), 면사(8) 등
소계	267	2.7%	218,496,824	4.9%	
최종 관세철폐	9,804	98.1%	4,213,934,188	95.0%	

(태국측 양허)

□ 태국은 RCEP에서 한국에게 전체 공산품(임산물 포함) 중 ①품목수 기준 92.0%(7,259개), ②對한국 수입액 기준 86.9%(76.1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철폐

○ 태국은 기체결 FTA* 대비 ①품목수 기준 8.4%(663개), ②對한국 수입액 기준 6.5%(5.7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추가 철폐

* 한-아세안 FTA

⇒ 태국은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한국에게 ①품목수 기준 93.6%(7,383개), ②對한국 수입액 기준 89.2%(78.1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최종 철폐

< 태국의 對한국 공산품(임산물 포함)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태국→한국	6,720 (85.2%)	7,242 (82.7%)	7,259 (92.0%)	7,605 (86.9%)	663 (8.4%)	571 (6.5%)	7,383 (93.6%)	7,812 (89.2%)

< 태국의 對한국 공산품(임산물 포함)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관세철폐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對한국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전체	7,886		8,754,825,279		
한-아세안 FTA	6,720	85.2%	7,241,758,322	82.7%	
즉시 철폐	216	2.7%	401,922,280	4.6%	섬유기계(10), 합성수지(5), 기타석유화학제품(5), 휘발유(10), 기타정밀화학원료(5), 베어링(1), 도료(10), 전동기(10), 인조섬유(5), 합성고무(5), 원동기(10), 동조가공품(5), 도료(10), 화물자동차(40), 모사(5), 퓨즈(10), 섬유(20), 고무제품(20), 냉방기(30), 비누(10), 기타휴대용품(20) 등
10년 철폐	270	3.4%	146,879,162	1.7%	섬유기계(10), 기타석유화학제품(5), 저밀도에틸렌(5), 도료(10), 원동기(10), 합성수지(5), 원동기(10), 합성고무(5), 가열난방기(5), 장신구(20), 탄성사(5), 배전반(10), 비누(10), 직물제의류(30), 공기조절기(1) 등
15년 철폐	161	2.0%	14,369,131	0.2%	전선(10), 기타가죽(5), 화물자동차(40), 퓨즈(10), 섬유기계(10), 기타고무제품(20), 냉방기(30), 냉장고(30), 변압기(10), 전기다리미(20), 자전거부품(10), 자전거(30) 등
20년 철폐	16	0.2%	7,395,334	0.1%	전동기(10), 항공기부품(10), 자전거부품(10), 타일(30), 시멘트(10) 등
소계	663	8.4%	570,565,906	6.5%	
최종 관세철폐	7,383	93.6%	7,812,324,229	89.2%	

3 농산물

(한국측 양허)

□ 한국은 RCEP에서 태국에게 전체 농산물 중 ① 품목수 기준 63.4%(1,029개), ② 對태국 수입액 기준 63.4%(4.6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철폐

○ 한국은 기체결 FTA* 대비 ① 품목수 기준 8.6%(139개), ② 對태국 수입액 기준 9.7%(0.7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추가 철폐

* 한-아세안 FTA

⇒ 한국은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태국에게 ① 품목수 기준 75.4%(1,223개), ② 對태국 수입액 기준 66.1%(4.8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최종 철폐

< 한국의 對태국 농산물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한국→태국	1,084 (66.8%)	409 (56.4%)	1,029 (63.4%)	459 (63.4%)	139 (8.6%)	71 (9.7%)	1,223 (75.4%)	479 (66.1%)

< 한국의 對태국 농산물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對태국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전체	1,623		724,444,624		
한-아세안 FTA	1,084	66.8%	408,616,865	56.4%	
즉시 철폐	7	0.4%	13,143	0.0%	곡류가공품(8), 식물성유지(5), 키위(45), 치즈(36)
10년 철폐	59	3.6%	45,385,411	6.3%	치즈(36), 두류(27), 캐슈넛(8), 대추야자(30), 구아바(30), 망고스틴(30), 레몬(30), 두리안(45), 김(20), 식물성유지(5), 기타농산가공품(8), 과일주스(9-50) 등
15년 철폐	63	3.9%	12,993,013	1.8%	오리고기(18), 기타낙농품(49.5), 토란(30), 포도(건조)(21), 기타농산가공품(45), 맥주(30), 위스키(20), 기타주류(8-30), 사료(5-50.6) 등
20년 철폐	10	0.6%	12,209,996	1.7%	강낭콩(27), 오리고기(18), 쇠고기(18), 녹용(20), 타피오카(냉동)(45) 등
소계	139	8.6%	70,601,562	9.7%	
최종 관세철폐	1,223	75.4%	479,218,428	66.1%	

(태국측 양허)

□ 태국은 RCEP에서 한국에게 전체 농산물 중 ① 품목수 기준 79.2%(1,012개), ② 대한국 수입액 기준 59.3%(0.4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철폐

○ 태국은 기체결 FTA* 대비 ① 품목수 기준 28.2%(361개), ② 대한국 수입액 기준 36.3%(0.2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추가 철폐

* 한-아세안 FTA

⇒ 태국은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한국에게 ① 품목수 기준 82.4%(1,053개), ② 대한국 수입액 기준 61.8%(0.4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최종 철폐

< 태국의 대한국 농산물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태국→한국	692 (54.1%)	16 (25.5%)	1,012 (79.2%)	37 (59.3%)	361 (28.2%)	23 (36.3%)	1,053 (82.4%)	39 (61.8%)

< 태국의 대한국 농산물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관세철폐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대한국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전체	1,278		62,668,203		
한-아세안 FTA	692	54.1%	15,953,315	25.5%	
즉시 철폐	226	17.7%	9,366,703	14.9%	음료베이스(5), 혼합조미료(5), 쌀기(40), 주류(60), 감(40), 면류(30), 곡류가공품(20), 기타식물성물질(5), 육류가공품(30), 등
10년 철폐	53	4.1%	12,579,218	20.1%	음료베이스(5), 기타농산가공품(30), 곡류가공품(30), 과일주스(30), 초코렛(10), 곡분(30) 등
15년 철폐	46	3.6%	47,668	0.1%	기타농산가공품(30), 음료(30), 곡분(30), 마늘(40), 견과류(10), 고추류(27), 쌀가루(30), 가축육류(50) 등
20년 철폐	36	2.8%	785,833	1.3%	주류(브랜드, 맥주, 리큐르 등)(60), 천연꿀(30), 기타농산가공품(30), 참깨(40) 등
소계	361	28.2%	22,779,422	36.3%	
최종 관세철폐	1,053	82.4%	38,732,737	61.8%	

4 수산물

(한국측 양허)

□ 한국은 RCEP에서 태국에게 전체 수산물 중 ① 품목수 기준 85.3%(538개), ② 對태국 수입액 기준 39.9%(0.5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철폐

○ 한국은 기체결 FTA* 대비 ① 품목수 기준 17.4%(110개), ② 對태국 수입액 기준 0.6%(0.7백만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추가 철폐

* 한-아세안 FTA

⇒ 한국은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태국에게 ① 품목수 기준 87.0%(549개), ② 對태국 수입액 기준 40.9%(0.5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최종 철폐

< 한국의 對태국 수산물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한국→태국	439 (69.6%)	53 (40.3%)	538 (85.3%)	53 (39.9%)	110 (17.4%)	0.7 (0.6%)	549 (87.0%)	54 (40.9%)

< 한국의 對태국 수산물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對태국 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전체	631		131,780,823		
한-아세안 FTA	439	69.6%	53,099,650	40.3%	
즉시 철폐	4	0.6%	0	0.0%	뱅장어(0), 피조개(0), 기타어류(농어)(0) 등
10년 철폐	1	0.2%	0	0.0%	김(20)
15년 철폐	95	15.1%	734,653	0.6%	참치(10), 기타어류(10), 넙치(20), 한천(8), 톳(20), 조개(피조개)(20), 조개(바지락)(20), 오징어(훈제)(20), 오징어(갑오징어)(10), 어류통조림(20), 기타수산물가공품(20) 등
20년 철폐	10	1.6%	0	0.0%	실뱅장어(27), 게(20), 오징어(10), 기타해조류(20) 등
소계	110	17.4%	734,653	0.6%	
최종 관세철폐	549	87.0%	53,834,303	40.9%	

(태국측 양허)

□ 태국은 RCEP에서 한국에게 전체 수산물 중 ① 품목수 기준 90.9%(358개), ② 대한국 수입액 기준 98.6%(2.1억불)에 대한 관세를 15년내로 철폐

○ 태국은 기체결 FTA* 대비 ① 품목수 기준 54.3%(214개), ② 대한국 수입액 기준 97.5%(2.1억불)에 대한 관세를 15년내로 추가 철폐

* 한-아세안 FTA

⇒ 태국은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한국에게 ① 품목수 기준 91.1%(359개), ② 대한국 수입액 기준 98.6%(2.1억불)에 대한 관세를 15년내로 최종 철폐

< 태국의 대한국 수산물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태국→한국	145 (36.8%)	2 (1.1%)	358 (90.9%)	213 (98.6%)	214 (54.3%)	210 (97.5%)	359 (91.1%)	213 (98.6%)

< 태국의 대한국 수산물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관세철폐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대한국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전체	394		215,722,957		
한-아세안 FTA	145	36.8%	2,384,490	1.1%	
즉시 철폐	90	22.8%	202,721,142	94.0%	참치(5), 해조류(5-27), 전갱이(5), 수산물통조림(20), 기타수산물가공품(30), 기타수산물(5), 기타연체동물(5-20), 기타조개(5-30) 등
10년 철폐	70	17.8%	7,503,809	3.5%	대구(5), 전갱이(5), 기타어류(5), 기타수산물가공품(20), 명태(5), 어육(5), 계(5), 가자미(30), 오징어(5) 등
15년 철폐	54	13.7%	770	0.0%	새우(5-20), 어류가공품(10-30), 기타수산물가공품(20), 어육(5), 기타어류(30) 등
20년 철폐	-	-	-	-	
소계	214	54.3%	210,225,721	97.5%	
최종 관세철폐	359	91.1%	212,610,211	98.6%	

[⑩ 한국 ↔ 베트남]

1 전체 품목

(한국측 양허)

□ 한국은 RCEP에서 베트남에게 ① 품목수 기준 90.7%(11,105개), ② 對베트남 수입액 기준 86.8%(55.9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철폐

○ 한국은 기체결 FTA* 대비 ① 품목수 기준 1.3%(156개), ② 對베트남 수입액 기준 0.1%(5백만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추가 철폐

* 한-아세안 FTA 및 한-베트남 FTA

⇒ 한국은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베트남에게 ① 품목수 기준 96.6%(11,827개), ② 對베트남 수입액 기준 95.4%(61.5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최종 철폐

< 한국의 對베트남 상품 양허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한국→ 베트남	11,671 (95.3%)	6,143 (95.3%)	11,105 (90.7%)	5,593 (86.8%)	156 (1.3%)	5 (0.1%)	11,827 (96.6%)	6,148 (95.4%)

< 한국의 對베트남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관세철폐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對베트남 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전체	12,243		6,447,214,802		
기체결 FTA	11,671	95.3%	6,143,363,822	95.3%	
즉시 철폐	3	0.0%	0	0.0%	기타식물성유지(5), 키위(45) 등
10년 철폐	37	0.3%	187,383	0.0%	두류(27), 대추야자(30), 김(20), 식물성유지(5), 기타농산가공품(8), 과일주스(50), 제재목(5), 시멘트(5), 섬유판(8), 합판(8) 등
15년 철폐	97	0.8%	4,640,852	0.1%	기타정밀화학제품(8), 파티클보드(8), 합판(8-10), 오리고기(18), 참치(10), 기타어류(10), 넙치(20), 어류통조림(20), 기타낙농품(49.5), 포도(건조)(21), 기타수산가공품(20), 기타농산가공품(45), 사료(5-50.6) 등
20년 철폐	19	0.2%	37,003	0.0%	강낭콩(27), 합판(8), 실뱀장어(27), 계(20), 오징어(10), 녹용(20), 타피오카(냉동)(45), 기타해조류(20) 등
소계	156	1.3%	4,865,237	0.1%	
최종 관세철폐	11,827	96.6%	6,148,229,059	95.4%	

(베트남측 양허)

□ 베트남은 RCEP에서 한국에게 ① 품목수 기준 86.7%(8,284개), ② 對한국 수입액 기준 89.6%(162.2억불)에 대한 관세를 15년내로 철폐

○ 베트남은 기체결 FTA* 대비 ① 품목수 기준 3.4%(326개), ② 對한국 수입액 기준 3.6%(6.5억불)에 대한 관세를 10년내로 추가 철폐

* 한-아세안 FTA 및 한-베트남 FTA

⇒ 베트남은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한국에게 ① 품목수 기준 92.3%(8,824개), ② 對한국 수입액 기준 94.5%(171.0억불)에 대한 관세를 10년내로 최종 철폐

< 베트남의 對한국 상품 양허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베트남→ 한국	8,498 (88.9%)	16,446 (90.9%)	8,284 (86.7%)	16,218 (89.6%)	326 (3.4%)	651 (3.6%)	8,824 (92.3%)	17,098 (94.5%)

< 베트남의 對한국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관세철폐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對한국수입액 평균(불)		주요 수입품목 (관세율, %)
전체	9,558		18,095,693,410		
한-베트남 FTA	8,498	88.9%	16,446,387,242	90.9%	
즉시 철폐	29	0.3%	258,099,919	1.4%	펌프(7-10), 철도차량부품(10-15), 철구조물(10-12), 계전기(3), 합성수지(10), 전동기(3), 기타정밀화학원료(20), 수공구(25) 등
10년 철폐	297	3.1%	393,319,702	2.2%	연결부품(20), 전선(10-17), 접착제(14), 도료(10), 형강(12), 아연도강판(10), 변압기(10), 펌프(20), 밸프(15), 자동차부품(10), 경작기계(10), 차단기(25), 화물자동차(15-20), 철강선(10-15), 공기조절기(17-25), 비누(20-27), 차단기(15), 주류(55), 기타농산가공품(10) 등
15년 철폐	-	-	-	-	
20년 철폐	-	-	-	-	
소계	326	3.4%	651,419,621	3.6%	
최종 관세철폐	8,824	92.3%	17,097,806,863	94.5%	

2 공산품(임산물 포함)

(한국측 양허)

□ 한국은 RCEP에서 베트남에게 전체 공산품(임산물 포함) 중 ①품목수 기준 95.5%(9,538개), ②對베트남 수입액 기준 91.1%(51.1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철폐

○ 한국은 기체결 FTA* 대비 ①품목수 기준 0.2%(21개), ②對베트남 수입액 기준 0.0%(0.01백만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추가 철폐

* 한-아세안 FTA 및 한-베트남 FTA

⇒ 한국은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베트남에게 ①품목수 기준 99.7%(9,961개), ②對베트남 수입액 기준 99.4%(55.8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최종 철폐

< 한국의 對베트남 공산품(임산물 포함)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한국→ 베트남	9,940 (99.5%)	5,583 (99.4%)	9,538 (95.5%)	5,114 (91.1%)	21 (0.2%)	0.01 (0.0%)	9,961 (99.7%)	5,583 (99.4%)

< 한국의 對베트남 공산품(임산물 포함)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對베트남 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전체	9,989		5,616,350,382		
기체결 FTA	9,940	99.5%	5,583,410,813	99.4%	
즉시 철폐	-	-	-	-	-
10년 철폐	12	0.1%	5,277	0.0%	제재목(5), 시멘트(5), 섬유판(8), 합판(8) 등
15년 철폐	8	0.1%	0	0.0%	기타정밀화학제품(8), 파티클보드(8), 합판(8-10) 등
20년 철폐	1	0.0%	6,608	0.0%	합판(8) 등
소계	21	0.2%	11,885	0.0%	
최종 관세철폐	9,961	99.7%	5,583,422,698	99.4%	

(베트남측 양허)

□ 베트남은 RCEP에서 한국에게 전체 공산품(임산물 포함) 중 ①품목수 기준 87.0%(6,864개), ②對한국 수입액 기준 89.6%(160.3억불)에 대한 관세를 15년내로 철폐

○ 베트남은 기체결 FTA* 대비 ①품목수 기준 4.1%(324개), ②對한국 수입액 기준 3.6%(6.5억불)에 대한 관세를 10년내로 추가 철폐

* 한-아세안 FTA 및 한-베트남 FTA

⇒ 베트남은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한국에게 ①품목수 기준 91.9%(7,247개), ②對한국 수입액 기준 94.4%(169.0억불)에 대한 관세를 10년내로 최종 철폐

< 베트남의 對한국 공산품(임산물 포함)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베트남→한국	6,923 (87.8%)	16,247 (90.8%)	6,864 (87.0%)	16,032 (89.6%)	324 (4.1%)	650 (3.6%)	7,247 (91.9%)	16,897 (94.4%)

< 베트남의 對한국 공산품(임산물 포함)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관세철폐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對한국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전체	7,886		17,892,448,796		
한-베트남 FTA	6,923	87.8%	16,247,282,278	90.8%	
즉시 철폐	29	0.4%	258,099,919	1.4%	펌프(7-10), 철도차량부품(10-15), 철구조물(10-12), 계전기(3), 합성수지(10), 전동기(3), 기타정밀화학원료(20), 수공구(25) 등
10년 철폐	295	3.7%	391,848,612	2.2%	연결부품(20), 전선(10-17), 접착제(14), 도료(10), 형강(12), 아연도강판(10), 변압기(10), 펌프(20), 밸브(15), 자동차부품(10), 경작기계(10), 차단기(25), 화물자동차(15-20), 철강선(10-15), 공기조절기(17-25), 비누(20-27), 차단기(15) 등
15년 철폐	-	-	-	-	
20년 철폐	-	-	-	-	
소계	324	4.1%	649,948,531	3.6%	
최종 관세철폐	7,247	91.9%	16,897,230,809	94.4%	

3 농산물

(한국측 양허)

□ 한국은 RCEP에서 베트남에게 전체 농산물 중 ① 품목수 기준 63.4% (1,029개), ② 對베트남 수입액 기준 61.5%(2.1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철폐

○ 한국은 기체결 FTA* 대비 ① 품목수 기준 4.6%(75개), ② 對베트남 수입액 기준 0.4%(1백만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추가 철폐

* 한-아세안 FTA 및 한-베트남 FTA

⇒ 한국은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베트남에게 ① 품목수 기준 79.5%(1,290개), ② 對베트남 수입액 기준 77.6%(2.6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최종 철폐

< 한국의 對베트남 농산물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한국→베트남	1,215 (74.9%)	259 (77.2%)	1,029 (63.4%)	206 (61.5%)	75 (4.6%)	1 (0.4%)	1,290 (79.5%)	260 (77.6%)

< 한국의 對베트남 농산물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對베트남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전체	1,623		335,338,479		
기체결 FTA	1,215	74.9%	258,976,988	77.2%	
즉시 철폐	3	0.2%	0	0.0%	기타식물성유지(5), 키위(45) 등
10년 철폐	24	1.5%	182,106	0.1%	두류(27), 대추야자(30), 김(20), 식물성유지(5), 기타농산가공품(8), 과일주스(50) 등
15년 철폐	39	2.4%	985,813	0.3%	오리고기(18), 기타낙농품(49.5), 포도(건조)(21), 기타농산가공품(45) 등
20년 철폐	9	0.6%	29,910	0.0%	강낭콩(27), 녹용(20), 타피오카(냉동)(45), 기타해조류(20) 등
소계	75	4.6%	1,197,828	0.4%	
최종 관세철폐	1,290	79.5%	260,174,816	77.6%	

(베트남측 양허)

□ 베트남은 RCEP에서 한국에게 전체 농산물 중 ①품목수 기준 84.9%(1,085개), ②대한국 수입액 기준 89.3%(1.3억불)에 대한 관세를 15년내로 철폐

○ 베트남은 기체결 FTA* 대비 ①품목수 기준 0.2%(2개), ②대한국 수입액 기준 1.0%(1.5백만불)에 대한 관세를 10년내로 추가 철폐

* 한-아세안 FTA 및 한-베트남 FTA

⇒ 베트남은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한국에게 ①품목수 기준 92.6%(1,183개), ②대한국 수입액 기준 98.2%(1.5억불)에 대한 관세를 10년내로 최종 철폐

< 베트남의 대한국 농산물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베트남→ 한국	1,181 (92.4%)	145 (97.2%)	1,085 (84.9%)	133 (89.3%)	2 (0.2%)	1.5 (1.0%)	1,183 (92.6%)	146 (98.2%)

< 베트남의 대한국 농산물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관세철폐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대한국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전체	1,278		148,832,040		
한-베트남 FTA	1,181	92.4%	144,692,390	97.2%	
즉시 철폐	-	-	-	-	
10년 철폐	2	0.2%	1,471,090	1.0%	주류(55), 기타농산가공품(10)
15년 철폐	-	-	-	-	
20년 철폐	-	-	-	-	
소계	2	0.2%	1,471,090	1.0%	
최종 관세철폐	1,183	92.6%	146,163,480	98.2%	

4 수산물

(한국측 양허)

□ 한국은 RCEP에서 베트남에게 전체 수산물 중 ①품목수 기준 85.3%(538개), ②對베트남 수입액 기준 55.0%(2.7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철폐

○ 한국은 기체결 FTA* 대비 ①품목수 기준 9.5%(60개), ②對베트남 수입액 기준 0.7%(4백만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추가 철폐

* 한-아세안 FTA 및 한-베트남 FTA

⇒ 한국은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베트남에게 ①품목수 기준 91.3%(576개), ②對베트남 수입액 기준 61.5%(3.1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최종 철폐

< 한국의 對베트남 수산물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한국→ 베트남	516 (81.8%)	301 (60.7%)	538 (85.3%)	273 (55.0%)	60 (9.5%)	4 (0.7%)	576 (91.3%)	305 (61.5%)

< 한국의 對베트남 수산물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對베트남 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전체	631		495,525,941		
기체결 FTA	516	81.8%	300,976,021	60.7%	
즉시 철폐	-	-	-	-	
10년 철폐	1	0.2%	0	0.0%	김(20)
15년 철폐	50	7.9%	3,655,039	0.7%	참치(10), 기타어류(10), 새우젓(35), 넙치(20), 톳(20), 조개(바지락)(20), 오징어(훈제)(20), 기타수산물가공품(20) 등
20년 철폐	9	1.4%	485	0.0%	실뱀장어(27), 게(20), 오징어(10), 기타해조류(20) 등
소계	60	9.5%	3,655,524	0.7%	
최종 관세철폐	576	91.3%	304,631,545	61.5%	

(베트남측 양허)

□ 베트남은 RCEP에서 한국에게 전체 수산물 중 ① 품목수 기준 85.0%(335개), ② 대한국 수입액 기준 97.3%(0.5억불)에 대한 관세를 15년내로 철폐

○ 베트남은 기체결 FTA*에서 수산물 전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

* 한-아세안 FTA 및 한-베트남 FTA

< 베트남의 대한국 수산물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베트남→한국	394 (100%)	54 (100%)	335 (85.0%)	53 (97.3%)	-	-	394 (100%)	54 (100%)

< 베트남의 대한국 수산물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관세철폐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대한국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전체	394		54,412,574		
한-베트남 FTA	394	100.0%	54,412,574	100.0%	
즉시 철폐	-	-	-	-	
10년 철폐	-	-	-	-	
15년 철폐	-	-	-	-	
20년 철폐	-	-	-	-	
소계	-	-	-	-	
최종 관세철폐	394	100.0%	54,412,574	100.0%	

2. 한국 ↔ 호주 · 뉴질랜드

[전반적 평가]

□ 한국은 호주와 뉴질랜드와는 전반적으로 기체결 FTA 철폐 범위 내에서 개방수준을 유지하여, 민감성이 높은 농수산물을 보호

※ 호주와 뉴질랜드는 모두 기체결 양자 FTA상 전 품목 관세철폐

○ 한국은 상대적으로 수입액이 미미하고 민감성이 낮은 일부 농수산물에 국한하여, 각 4개(對호주), 1개(對뉴지)를 기체결 대비 추가 철폐(20년철폐)

< 참고 : 전체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기준) >

한국→호주·뉴질랜드			호주·뉴질랜드→한국		
기체결 FTA	추가 철폐	최종 수준	기체결 FTA	추가 철폐	최종 수준
(호) 98.1%	(호) 0.03%	(호) <u>98.2%</u>	100%	-	<u>100%</u>
(뉴) 97.9%	(뉴) 0.01%	(뉴) <u>97.9%</u>			

< 참고 :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관세율: %) >

한국→호주·뉴질랜드	호주·뉴질랜드→한국
(호) 기타육류(소시지케이싱)(27%), 기타어류(25%), 뱀장어(27%)	-
(뉴) 기타어류(25%)	

[① 한국 ↔ 호주]

(한국측 양허)

□ 한국은 RCEP에서 호주에게 ① 품목수 기준 90.5%(11,083개), ② 對호주 수입액 기준 93.7%(205.1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철폐

○ 한국은 기체결 FTA* 대비 ① 품목수 기준 0.0%(4개), ② 對호주 수입액 기준 0.0%(0.2백만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추가 철폐

* 한-호주 FTA

⇒ 한국은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호주에게 ① 품목수 기준 98.2%(12,020개), ② 對호주 수입액 기준 99.7%(218.2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최종 철폐

< 한국의 對호주 상품 양허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한국→호주	12,016 (98.1%)	21,820 (99.7%)	11,083 (90.5%)	20,505 (93.7%)	4 (0.0%)	0.2 (0.0%)	12,020 (98.2%)	21,821 (99.7%)

< 한국의 對호주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관세철폐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對호주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전체	12,243		21,886,263,515		
한-호주 FTA	12,016	98.1%	21,820,314,936	99.7%	
즉시 철폐	-	-	-	-	
10년 철폐	-	-	-	-	
15년 철폐	-	-	-	-	
20년 철폐	4	0.0%	197,475	0.0%	기타육류(소세지케이싱)(27), 기타어류(25), 뱀장어(27)
소계	4	0.0%	197,475	0.0%	
최종 관세철폐	12,020	98.2%	21,820,512,410	99.7%	

(호주측 양허)

□ 호주는 RCEP에서 한국에게 ① 품목수 기준 98.3%(6,077개), ② 對한국 수입액 기준 98.6%(94.7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철폐

⇒ 호주는 한-호 FTA에서 전 품목 관세철폐(100%)한 바, RCEP에서 對한국 추가 관세 철폐는 없음

< 호주의 對한국 상품 양허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호→한	6,184 (100.0%)	9,603 (100.0%)	6,077 (98.3%)	9,465 (98.6%)	-	-	6,184 (100.0%)	9,603 (100.0%)

[② 한국 ↔ 뉴질랜드]

(한국측 양허)

□ 한국은 RCEP에서 뉴질랜드에게 ① 품목수 기준 90.6%(11,092개), ② 對뉴질랜드 수입액 기준 81.3%(11.1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철폐

○ 한국은 기체결 FTA* 대비 ① 품목수 기준 0.0%(1개), ② 對뉴질랜드 수입액 기준 0.0%(無)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추가 철폐

* 한-뉴질랜드 FTA

⇒ 한국은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뉴질랜드에게 ① 품목수 기준 97.9%(11,981개), ② 對뉴질랜드 수입액 기준 96.2%(13.2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최종 철폐

< 한국의 對뉴질랜드 상품 양허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한국→ 뉴질랜드	11,980 (97.9%)	1,316 (96.2%)	11,092 (90.6%)	1,111 (81.3%)	1 (0.0%)	- (0.0%)	11,981 (97.9%)	1,316 (96.2%)

< 한국의 對뉴질랜드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관세철폐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對뉴지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전체	12,243		1,367,173,976		
한-뉴질랜드 FTA	11,980	97.9%	1,315,839,336	96.2%	
즉시 철폐	-	-	-	-	
10년 철폐	-	-	-	-	
15년 철폐	-	-	-	-	
20년 철폐	1	0.0%	0	0.0%	기타어류(냉동)(25)
소계	1	0.0%	0	0.0%	
최종 관세철폐	11,980	97.9%	1,315,839,336	96.2%	

(뉴질랜드측 양허)

□ 뉴질랜드는 RCEP에서 한국에게 ① 품목수 기준 91.8%(6,866개), ② 對한국 수입액 기준 92.1%(13.2억불)에 대한 관세를 15년내로 철폐

⇒ 뉴질랜드는 한-뉴질랜드 FTA에서 전 품목 관세철폐(100%)한 바, RCEP에서 對한국 추가 관세 철폐는 없음

< 뉴질랜드의 對한국 상품 양허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뉴질랜드 →한국	7,478 (100.0%)	1,434 (100.0%)	6,866 (91.8%)	1,321 (92.1%)	-	-	7,478 (100.0%)	1,434 (100.0%)

3. 한국 ↔ 중국

[전반적 평가]

- 양국은 기체결 FTA(한-중) 철폐 범위 내에서 전반적 개방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관심품목에 대해서는 소폭의 양허 개선을 도출
- 중국은 한-중 FTA에서 철폐되지 않은 철강제품, 기계류 등 41개 품목을 추가로 철폐 (기존 90.6% → RCEP 91.1%(품목수 기준))
- 한국은 이에 상응하여 상대적으로 민감성이 낮고 수입액이 미미한 일부 농산물 4개 품목을 추가 철폐 (기존 92.0% → RCEP 92.0%(품목수 기준))

< 참고 : 전체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기준) >

한국→중국			중국→한국		
기체결 FTA	추가 철폐	최종 수준	기체결 FTA	추가 철폐	최종 수준
92.0%	0.03%	<u>92.0%</u>	90.6%	0.5%	<u>91.1%</u>

< 참고 :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관세율: %) >

한국→중국	중국→한국
덱스트린(8%), 녹용(녹각, 전지 등)(20%)	선박용부품(5%), <u>스테인레스강선재</u> (10%), <u>화학기계</u> (35%), 의료용기기(4%), 기타산업기계(15%), TV카메라(10%), 재료시험기(7%), 제어기기부품(7%), 음향기기부품(30%) 등

[전체 품목]

(한국측 양허)

□ 한국은 RCEP에서 중국에게 ① 품목수 기준 86.0%(10,529개), ② 對중국 수입액 기준 83.6%(685.2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철폐

○ 한국은 기체결 FTA* 대비 ① 품목수 기준 0.03%(4개), ② 對중국 수입액 기준 0.0%(0.2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추가 철폐(전 품목 농산물)

* 한-중국 FTA

⇒ 한국은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중국에게 ① 품목수 기준 92.0%(11,268개), ② 對중국 수입액 기준 90.7%(743.4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최종 철폐

< 한국의 對중국 상품 양허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한국→중국	11,264 (92.0%)	74,317 (90.7%)	10,529 (86.0%)	68,516 (83.6%)	4 (0.0%)	21 (0.0%)	11,268 (92.0%)	74,337 (90.7%)

< 한국의 對중국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관세철폐 수준 (전 품목 농산물)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對중국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품목수	관세철폐율	수입액	관세철폐율	
전체	12,243		81,918,641,266		
한-중국 FTA	11,264	92.0%	74,316,645,674	90.7%	
즉시 철폐	1	0.0%	17,821,590	0.0%	덱스트린(8)
10년 철폐	-	-	-	-	
15년 철폐	-	-	-	-	
20년 철폐	3	0.0%	2,759,909	0.0%	녹용(녹각, 전지 등)(20)
소계	4	0.0%	20,581,499	0.0%	
최종 관세철폐	11,268	92.0%	74,337,227,173	90.7%	

(중국측 양허)

□ 중국은 RCEP에서 한국에게 ① 품목수 기준 86.0%(7,118개), ② 對한국 수입액 기준 83.2%(1,453.6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철폐

○ 중국은 기체결 FTA* 대비 ① 품목수 기준 0.5%(41개), ② 對한국 수입액 기준 0.4%(7.5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추가 철폐(전 품목 공산품)

* 한-중국 FTA

⇒ 중국은 기체결 FTA와 RCEP을 통해 한국에게 ① 품목수 기준 91.1%(7,540개), ② 對한국 수입액 기준 85.9%(1,500.8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최종 철폐

< 중국의 對한국 상품 양허 최종 관세철폐 수준 (단위: 개/백만불) >

구분	기체결 FTA		RCEP 상품 양허		추가 관세철폐		최종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중국→한국	7,499 (90.6%)	149,336 (85.5%)	7,118 (86.0%)	145,359 (83.2%)	41 (0.5%)	747 (0.4%)	7,540 (91.1%)	150,083 (85.9%)

< 중국의 對한국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관세철폐 수준 (전 품목 공산품)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對한국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전체	8,277		174,738,302,771		
한-중국 FTA	7,499	90.6%	149,335,978,861	85.5%	
즉시 철폐	-	-	-	-	
10년 철폐	29	0.4%	581,697,373	0.3%	선박용부품(5), 초음파영상진단기(5), 음향기기부품(10.5-30), 기타컴퓨터부품(6), 전자계측기(5-14), 센서(6), X선기기부품(4), TV카메라(10), 반도체제조용장비(8-10) 등
15년 철폐	-	-	-	-	
20년 철폐	12	0.1%	165,489,428	0.1%	재료시험기(7), 기타의료용전자기기(4), 배전및제어기기부품(7), 음향기기부품(30), 반도체제조용장비(5), 기타산업기계(15)
소계	41	0.5%	747,186,800	0.4%	
최종 관세철폐	7,540	91.1%	150,083,165,661	85.9%	

4. 한국 ↔ 일본

[전반적 평가]

- 양국 관세철폐 수준의 경우, 품목수로는 모두 83%로 동일하나, 수입액으로는 일본이 한국에게 2%p 추가 관세철폐(韓 76%, 日 78%)
- 한국은 일본에 대해 자동차, 기계 등 주요 민감 품목은 양허제외 했으며, 개방한 품목도 장기 철폐(10-20년) 및 비선형철폐*를 다수 활용
 - * 관세를 매년 동일한 비중으로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비균등하게 철폐하는 방식
 - 특히 한국은 일본보다 장기철폐 비중이 높으며(韓 41.6%, 日 17.1%), 20년 철폐(韓 455개, 日 2개) 및 비선형철폐(韓 105개, 日 없음)를 다수 활용
 - 한편 개방된 품목(플라스틱, 석화원료 등)도 대부분 최종재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
- 농수산물의 경우, 한-일간 최초 FTA이며, 민감성을 고려하여 낮은 개방수준(농산물 46.2%, 수산물 47.9%)으로 시장 개방 협상 마무리

< 참고 : 전체 관세철폐 수준 (품목수 기준) >

한국→일본			일본→한국		
기체결 FTA	추가 철폐	최종 수준	기체결 FTA	추가 철폐	최종 수준
-	-	83.0%	-	-	83.0%

< 참고 :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관세율: %) >

한국→일본	일본→한국
플라스틱제품(6.5%), 판유리(8%), 석유화학중간원료 (3%), 석유화학제품(3%), 은(가루)(3%), 중유(벙커C유) 3%, 금(기타)(3%), 합금철(페로니켈)(3%), 광학렌즈(기타)(8%), 정밀화학원료 (5.5%), 맥주 (30%) 등	플라스틱제품(4.8%), 합성수지 (2.8-3.1%), 증류주(소주 등) (16%), 판유리(3.1%), 구리판(3%), 필름류(4.8%), 화학공업제품(2.6%), 비철금속제품(2.5%), 정밀화학원료 (3.1%), 폴리카보네이트(2.8%) 등

1 전체 품목

(한국측 양허)

□ 한국은 RCEP에서 일본에게 ① 품목수 기준 83.0%(10,158개), ② 對일본 수입액 기준 76.0%(472.8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 철폐

< 한국의 RCEP 對일본 상품 양허 전체 품목 양허수준 >

양허 유형	품목수		'12-'13년 양자 수입액 평균(불)		對일본 주요 수입품목 (관세율 %)	
	개수	비중(%)	對일본	비중(%)		
관세철폐	즉철	5,069	41.4%	23,841,346,246	38.3%	고철(0), 중후판(0), 메모리반도체(0), 프로세스와콘트롤러(0), 스틸렌(0), 열연강판(0), 개별소재반도체(0), 슬랩(0), 실리콘웨이퍼(0) 등 금(3), 전기로부품(5), 원유(3), 기타석탄(3), 부탄(3), 윤활유(7), 은(3), 기타비금속광물(8), 기타금속광물(2), 백금(3) 등
	10년	3,965	32.4%	16,929,087,597	27.2%	플라스틱제품(6.5), 판유리(8), 기초유분(3), 은(3), 사진영화용재료(6.5), 반도체제조용장비(8), 중유(3), 평판디스플레이제조용장비(5)
	15년	655	5.3%	2,926,181,604	4.7%	배전및제어기부품(8), 골프채(8), 기타화학공업제품(6.5), 동박(8), 기타비철금속제품(8), 기타정밀화학원료(5.5-6.5) 등
	15년 비선형	14	0.1%	653,315,014	1.1%	액정디바이스(8), 스위치(8), 전동기(8), 자동차부품(8), 액체펌프(8), 기타비철금속제품(2), 기타몰리브덴제품(3), 니켈분(5), 동괴(5), 에틸렌중합체필름(4), 폴리메탄아크릴사메틸(8), 기타정밀화학원료(5.5-6.5) 등
	20년	364	3.0%	660,256,785	1.1%	틀루엔(3), 기타합성수지(6.5), 에틸렌중합체필름(6.5), 기타표면활성제(8), 맥주(30), 전동축및기어(8), 화학기계(8), 공기조절기(8) 등
	20년 비선형	91	0.7%	2,267,381,932	3.6%	석유화학중간원료(3), 합금철(3), 기초유분(3), 압연기(8), 실리콘수지(6.5), 기타기계류부품(8), 기타합성수지(6.5), 고무플라스틱가공기(8), 기타플라스틱제품(6.5), 목재가공기계(8), 기타기계요소(8) 등
	소계	10,158	83.0%	47,277,569,178	76.0%	
양허제외	2,085	17.0%	14,916,296,463	24.0%	기타광학기부품(8), 경유(3), 기타플라스틱제품(6.5), 기타화학공업제품(6.5), 자동차부품(8), 기타주철(8), 승용차(8), 터보제트(8), 원동기부품(8), 증기터빈(5), 윤활유(7) 등	
총합계	12,243	100%	62,193,865,640	100%		

(일본측 양허)

□ 일본은 RCEP에서 한국에게 ①품목수 기준 83.0%(7,548개), ②對일본 수입액 기준 78.0%(290.5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철폐

< 일본의 RCEP 對한국 상품 전체 품목 양허수준 (주요 수입 품목) >

양허 유형	품목수		'12-'13년 양자 수입액 평균(불)		주요 수입품목 (관세율 %)	
	개수	비중(%)	對한국	비중(%)		
관세철폐	즉철	5,993	65.9%	24,946,111,120	67.0%	자동차취발유(0), 무선전화기(0), 은(0), 기타집적회로반도체(0), 메모리반도체(0), 전신기기(0), 기타석유제품(0), 플라스틱금형(0), 냉연강판(0), 개별소자반도체(0), 무선중계기(0), 기타화학공업제품(2.6), 직물(부직포)(4.3), 폴리에스터사(5.3-6.6), 폴리에스터직물(5.7), 인조섬유(기타)(6.6), 폴리에스터섬유(6.6), 기타직물(3.5), 정밀화학원료(2.5-3.3), 석유화학제품(3.9) 등
	10년	775	8.5%	2,848,357,295	7.6%	폴리에틸렌테레프탈(4.8), 폴리에스테르수지(3.1), 기타플라스틱제품(3.9), 기타정밀화학원료(3.3-3.9), 판유리(3.1), 동판(3), 에틸렌중합체필름(4.8), 기타비철금속제품(2.5), 폴리카보네이트(2.8) 등
	15년	778	8.6%	1,137,412,136	3.1%	폴리프로필렌(2.8), 의약품(3.1), 기타합성수지(2.8), 기타화학공업제품(3.1), 플라스틱제품(3.1), 정제동관(3), 중유(459yen/kl), 장신구(모조)(3.7), 유기화학품(기타)(3.1), 폴리스티렌(3.1) 등
	20년	2	0.0%	114,130,531	0.3%	증류주(소주)(16), 발효주(막걸리)(42.40엔/l)
	소계	7,548	83.0%	29,046,011,082	78.0%	
관세감축	51	0.6%	0	0.0%	침구이불(3.8), 기타의섬유제품(4.9-6.5), 텐트 및캠핑용품(4-5.6), 실내용품(5.3-10.9) 등	
양허제외	1,492	16.4%	8,203,034,676	22.0%	자동차취발유(934엔/kl), 중유(249엔/kl), 등유(346엔/kl), 제트엔진용중유(346엔/kl), 어육(참다랑어)(3.5), 파프리카(3), 김치(9), 망간철(6.3), 폴리프로필렌(6.5), 전복(7), 음료베이스(29.8) 등	
총합계	9,091	100.0%	37,249,045,758	100.0%		

※ 동일 품목에 대한 TRQ 세번은 전체 품목수에서 제외

2] 공산품(임산물 포함)

(한국측 양허)

□ 한국은 RCEP에서 일본에게 ① 품목수 기준 91.2%(9,106개), ② 對일본 수입액 기준 76.3%(471.0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철폐

※ (참고) 공산품만 고려시(임산물 제외), 품목수 기준 91.7%(8,865개),
對일본 수입액 기준 76.3%(471.0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철폐

< 한국의 對日 공산품(임산물 포함)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관세철폐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對일본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전체	9,989		61,763,578,059		
즉시 철폐	4,706	47.1%	23,804,573,772	38.5%	금(3), 전기로부품(5), 원유(3), 기타석탄(3), 부탄(3), 윤활유(7), 은(3), 기타비금속광물(8), 기타금속광물(2), 백금(3) 등
10년 철폐	3,416	34.2%	16,862,848,052	27.3%	플라스틱제품(6.5), 판유리(8), 기초유분(3), 은(3), 사진 영화용재료(6.5), 반도체제조용장비(8), 중유(3), 평판디스플레이제조용장비(5)
15년 철폐	517	5.2%	2,883,581,198	4.7%	배전및제어기부품(8), 골프채(8), 기타화학공업제품(6.5), 동박(8), 기타비철금속제품(8), 기타정밀화학원료(5.5-6.5) 등
15년 철폐(비)	14	0.1%	653,315,014	1.1%	액정디바이스(8), 스위치(8), 전동기(8), 자동차부품(8), 액체폼프(8), 기타비철금속제품(2), 기타올리브덴제품(3), 니켈분(5), 동괴(5), 에틸렌중합체필름(4), 폴리메탄아크릴산메틸(8), 기타정밀화학원료(5.5-6.5) 등
20년 철폐	362	3.6%	632,451,481	1.0%	톨루엔(3), 기타합성수지(6.5), 에틸렌중합체필름(6.5), 기타표면활성제(8), 맥주(30), 전동축및기어(8), 화학기계(8), 공기조절기(8) 등
20년 철폐(비)	91	0.9%	2,267,381,932	3.7%	석유화학중간원료(3), 합금철(3), 기초유분(3), 압연기(8), 실리콘수지(6.5), 기타기계류부품(8), 기타합성수지(6.5), 고무플라스틱가공기(8), 기타플라스틱제품(6.5), 목재가공기계(8), 기타기계요소(8) 등
최종 관세철폐	9,106	91.2%	47,104,151,449	76.3%	

(일본측 양허)

□ 일본은 RCEP에서 한국에게 ① 품목수 기준 93.1%(6,371개), ② 對한국 수입액 기준 81.5%(285.4억불)에 대한 관세를 15년내로 철폐

※ (참고) 공산품만 고려시(임산물 제외), 품목수 기준 94.1%(6,198개),
對한국 수입액 기준 81.6%(285.3억불)에 대한 관세를 15년내로 철폐

< 일본의 對韓 공산품(임산물 포함)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관세철폐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對한국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전체	6,844		35,014,289,204		
즉시 철폐	5,271	77.0%	24,589,339,375	70.2%	기타화학공업제품(2.6), 직물(부직포)(4.3), 폴리에스터사(5.3-6.6), 폴리에스터직물(5.7), 인조섬유(기타)(6.6), 폴리에스터섬유(6.6), 기타직물(3.5), 정밀화학원료(2.5-3.3), 석유화학제품(3.9) 등
10년 철폐	455	6.6%	2,833,845,801	8.1%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제품(4.8), 폴리에스테르수지(3.1), 기타플라스틱제품(3.9), 기타정밀화학원료(3.3-3.9), 판유리(3.1), 동판(3), 에틸렌중합체필름(4.8), 기타비철금속제품(2.5), 폴리카보네이트(2.8) 등
15년 철폐	645	9.4%	1,122,268,104	3.2%	프로필렌공중합체(2.8), 의약품(3.1), 기타합성수지(2.8), 기타화학공업제품(3.1), 플라스틱제품(3.1), 정제동판(3), 중유(459yen/kl), 장신구(모조)(3.7), 유기화학품(기타)(3.1), 폴리스티렌(3.1) 등
최종 관세철폐	6,371	93.1%	28,545,453,280	81.5%	

※ 동일 품목에 대한 TRQ 세번은 전체 품목수에서 제외

3 농산물

(한국측 양허)

□ 한국은 RCEP에서 일본에게 ① 품목수 기준 46.2%(750개), ② 對일본 수입액 기준 52.6%(1.7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철폐

< 한국의 對日 농산물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관세철폐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對일본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전체	1,623		319,046,201		
즉시 철폐	307	18.9%	36,354,354	11.4%	기타식물성재료(3), 효모류(8), 사료(5), 동물성유지(3), 기타농산가공품(8), 기타채유종실(3), 식물성액즙(3), 단백질류(8), 사료(5), 말(8), 기타산동물(8), 대두(3), 물(8) 등
10년 철폐	374	23.0%	65,736,090	20.6%	기타농산가공품(향미용조제품)(8), 사료(어류용배합)(5), 기타산동물(8), 커피(볶은 것)(8), 농산물왁스(8), 효모류(8), 사탕(8), 박류(밀기울)(2), 기타음료(8), 초코렛(8) 등
15년 철폐	67	4.1%	37,805,173	11.8%	주류(청주)(15), 단백질류(8), 기타축산부산물(8), 커피조제품(8), 기타주류(20), 위스키(20), 포도주(15), 인삼음료(8), 식물성유지(8), 식물성액즙(8), 토마토(조제)(8), 기타곡분(5) 등
20년 철폐	2	0.1%	27,805,305	8.7%	소주(30), 맥주(30)
최종 관세철폐	750	46.2%	167,700,921	52.6%	

(일본측 양허)

□ 일본은 RCEP에서 한국에게 ① 품목수 기준 54.1%(930개), ② 對한국 수입액 기준 35.3%(4.6억불)에 대한 관세를 20년내로 철폐

< 일본의 對韓 농산물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관세철폐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對한국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전체	1,720		1,311,783,715		
즉시 철폐	649	37.7%	338,212,573	25.8%	조제식품(인스턴트티)(10), 음료(생수, 탄산수)(3), 유지가공품(2.5), 축산물(단백질물질)(5.1), 축산물(기타부산물)(1.5), 식물성한약재(2.5), 식물성물질(소르비톨)(2.3) 등
10년 철폐	205	11.9%	8,728,491	0.7%	송이버섯(신선·냉장)(3), 버섯(4.3), 딸기(조제)(11), 과실혼합물(5.4), 주류(27-42.40엔/ℓ), 배(4.8), 식초(7.5), 마테(12), 음료베이스(12.5), 겨자(7.5-9) 등
15년 철폐	74	4.3%	1,466,241	0.1%	불활성효모(3.8), 배합사료(3), 기타과실(34), 포도주(15), 식물성단백질(5.1), 계란알부민(8), 과일주스(23-29.8), 과실혼합물(21.3), 사케(70.40엔/ℓ) 등
20년 철폐	2	0.1%	114,130,531	8.7%	증류주(소주)(16), 발효주(막걸리)(42.40엔/ℓ)
최종 관세철폐	930	54.1%	462,537,836	35.3%	

4 수산물

(한국측 양허)

□ 한국은 RCEP에서 일본에게 ①품목수 기준 47.9%(302개), ②對일본 수입액 기준 5.1%(5.7백만불)에 대한 관세를 15년내로 철폐

< 한국의 對日 수산물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관세철폐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對일본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전체	631		111,241,381		
즉시 철폐	56	8.9%	418,120	0.4%	기타산동물(고래)(8), 기타어류(비단잉어)(10), 기타어류(10), 기타수산물(가공품)(5), 수산물(3-8), 패각공예품(8), 한천(8), 김(10), 굴(5), 어육(10) 등
10년 철폐	175	27.7%	503,455	0.5%	수산물(어류유지)(3), 기타수산물(20), 건조수산물(20), 기타어란(10), 기타수산물(가공품)(20), 기타갑각류(20), 새우(20), 어육(20), 기타어류(10-20), 염장어란(20), 명란(10) 등
15년 철폐	71	11.3%	4,795,233	4.3%	기타수산물(가공품(캐비아)(20), 참치(10), 패각공예품(8), 기타수산물(가공품(해삼)(20), 수산물(엑스), 소금(8), 건조수산물(20), 기타해조류(8) 등
최종 관세철폐	302	47.9%	5,716,808	5.1%	

(일본측 양허)

□ 일본은 RCEP에서 한국에게 ①품목수 기준 46.9%(247개), ②對한국 수입액 기준 4.1%(0.4억불)에 대한 관세를 15년내로 철폐

< 일본의 對韓 수산물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및 최종 관세철폐 수준 >

구분	품목수(개)		'12-'13년 對한국수입액 평균(불)		주요 품목 (관세율, %)
전체	527		922,972,838		
즉시 철폐	73	13.9%	18,559,173	2.0%	해조류(김)(3.5), 냉동어류(대구)(2), 갑각류(새우)(1), 수산물(가공품)(2.2), 냉동어육(2), 갑각류(2), 어류(신선삼치)(2), 어류(신선돔)(2), 기타관상용어류(1.7), 새우(조제)(4.8-5.3) 등
10년 철폐	115	21.8%	5,783,003	0.6%	냉동어류(3.5), 굴(탈각·훈제)(6.7), 홍합(조제)(9.6), 게살(4), 기타넙치(3.5), 건조수산물(10), 캐비아(6.4), 농어(냉동)(3.5), 기타수산물(통조림)(9.6), 달팽이(조제)(9.6) 등
15년 철폐	59	11.2%	13,677,790	1.5%	수산물(1.7), 바다가재(5), 새조개(6.7), 오징어(3.5), 홍합(냉동)(6.7), 굴(비탈각·훈제)(6.7), 노르웨이 바다가재(4.8), 게(훈제)(9.6) 등
최종 관세철폐	247	46.9%	38,019,966	4.1%	

부록 II . 서비스 · 투자 시장개방 주요내용

서비스 · 투자 시장개방 주요내용

1. 자유화 방식

- (서비스) 총 15개국 중 7개국(한·일·호·인나·브루나이·싱·말련)은 네거티브 방식, 8개국(중·뉴·태·필·베·캄·라·미)은 포지티브 방식으로 개방
 -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한 국가들은 일부 가능한 분야에 대해 MFN, 래킷을 약속하고, 발효 후 6년 내에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 원래 포지티브 방식은 래킷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나, RCEP에서는 추가 자유화요소로 도입
 - ※ 단, 최빈개발도상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발효 후 15년 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투자) 15개국 모두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유보 제출
 - 아세안 9개국(싱 제외) 및 중국과는 최초로 투자 유보목록을 도입
 - ※ 일본과는 한-일 투자보장협정(03)에서 유보목록 도입

2. 투자 관련 주요 유보

- 공공질서 확보를 위한 외국인 투자 규제 가능
 - 공공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 (NT) 및 이행요건(PR) 의무에 반하는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보를 기재하여 규제 권한을 확보
- 정부권한 행사 서비스에 필요한 외국인 투자 제한
 - 정부권한 행사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외국인 투자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미래유보를 기재
 - ※ 정부 권한 행사로 제공되는 서비스: 법집행, 교정서비스 등 정부가 비경쟁적, 비상업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
 - 단, 한국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는 외국인 투자자 및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동 유보 적용 제외

3. 서비스 관련 주요 유보

국내 전문직서비스(법무·회계·세무)

- 법률 서비스의 경우, 다른 당사자 공인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한국에서 자국법 및 국제공법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1단계로 허용
- 회계·세무 서비스는 한국내 자격 취득자로 서비스 공급을 제한

참고 : 전문직서비스 단계적 개방 주요내용

<법률>

- 1단계(발효) : 외국법 및 국제공법 자문 허용, 외국 로펌의 사무소 개설 허용
- 2단계(발효 후 2년내) : 국내 로펌과의 업무제휴 허용
- 3단계(발효 후 5년내) : 외국 로펌과 국내 로펌간 합작 및 동 사업체의 국내변호사 고용 허용

<회계·세무>

- 1단계(발효) : 외국회계·세무 자문 허용, 외국 회계·세무법인의 사무소 개설 허용
- 2단계(발효 후 5년내) : 국내 회계·세무법인에 대한 외국 회계사·세무사의 출자 허용

통신 서비스

- 통신 관련 현행 국내법의 시장접근 제한사항을 현재유보에 기재
 -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을 현행 49%로 유지하였고, 한-미 및 한-EU FTA에서의 간접투자 개방은 미허용

방송 서비스

- 방송 서비스에 대한 시장접근 관련 사항을 포괄 미래유보하여 향후 자율적 규제 권한 확보
 - ※ 지상파, 위성방송, 유선방송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Program Provider: PP) 인허가 제도, 외국인 투자 지분 한도 등

□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및 디지털 콘텐츠

- 현재 규제 체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입자 기반 비디오서비스* (예: IPTV, OTT) 분야를 포괄 미래유보하여 자율적 규제권한 확보

* 당해 공급자가 소유 또는 통제(임차를 포함)하는 전용 전송 용량을 통하여 최종 이용자에게 공급되는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로,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텔레비전(IPTV), 양방향 방송 및 오버더톱(OTT) 콘텐츠 서비스를 포함

- 디지털 시청각 서비스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가 개입하여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미래유보)

참고 : 디지털시청각 서비스
○ 인터넷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전송타입에 상관없이 스트리밍 오디오 콘텐츠, 영화 및 기타 비디오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 비디오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

□ 문화유산 및 문화재 보존·복구 관련 서비스

- 문화유산 및 문화재의 발굴·평가·매매 등 문화유산 및 문화재의 보존 복구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는 포괄유보(미래유보)

□ 정기간행물의 출판·유통 서비스

- 신문 및 정기간행물의 출판에 대해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포괄 유보(미래유보)

□ 교육의료 및 사회서비스, 공공서비스 포괄 유보

- 공교육(유·초·중·고 교육)·의료 및 사회서비스, 수도·전기·가스·생활환경 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모든 규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미래유보)
 - 다만, 고등교육(대학교) 및 성인교육 분야의 경우, 현행 법령의 수준에서 개방하고, 원격교육의 경우 비학위 성인교육에 한하여 가능함을 확인
 - 전기·가스에 대한 외국인지분제한 및 산업환경서비스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수준 유지(현재유보)

□ 육상운송 (여객·화물운송)

- 육상 여객운송 및 화물운송(쿠리어 서비스와 관련된 화물 도로운송 서비스는 제외)에 대한 규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미래유보)

□ 부동산 서비스

- 이미 대외 개방되어 있는 부동산 중개·감정평가 분야는 현재유보 기재를 통해 현행 개방 수준을 유지할 것을 확인하는 한편, 여타 분야(개발·임대·관리·공급)에 대해서는 포괄 유보(미래유보)
 - ※ 부동산중개감정평가 등 "전문직 분야의 개방"이란, 외국인들도 국내의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국내 자격증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님.

□ 건설·각종 엔지니어링 서비스

- 이미 대외 개방되어 있는 현행 법령상 규정에 따라 사무실 구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 참여가 가능함을 확인

□ 시장접근(MA) 의무 적용 범위 상향조정

- 시장접근 의무 관련 GATS 양허 수준 이상의 개방을 보장하면서, 그 이상의 시장접근을 허용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명시

서비스 분야 국가별 시장개방 주요 내용

* 본 설명자료는 국가별 시장개방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는 자료로, 정확한 양허(유보)는 fta.go.kr에서 확인 필요

* '개방'이란 GATS에 따른 시장접근을 허용하였다는 의미로서, 당사자가 외국서비스 공급자 혹은 투자자에 대해 (1) 서비스공급자 총 수의 제한 (2)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에 대한 제한 (3) 서비스영업의 총수 또는 서비스의 총 산출량에 대한 제한 (4) 특정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수에 대한 제한 (5) 특정유형의 법적실체 또는 합작투자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조치 (6) 외국자본참여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음을 의미

① 아세안(브루나이)_네거티브 유보

주요분야		주요 내용
전문직	법률	· 미개방(포괄유보)
	회계	· 공공감사서비스의 경우 감사인이 최소한 1인 이상인 파트너십이나 합작투자를 통하지 않으면 금융 감사기업 설립 불가 · 브루나이다루살람에서 금융 감사 기업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 ①재정경제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②재정경제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여 현지설립 감사인 또는 기업을 통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감사 서비스 제공 불가
	세무	· 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조세 당국의 통보에 대한 답변 제출 및 이의 신청 제출, 그리고 조세 관련 납부 처리를 포함하는 세무에서 납세자(개인 또는 기업)의 대리에 관련 모든 조치 미개방(포괄유보)
통신	기간통신	· 브루나이다루살람에서 물리적인 사업적 주재 유지, 허가받은 운영자와의 상업적 약정, 합작투자(지분제한51%), 전송장비의 브루나이다루살람 내 위치 등을 조건으로 개방 · 외국 국민 또는 기업은 이행요건 준수 의무
	부가통신	· 개방(유보 미기재)
건설	-	· ①브루나이다루살람에서 설립된 기업을 통한 경우, ②계약자로 증명서A(정부 및 민간 프로젝트 참가에 요구되는 증명서) 또는 공급자로 증명서B(민간 프로젝트 참가에 요구되는 증명서)를 최초 등록하는 경우, ③기술 또는 그 밖의 재산권적 지식을 이전하기 위한 모든 요건이 기술 또는 재산권적 지식의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침해하지 않고 브루나이다루살람에 의한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외국국민과 기업이 브루나이다루살람에 있는 인에게 기술 또는 그 밖의 재산권적 지식을 이전하는 그러한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비스 미개방 · 증명서A의 경우 등급에 대한 차등 지분제한 조건으로 개방
유통	도소매	· 미개방(포괄유보)
	중개·프랜차이즈	· 미개방(포괄유보)
교육	초중등교육 (국제학교)	· 미개방(포괄유보)
	고등교육	· 미개방(포괄유보)
도로운송	여객	· 미개방(포괄유보)
	화물	· 미개방(포괄유보)

2 아세안(캄보디아)_포지티브 양허

주요분야		주요 내용
전문직	법률	· 서비스 공급자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관할국의 법에 대한 자문 개방
	회계	· 감사서비스를 위해서는 상업적 주재 요구
	세무	· 개방
통신	기간통신	· 외자 지분 보유 요건(최대 49%)
	부가통신	· 개방
건설	-	· 개방
유통	도소매	· 자동차 및 부품 도매, 모터사이클 및 관련 부품, 라디오 및 텔레비전 장비, 악기 및 레코드, 음악 악보 및 테이프 도매 서비스 개방 · 자동차 및 부품 소매, 모터사이클 및 관련 부품, (슈퍼마켓과 대형백화점에 한정) 의약품, 의료 및 정형외과 물품의 판매를 제외하고, 식품 및 비서비스 소매서비스, 라디오 및 텔레비전 장비, 악기, 음악, 악보, 그리고 오디오·비디오 레코드 및 테이프 소매 서비스 개방
	프랜차이징	· 개방
교육	고등교육, 성인교육	· 개방
도로운송	여객	· 개방
	화물	· 개방

3] 아세안(인도네시아)_네거티브 유보

주요분야		주요 내용
전문직	법률	· 외국법 및 국제법에 관한 자문서비스만 가능 · 인도네시아 법정에서 법적 대리 또는 법적 절차 수행 불가능 · 외국 법무법인 설립 금지
	회계·세무	· 미개방(포괄유보)
통신	기간통신	· 외자지분제한(51%)하 합작법인 설립 가능
	부가통신	· 외자지분제한(51% ^① , 35% ^② 등)하 합작법인 설립 가능 ①저장 및 전송, 온라인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 등 ②공중교환 전화, 원격회의, 이동전화, 인터넷 접속, 지방·전국 무선폭출, 공중전화, 음성메일, 전자메일 등
건설	건설업	· 인도네시아에 대표사무소 설립 통한 공동운영 가능 · 외자지분제한(55%)하 합작법인 설립 가능
유통	도매·프랜차이즈	· 도매는 식음료·담배·섬유·의류·신발 도매에 대해, 프랜차이즈는 식음료·담배 도매에 대해 외자지분제한(51%)하 합작법인 설립 가능 · 최소 면적 5천m ² 이상 사업장에서 서비스 공급 가능하며, 칼리만탄, 술라웨시, 누사 탕가라, 말루쿠 및 파푸아 섬은 주도(州都) 외곽에서만 운영 가능 · 국가 무역 기업을 대리인, 단독 대리인, 유통업자 또는 단독 유통업자로 지정 필요
	직접판매(다단계)	· 외자지분제한(51%)하 합작법인 설립 가능 · 제품 목록에 인도네시아산 제품 포함이 요구 · 인도네시아직접판매협회에 가입 필요
교육	초등교육	· 미개방(포괄유보)
	중등·고등교육	· 중등교육은 기술 및 직업(전자·자동차)에 대해 합작법인 설립 필요하며, 고등교육은 기술 및 직업(폴리테크닉 기계 및 전기)에 대해, 외자지분제한(51%)하 합작법인 설립 가능 - 상업적주재는 국내 파트너십 설립, 야야산(재단) 형태로 설립, 학점, 프로그램 및 증명서에 관한 관련 기관간 상호 인정 약정 요구 등 일부 조건을 전제로 합작투자 형태를 요구하며, 그 외에는 미개방(포괄유보)
	성인교육	· 언어 강좌 및 연수에 대해 합작법인 설립 가능 - 상업적주재는 국내 파트너십 설립, 야야산(재단) 형태로 설립, 학점, 프로그램 및 증명서에 관한 관련 기관간 상호 인정 약정 요구 등 일부 조건을 전제로 합작투자 형태를 요구하며, 그 외에는 미개방(포괄유보)
도로운송	여객	· 미개방(포괄유보)
	화물	· 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은 합작투자 형태 요구

4 아세안(라오스)_포지티브 양허

주요분야		주요 내용
전문직	법률	· 라오인민공화국 법원에서 고객의 변호인 또는 대리인의 자격으로 소송절차에 참가하거나 라오인민공화국 법에 대한 법률 문서 작성 및 공증 서비스를 제외한 법률서비스 개방 - 단, 외자 지분 참여 제한(49%)
	회계	· 라오스 공인회계사 정회원인 라오인민민주공화국 국민인 회계사와의 합작 투자가 요구
	세무	· 세무 자문 서비스 개방
통신	기간통신	· 유선기반서비스, 지상기반 이동전화서비스, 위성기반 서비스는 라오인민공화국에 설립되고 국제 통신서비스 제공 허가를 받은 법인과 의 상업적 약정을 통해 제공 의무 · 신규투자를 위한 상업적 주재가 요구되며, 외자 지분 참여 제한(60%)
	부가통신	· 개방
건설	-	· 해외소비 개방, 외자 지분 제한 요건(70%)
유통	· 무기, 탄약, 폭발물 및 폭발성 물질, 유독성이 강한 화학물질, 마약, 문화적 물품, 도서, 신문 및 잡지, 귀금속 및 보석, 의약품 및 의료장비, 멸종 위기종, 도박 기계, 화폐 인쇄기, 가공유 및 원유, 알코올, 담배 제품, 쌀은 미개방	
	도소매	· 외자 지분제한(49%), 경제적 수요심사 충족을 조건으로 개방
	프랜차이징	· 외자 지분제한(49%), 경제적 수요심사 충족을 조건으로 개방
교육	초중등교육	· 국경간 공급(Mode1) 미개방, 외자 지분제한(51%)
	고등교육	· 외자 지분제한(51%) · 자연과학, 기술, 경영학, 경제학, 경제학, 회계학, 국제법, 언어교육에 한정 개방
도로운송	여객	· 미개방
	화물	· 개방, 단 국경간 운송의 경우 현지 서비스 공급자와의 합작 투자가 요구되며, 외자 지분 제한(49%)

5 아세안(말련)_네거티브 유보

주요분야		주요 내용
전문직	법률	· 서말레이시아 및 라부안 연방영역 -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개업 가능하며, 일정 기간 거주 필요 - 사바 및 사라왁은 외국 로펌과 외국인 변호사의 개업 금지 · 중재 및 샤리아법 관련 법률 서비스 미개방(포괄유보)
	회계	· 말레이시아인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의 현지 등록 파트너십을 통해서만 회계서비스 공급 가능(외자지분 51% 제한)
	세무	· 말레이시아인 공인세무사 또는 세무법인과의 파트너십 또는 민간 유한회사를 통해서만 세무서비스 공급 가능(외자지분 51% 제한)
통신	기간통신	· 외국회사, 파트너십 등은 통신서비스 공급을 위한 개별 허가 신청 불가 · GATS 양허표상 기재된 제한사항 부과 가능
	부가통신	· 외국회사, 파트너십 등은 통신서비스 공급을 위한 개별 허가 신청 불가 · GATS 양허표상 기재된 제한사항 부과 가능
건설	-	· 현지 설립(대표사무소, 지역사무소 또는 합작투자회사 등), 건설산업개발위원회 등록 등의 요건 의무
유통	도소매	· 외국인은 슈퍼마켓, 잡화점, 상설노점, 주유소, 신문 대리점, 약국, 말레이시아 요리 식당 등의 운영 미허용 · 하이퍼마켓, 슈퍼스토어, 백화점, 전문점, 편의점 관련 유통서비스 미개방(포괄유보) · 쌀, 설탕, 밀가루, 주류, 담배, 바틱, 유리, 바이오디젤, 발전용 기계류, 자동차, 비금속, 시멘트 등의 도매서비스 미개방(포괄유보) · 폭발물, 무기, 탄약 등 군 관련 장비 및 유사장비 미개방(포괄유보)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도소매, 모터사이클 및 관련 부품 도소매, 자동차 연료 소매, 의약품 및 화장품 도매, 중간 생산물 및 재활용 폐기물의 도매, 농업원료 및 살아있는 동물 도매, 가정용 기구 도매, 기계류 도매 관련 외국인투자 제한
	중개·프랜차이즈	· 섬유·의류·신발 위탁중개인서비스의 경우, 말레이시아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지배하는 회사 또는 현지 설립 합작투자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 · 프랜차이즈 미개방
교육	초중등교육	· 국가 교과과정을 다루는 초중등 교육서비스 미개방(포괄유보)
	고등교육	· 공공 고등교육기관, 간호 교육, 기술전문대학, 지역전문대학, 군사학 및 종교학을 다루는 고등교육서비스 미개방(포괄유보)
도로운송	여객	· 여객 및 정기 도로여객운송 서비스, 그리고 버스·택시의 정거장 및 운송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전자 애플리케이션 미개방(포괄유보)
	화물	· 말레이시아에 등록, 설립된 실체만이 화물도로운송서비스 제공 가능 · 외국인은 수수료 또는 계약 기반 컨테이너 화물운송을 대상으로 하는 화물운송서비스 제공 실체에 대해 49% 이하로만 지분 소유 가능

6 아세안(미얀마)_포지티브 양허

주요분야		주요 내용
전문직	법률	· 미개방
	회계	· 「2016년 미얀마투자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 후 미얀마 국내에 등록된 공인회계사와의 합작투자 또는 파트너십이 권장되며, 다만, 그 외국인 상대는 본국에서 개업한 공인회계사로 자격을 갖추고 정식으로 등록되어야 함 · 외자 지분 제한(70%)
	세무	· 미개방
통신	기간통신	· 음성전화서비스, 패킷교환데이터전송서비스, 회신교환데이터 전송서비스, 팩시밀리, 전용회선서비스는 외자 지분 제한 (70%) · 텔렉스서비스와 전신서비스는 기존 규칙 및 조항 준수를 조건으로 개방
	부가통신	· 전자메일, 음성메일서비스, 온라인 정보 검색 등의 부가통신 서비스는 기존 규칙 및 조항 준수를 조건으로 개방
건설	-	· 개방
유통		· 미개방
교육	초중등교육	· 교육부 준칙 및 규정의 조항 준수를 조건으로 개방
	고등교육	· 교육부 준칙 및 규정의 조항 준수를 조건으로 개방
도로운송		· 미개방

7] 아세안(필리핀)_포지티브 양허

주요분야		주요 내용
전문직	법률	· 미개방
	회계	· 국경간 서비스 공급만 개방, 현지법인 설립 등은 미허용
	세무	· 미개방
통신	기간통신	· 국경간 서비스 공급은 허가받은 사업자와의 상업적 약정 필요 · 음성 전화서비스, 패킷교환데이터/회선교환데이터 전송 서비스, 전신 및 셀룰러이동전화 서비스 등에 외국인 투자 제한 - 필리핀 의회로부터의 영업 면허, 국가통신위원회로부터의 관련 증명서 요구, 외자 지분 제한(40%)
	부가통신	· 외자 지분 제한(40%), 필리핀 규제기구에 등록 필요하며, 네트워크 설치 불가
건설	장거리파이프라인 통신 및 전력선 건설업 가스피팅 건설업 기타서비스	· 민간 국내 건설 계약의 경우 외자 지분 제한(40%) · 현지자금이 총당된 공공사업의 경우 외자 지분 제한(25%), 필리핀계약자평가인증위원회의 면허 발급 필요
유통	도소매	· 고급 또는 명품 상품 관련 도소매 서비스 개방(담배, 화학 및 의약품, 총포, 무기, 군수품, 폭발물 제외) - 관련 조건 준수를 조건으로 70%까지 외자 지분 허용 · 석유제품 소매아울렛은 상업적 주재를 전제로 개방 - 관련 조건 준수를 조건으로 51%까지 외자 지분 허용 - 아울렛의 운영 중지, 개정, 폐점에 대한 사전통보 필요 등
	중개·프랜차이즈	· 고급 또는 명품 상품 관련 위탁중개인 서비스는 상업적 주재를 전제로 개방(담배, 화학 및 의약품, 총포, 무기, 군수품, 폭발물 제외) - 외자지분(최소납입지분자본 충족시 100%/ 그 외 40% 제한) · 프랜차이즈 미개방
교육	초중등교육	· 미개방
	고등교육	· 필리핀 시민만 교육기관에 대한 통제 및 운영 가능 · 외자 지분제한(40%) · 외국인만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 불가, 학교 정원의 3분의 1 미만으로만 외국인 구성 가능
도로운송	여객	· 공공사업 운영 면허 등은 필리핀 시민 또는 필리핀 시민에 의해 최소 60% 자본이 소유되는 필리핀 법인에만 부여
	화물	· 육상교통 영업면허 및 규제위원회(LTFRB)로부터 공공편의 임시허가증 또는 증명서 확보 필요 · 신규진입자는 경제적 수요 심사의 대상이 됨

8] 아세안(싱가포르)_네거티브 유보

주요분야		주요 내용
전문직	법률	· 미개방(포괄유보)
	회계	· 공인회계사, 회계사무소, 회계회사 또는 회계유한책임조합만이 공인회계 서비스 제공 가능 · 공인회계사는 회계기업관리청(ACRA)에 등록되어야 하며, 자격, 경력 및 싱가포르 공인회계사협회(ISCA)의 회원자격에 관한 요건을 포함하는 회계사법상의 등록 요건 충족 필요 · 회계사무소, 회계회사 및 회계유한책임조합은 회계사법상 회계 기업관리청 이사위원회인 공인회계사 감독위원회의 승인 필요 · 회계사무소, 회계회사 또는 회계유한책임조합의 사업은 싱가포르에서의 공인회계 서비스 제공 또는 공급과 관련되는 한, 싱가포르에 상시적으로 거주하는 공인회계사인 1인 이상의 이사 또는 파트너의 통제 및 관리 하에 있어야 함
	세무	· 개방(유보 미기재)
통신	기간통신	· 회사법(제50장, 2006년 개정)에 따라 현지에서 법인을 구성할 의무 · 부여되는 허가 건수는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의 가용성과 같은 자원 제약에 의해서만 제한 · 스펙트럼 제약을 고려하여, 무선 기술에 기반한 망 구축에 관심이 있는 당사자들은 입찰 또는 경매 절차를 통하여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 사용 허가 가능
	부가통신	· 회사법(제50장, 2006년 개정)에 따라 구성되거나 등록된 외국회사만 싱가포르 영역(.sg)에 해당하는 도메인 이름 등록 가능
건설	-	· 개방(유보 미기재)
유통	도소매	· 상업적 주재 요구 · 수입금지 또는 비자동 수입허가의 적용을 받는 모든 제품의 공급을 미개방(포괄유보)하며, 규정된 제품 목록을 수정 또는 추가 가능
	중개·프랜차이징	· 중개는 수입금지 또는 비자동 수입허가의 적용을 받는 모든 제품의 공급을 미개방(포괄유보)하며, 규정된 제품 목록을 수정 또는 추가 가능 · 프랜차이징 개방(유보 미기재)
교육	초중등교육	· 미개방(포괄유보)
	고등교육	· 싱가포르 교육 제도상 주니어 칼리지 및 대학 준비학교에 적용되며, 고등교육 미개방(포괄유보)
도로운송	여객	· 미개방(포괄유보)
	화물	· 미개방(포괄유보)

9] 아세안(태국)_포지티브 양허

주요분야		주요 내용
전문직	법률	· 법률문서·증명, 형법 및 기타 분야 사법·준사법 절차 자문 및 대리 서비스는 외자지분제한(49%)하 합작법인 설립 가능 · 국제상법 문서초안 작성서비스는 외자지분 70%까지 가능
	회계	· 회계·감사·부기서비스는 외자지분제한(49%)하 합작법인 설립 가능
	세무	· 자사 계열사 피고용인의 개인별 세금준비·계획 서비스에 한해, 외자지분제한(51%)하 합작법인 설립 가능
통신	기간통신	· 외자지분제한(51%)하 합작법인 설립 가능
	부가통신	· 외자지분제한(70%)하 합작법인 설립 가능
건설	건설업	· 빌딩·토목 관련 건설, 설치·조립, 건설부지 사전건립, 특수거래 건설 서비스는 외자지분제한(49%)하 합작법인 설립 가능 · 광산·산업용 공장, 항구·수로댐 등 수상공사 관련 건설, 조립식 건축물 조립·시공, 창유리 서비스는 외자지분 70%까지 가능
	건설기계	· 빌딩 건설, 철거 및 토목 관련 기계임대(운영자 포함)는 외자지분제한(49%)하 합작법인 설립 가능
유통	도매	· 스포츠 상품(자전거 포함), 식품가공업에 사용하는 화학물질 및 의약품 도매유통은 외자지분제한(49%)하 합작법인 설립 가능
	소매	· 자국 생산품 소매, 도서·신문·잡지·문구류의 우편주문 소매유통은 외자지분제한(70%)하 합작법인 설립 가능
	위탁중개	· 외자지분제한(49%)하 합작법인 설립 가능 · 수수료·계약에 기초한 의약품 판매는 외자지분 70%까지 가능
	프랜차이징	· 외자지분제한(49%)하 합작법인 설립 가능
교육 (공교육 제외)	초중등교육	· 외자지분제한(49%)하 합작법인 설립 가능 - (초등) 국제 및 국내 학교, (중등) 일반중등, 고등중등, 기술·직업(장애학생 대상 포함) 교육 서비스 가능
	고등·성인교육	· 외자지분제한(49%)하 합작법인 설립 가능 - (고등) 고등 기술·직업, (성인) 전문·단기과정 교육 서비스 가능 · 고등교육 중 과학기술·혁신학부(영어로 진행)는 외자지분 100%, 기타 고등교육(영어로 진행)은 외자지분 51% 허용
도로운송	여객	· 미개방
	화물	· 냉동품·냉장품, 액체·가스화물, 컨테이너 화물운송은 외자지분제한(49%)하 합작법인 설립 가능
기타	전자교육용 게임	· 교육용 온라인게임은 외자지분제한(49%)하 합작법인 설립 가능

10 아세안(베트남)_포지티브 양허

주요분야		주요 내용
전문직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변호사 조직은 ①외국 변호사 조직의 지정, ②외국 변호사 조직의 자회사, ③외국로펌, ④베트남 법률 파트너십 간의 파트너십의 형태로 상업적 주재의 설립 허용 - 외국변호사가 베트남 법대 졸업 후 자격요건 충족시, 베트남법 자문 가능 · 베트남 법원에서 변호·대리인 자격으로 소송 절차 참가, 베트남법에 대한 법률문서작성 및 공증서비스는 미개방
	회계	· 개방
	세무	· 개방
통신	기간통신	· 외자지분제한(설비기반 49%, 비설비기반 65%)하 합작법인 설립 가능
	부가통신	· 외자지분제한(설비기반 50%, 비설비기반 65%)하 합작법인 설립 가능
건설	건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기업 지정 설립 가능 - 단, 지정의 장은 베트남 거주자 요건 필요
유통	도매	· 식품, 음료, 연료, 산업용기계, 가구, 가정용품, 의류, 자동차 및 그 부품, 오토바이 및 그 부품 등 유통 가능
	소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및 비식품, 자동차 및 그 부품, 오토바이 및 그 부품 유통 허용 · 아웃렛 개설시 경제적 수요심사 필요
	위탁중개	· 식품, 음료, 연료, 산업용기계, 가구, 가정용품, 의류, 자동차 및 그 부품, 오토바이 및 그 부품 등 판매 가능
	프랜차이즈	· 프랜차이즈 지정 설립 허용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경간 공급(모드1)은 개인적 사용을 위한 상품, 개인·상업적 사용을 위한 합법적 컴퓨터 소프트웨어 유통만 가능 · 담배·시가, 도서, 신문·잡지, 매체불문 영상 녹화물, 귀금속·보석, 의약품·약, 폭발물, 가공유·원유, 쌀, 수수설탕·첨채당 유통 미개방
도로운송	여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협력계약 또는 외자지분제한(49%)하 합작법인 설립 가능 · 합작투자회사의 운전인력은 베트남 시민으로 제한
	화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협력계약 또는 외자지분제한(49%)하 합작법인 설립 가능 · 합작투자회사의 운전인력은 베트남 시민으로 제한 · 시장 필요성(신규 일자리 창출, 외환계정 흑자, 선진기술 도입, 산업 공해 감소 등)을 조건으로 외자지분 51%까지 가능
기타	전자게임업	· 전자게임업 허가를 받은 베트남 파트너사와 사업협력계약 또는 외자지분제한(49%)하 합작법인 설립 가능

11 호주_네거티브 유보

주요분야		주요 내용
전문직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 국내법 법률자문 및 대리 서비스 개방 · 외국법 및 국제법 법률자문 서비스, 그리고 법적 중재 및 화해·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외국법 자격을 갖춘 자연인은 남호주에서 현지 법무법인에 컨설턴트 자격으로만 취업 가능 · 변리사의 경우, 일정 기간 호주 또는 뉴질랜드에서의 관련 고용 경험 필요
	회계	· 개방
	세무	· 개방
통신	기간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텔스트라(호주 이동통신사업체)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외자 지분은 텔스트라 주식의 35% 이하로 제한 - 개인 또는 조직된 단체의 외국인 투자는 5% 이하로 제한 · 텔스트라의 의장과 이사의 과반수는 호주 시민권자여야 함
	부가통신	· 개방
건설	-	· 건물 및 토목 관련 일반 건축 공사, 설치 및 조립 작업, 건물 완성 및 마무리 작업, 기타 개방(단, 광산 현장 준비 작업 제외)
유통	도소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 의류, 가정용기구, 의약품, 기타 소비재, 중간재, 기계류 등 도매서비스 개방 · 음식, 향수 및 화장품, 섬유, 의류, 가정용기구 등 소매서비스 개방 · 자동차 및 부품 판매, 모터사이클 및 부품 판매 개방 · 담배, 주류, 총포 관련 도소매서비스 미개방
	중개·프랜차이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축산물, 식음료, 담배, 주류, 총포 관련 위탁중개인 서비스 미개방 · 프랜차이징 서비스 개방
교육	초등교육	· 미개방(포괄유보)
	중고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교육 미개방(포괄유보) · 중등교육은 사설기관에서의 중등 수준의 일반·기술·직업 교육 개방 · 고등교육은 대학수준을 포함하여 사설 고등 교육 서비스 개방
도로운송	여객	· 도시간 정기 또는 특별 운송서비스 개방, 비정기 운송서비스 개방 (단, 정기 도시 버스 서비스 제외)
	화물	· 개방

12 중국_포티지브 양허

주요분야		주요 내용
전문직	법률	· 외국 법무회사는 대표사무소 형태로만 법률서비스 제공 가능 · 각 당사자 변호사 자격 소지자는 자국법 및 국제협약·실무에 대한 자문 서비스 제공을 허용, 중국 법률 환경영향 정보 제공 등 · 상해 시범자유무역지구(FTZ) 내 설립된 대표사무소는 상해 FTZ 내 중국 법무회사와 상업적 제휴 구성을 허용
	회계	· 중국 공인회계사만 파트너십 또는 회계법인 설립 가능 · 회계법인은 세무 및 경영 자문서비스 종사 가능
	세무	· 100% 외국인 소유 자회사 설립 가능
통신	기간통신	·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허용되나 외자지분 제한(49%)
	부가통신	·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허용되나 외자지분 제한(50%)
건설	건설업	· 4가지 유형(①외투·원조 전액출자 건설, ②국제금융기관의 융자출자, ③외투 50%이상 중외 공동건설, ④중국기업 단독수행 어려운 중국인 투자 프로젝트는 중외 공동수행)에 대해 100% 외국인 소유 기업 허용 · 상해 시범자유무역지구(FTZ) 내 설립된 외국 건설기업은 상해에서 중외 공동 건설 프로젝트 수행 가능(프로젝트의 외투비율 요건 면제)
	건설기계	· 100% 외국인 소유 기업 설립 가능
유통	도매·위탁중개	· 100% 외국인 소유 기업 설립 가능(소금·담배 제외)
	소매	· 우편 주문 가능하며, 100% 외국인 소유 기업 설립 가능(담배 제외) · 단, 30개 이상 점포를 소유한 체인점은 외자지분 100% 소유 불가하고, 그러한 체인점이 도서·신문·잡지·의약품·살충제·멀칭필름·가공유·화학비료 등 유통 시 외국인 다수 지분 소유 불가
	프랜차이징	· 개방
	이동식도소매	· 개방
교육	초중등교육	· 합작설립 가능하며, 외국인 다수 지분 소유 가능 · 국가의무교육은 제외
	고등·성인교육	· 합작설립 가능하며, 외국인 다수 지분 소유 가능 · 성인교육에 미용술·스파·침술 분야 비학문적 훈련 포함하여 개방 · 기타교육에 영어·요리·수공예 분야 비학문적 훈련 포함하여 개방
도로운송	여객	· 도시 및 교외 정기·특별 운송, 도시간 정기·특별운송은 제한없이 개방 (국경간 운송은 미개방)
	화물	· 개방 (국경간, 도시간 운송 개방)

13 일본_네거티브 유보

주요분야		주요 내용
전문직	법률	· 변호사·변리사 자격 취득 및 상업적 주재 요건 요구
	회계	· 회계사 자격 취득 및 상업적 주재 요건 요구
	세무	· 세무사 자격 취득 및 상업적 주재 요건 요구
통신	기간통신	· 외국정부, 외국법인, 외국인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의결권 비율의 총계를 3분의 1 미만으로 제한 · 일본 국적이 없는 자연인은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 동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 및 서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또는 감사원 직책 수행 불가 · 통신사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투자자에게는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 따른 사전통보 및 심사 필요
	부가통신	· 인터넷 기반 서비스에 투자하려는 외국인투자자에게는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 따른 사전통보 및 심사 필요
건설	-	· 건설업 수행을 위해서는 일본 내 사업장 설립 및 국토교통성장관 또는 사업장 소재지 현의 지사로부터의 허가 필요 · 철거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일본 내 사업장 설립 및 사업장 소재지 현의 지사에게 등록 필요
유통	도소매	· 주류 관련 도소매업 서비스공급자에 대해 면허 제한 가능 · 축산물 취급자는 일본 내 거주 및 면허획득 필요 · 공공도매시장의 정상 운영을 위한 서비스 공급 제한 가능
	중개	· 주류 관련 위탁 중개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면허 제한 가능
교육	초중등교육	· 미개방(포괄유보)
	고등교육	· 일본에서 정규교육으로 공급되는 고등교육 서비스는 정규교육기관에 의해서만 제공 가능하며, 정규 교육기관은 학교법인에 의하여 설립되도록 요구
도로운송	여객	· 승합자동차 산업 투자에는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 따른 사전통보 및 심사 필요 · 도로여객운송업 수행을 위해서는 일본에 사업장을 설립하고 국토교통성장관 허가 획득 또는 통보 필요
	화물	· 도로화물운송업 수행을 위해서는 일본에 사업장을 설립하고 국토교통성장관 허가 획득 또는 통보 필요

14 한국_네거티브 유보

주요분야		주요 내용
전문직	법률	· 국내 변호사 자격 취득 및 법률사무소 설립 필요 · 다른 당사자 법무회사의 대표사무소 설립 가능 · 각 당사자 공인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우리나라에서 자국법 및 국제공법에 대한 자문 서비스 제공을 허용
	회계	· 국내 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및 회계사무소 설립 필요
	세무	· 국내 세무사 자격 취득 및 세무사무소 설립 필요
통신	기간통신	·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을 현행 49% 유지 * 한-미 및 한-EU FTA에서의 간접투자 개방은 미허용
	부가통신	· 전자·음성메일, 온라인정보검색, 저장·전송 등 공급에 제한없음
건설	건설업	· 최초 도급계약 체결 전 사무소 개설 필요 · 철도건설은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기준 충족하는 법인만이 가능
	건설기계	· 건설 기계 리스·임대·정비·수리·판매·처분은 사무소 개설 필요
유통	도소매	· 담배·주류·안경·의약품·식품·화장품·중고차 등 조건부 개방 - (담배) 우편·전자상거래 금지, 도소매유통은 사무소 설립 필요, 지정 담배소매인만이 소비자에 판매 가능 - (주류) 전화·전자상거래 판매 금지, 도매유통은 사무소 설립 및 경제적 수요심사 승인 필요 - (안경) 면허를 받은 자연인이 1개 사무소 개설 가능 - (의약품) 소매 약국 1개소 개설 가능 - (기타) 의약품·의료기기·기능성식품 도매, 식품 운반·보존·공급·검사, 마약류 도소매, 화장품 판매, 중고차 도소매는 사무소 설립 필요
	위탁중개	· 국내 영업을 위한 법인 또는 대표사무소 등 설립 필요 * 농축산물, 음식물, 음료 및 담배 제외
	프랜차이징	· 품목제한없이 서비스 가능
	미개방	· ▲총포·도검·화약류 등 유통, ▲농축산물·식음료 중개, ▲쌀·인삼·홍삼 수입, 중개, 도소매, ▲육류·가금류 수입, 도매, ▲천연가스 수입, 도매 등 미개방(포괄유보)
교육	초중등교육	· 공교육(유아교육 포함) 미개방(포괄유보)
	고등·성인교육	· 고등교육(대학교) 및 성인교육 분야의 경우, 현행 관련법령의 수준에서 개방, 원격교육의 경우 비학위 성인교육에 한하여 가능
도로운송	여객	· 미개방
	화물	· 국제해운회사에 의한 컨테이너화물 도로운송만 허용

15 뉴질랜드_포지티브 양허

주요분야		주요 내용
전문직	법률	· 뉴질랜드 국내법, 국제법, 외국법 관련 법률서비스 개방
	회계	· 개방
	세무	· 세금 준비, 세금 계획 및 컨설팅 서비스 개방
통신	기간통신	· 코러스 유한회사(통신인프라 제공회사)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 단일 해외 실체의 지분 소유는 49.9% 이하로 제한 - 이사회 의 최소 절반은 뉴질랜드 시민권자여야 함
	부가통신	
건설	-	· 국경간 공급(M1)은 자문서비스 개방, 해외소비(M2)와 상업적 주재(M3) 개방
유통	도소매	· 도매업 개방(단, 농축산물, 식음료 및 담배, 양모 관련 제외) · 음식 및 그 외 상품(의약품, 섬유, 의류, 가전 등) 소매 개방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판매, 모터사이클 판매 및 유지보수 개방
	중개	· 개방(단, 농축산물, 식음료 및 담배, 양모 관련 제외)
교육	초등교육	· 초등교육, 중고등교육 개방 · 그밖의 교육에 대해서는 사립 전문 어학기관에서 제공되는 언어교육서비스, 뉴질랜드 의무 학제 밖에서 운영되는 사립 전문 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초등 및 중등 수준에서 가르치는 과목의 교습 개방(수학, 과학 또는 역사 관련 연장 교습 제공 등)
	중고등교육	
도로운송	-	· 우편수송을 제외한 상업적 도로 운송 서비스(여객, 상품, 임대 및 차량복구) 개방

**부록 III. 자연인의
일시이동 양허
주요내용**

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약속에 관한 양허표 (부속서 IV)

- 상용 방문자, 기업내 전근자, 계약서비스 공급자, 단기기업인 방문자, 독립전문가 등 각 인력 범주별 정의와 일시적 입국·체류 관련 요건 및 체류기간을 명시

① 아세안(브루나이)

구분	주요 내용
<p>기업내 전근자 (Intra-corporate Transfere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루나이에 설립된 지정·자회사·계열사를 통해 브루나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피고용인이며, 입국 신청일 직전 1년 이상 기간 동안 브루나이 밖의 기업에 고용되었던 인으로 다음중 하나에 해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원: 조직 경영을 지휘, 의사결정 행사, 고위급임원·이사회·주주로부터 감독을 받는 자연인으로 서비스의 실질적 공급 관련 임무는 직접적으로 수행 안함 2) 관리자: 조직을 지휘하고 피고용인을 감독하며 인사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일상 업무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연인 (제일선의 감독자 및 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은 미포함) 3) 전문가: 전문성에 대한 고급수준의 지식을 보유하고 그 조직의 서비스·연구장비·기술 또는 경영기술에 관한 재산권적 지식을 보유한 자연인(면허를 소지한 전문직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 • (조건 및 제한) 3년까지 입국 및 체류가 허용되며, 총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최대 2년까지 연장 - 입국은 브루나이 법,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에 명시된 조건으로 허용

※ 브루나이다루살람은 구체적 약속에 기재된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내 전근자에 대해서만 자연인의 일시 입국 및 일시 체류가 허용

< 기업내 전근자에 대한 구체적 약속 >

- 감사 서비스
- 건축 서비스
 - * 건축사 요건 : 인정된 학문적 및 직업적 자격요건을 가지고 브루나이 개발부에서 “적격인”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적격인 또는 허가 받은 건축사는 1년의 기간동안 브루나이에 거주하고 허가받은 현지 건축사와 영업을 하는 경우 등록이 요구됨
- 엔지니어링 서비스
-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 교통 인프라 터키 프로젝트, 수도 공급 및 위생 공사 터키 프로젝트, 제조업 건설 터키 프로젝트, 그 밖의 터키 프로젝트
- 도시계획 및 경관건축 서비스
- 의료 및 치의료 서비스
- 수의료 서비스
-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 연구개발 서비스
-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항공기 관련 임대 또는 리스 서비스
- 그 밖의 사업 서비스
- 큐리어 서비스
- 통신 서비스
- 빌딩 관련 건설업
- 토목 관련 건설업
- 조립식 건축물의 조립 및 시공
- 설치 작업
- 빌딩 완성 및 마무리 작업
- 건설 현장에서의 선시공 작업
- 특수건설업
- 운영자를 동반한 빌딩 건설이나 철거 또는 토목 공사를 위한 장비 관련 임대 서비스
- 교육 서비스
- 환경 서비스
- 금융 서비스
- 사회 서비스를 제외한 보건 관련 및 사회 서비스
- 운송 서비스

② 아세안(캄보디아)

구분	주요 내용
<p>상용 방문자 (Business Visitor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사업상 회의 참석, 서비스 판매를 위한 협상을 포함한 사업상의 접촉 수립을 위해 캄보디아에 입국 ②캄보디아 내 소득원으로부터 소득을 받지 않으면서 캄보디아에 체류 ③일반 대중에 대한 직접 판매 또는 서비스 공급에 종사하지 않은 자연인 • (조건 및 제한) 최초 30일의 체류를 위한 90일의 기간 동안 유효하고 연장 가능
<p>상업적 설립체 수립을 담당하는 인 (Persons responsible for setting up of a commercial establishme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직 또는 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캄보디아 내 상업적 주재의 설립을 담당하고, 기업내 전근자의 범주 1), 2), 3)에 기술된 인의 고용을 지원할 자연인 • (조건 및 제한)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 적용
<p>기업내 전근자 (Intra-corporate Transfere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이상의 기간동안 다른 당사자 법인에 의하여 고용되었고 캄보디아 내 지점, 자회사 또는 계열사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시적 입국을 하려는 다음의 자연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원: 조직 경영을 지휘, 의사결정 행사, 고위급임원·이사회·주주로부터 감독을 받는 자연인으로 서비스의 실질적 공급 관련 임무는 직접적으로 수행 안함 2) 관리자: 조직을 지휘하고 피고용인을 감독하며 인사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일상 업무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연인 (제일선의 감독자 및 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은 미포함) 3) 전문가: 전문성에 대한 고급수준의 지식을 보유하고 그 조직의 서비스·연구장비·기술 또는 경영기술에 관한 재산권적 지식을 보유한 자연인 • (조건 및 제한) 일시적 거주 및 취업 허가가 요구되며 그러한 허가는 2년간 발급되며 최대 총 5년까지 매년 갱신 가능하고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은 전문가 범주에 적용

③ 아세안(인도네시아)

구분	주요 내용
<p>상용 방문자 (Business Visitor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회의 참석·서비스 판매를 위한 사업접촉, 인도네시아에서 상업적 주재의 설립 준비, 컨퍼런스 참석·강연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자연인으로 인도네시아에서 보수를 얻지 않으며 일반대중에 직접판매·서비스 공급에 종사하지 않는 자연인 • (조건 및 제한) 60일 동안 입국 및 체류가 허용되며 최대 120일까지 연장 가능
<p>기업내 전근자 (Intra-corporate Transfere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사, 관리자, 기술전문가 또는 자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체 주주에 의해 조직의 지시를 위임받고, 법정 안팎에서 조직을 대신하여 행동할 법적 책임이 있는 자연인 또는 자연인 집단 2) 관리자: 조직, 부서를 지휘하고, 직원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는 자연인으로 제일선의 감독자 및 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미포함 3) 기술전문가 또는 자문: 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고용되고 ① 구체적인 기술지식을 요구하는 업무나 거래 유형에 관한 자격 또는 ② 서비스·연구장비·기술 또는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을 보유한 자연인 • (조건 및 제한) 2년까지 입국 및 체류가 허용되며, 매회 2년 연장을 조건으로 최대 2회 연장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를 공급하는 모든 외국의 자연인은 정부가 부과하는 부과금 적용 대상이며, 인도네시아에서 고용된 모든 외국의 자연인은 취업 허가 보유 필요 - 모든 분야의 관리자·기술 전문가에게 경제적 수요 심사가 적용되며, 인적자원/인사기능은 인도네시아 국민에 의해 수행

< 상용방문자에 대한 구체적 약속 >

• 상용방문자는 수평적 양허표의 적용 가능한 조건과 제한을 전제로 모든 분야에서 허용됨

※ 한편, 인도네시아는 '기업내 전근자'에 대해서는 부록IV-가에서 분야 및 조건을 매우 상세히 기재하였으므로 원문 확인 요망

4 아세안(라오스)

구분	주요 내용
상용 방문자 (Business Visito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서비스 공급자의 서비스 판매 협상을 목적으로 그러한 공급자를 대표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에 종사하기 위해 입국하는 인 ②라오인민민주공화국에서의 소득원으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고 라오인민민주공화국에 체류하는 인 ③일반 대중에 대한 직접 판매 또는 서비스 공급에 종사하지 않은 자연인 • (조건 및 제한) 최대 90일의 체류기간이 적용
기업내 전근자 (Intra-corporate Transfere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이상 다른 당사자 법인에 의하여 고용되었고, 라오인민민주공화국에서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라오인민민주공화국에 체류하고자 하고, 라오인민민주공화국 국민으로 대체될 수 없는 다음 범주 중 하나에 속하는 자연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원: 조직 경영을 지휘, 의사결정 행사, 고위급임원·이사회·주주로 부터 감독을 받는 자연인으로 서비스의 실질적 공급 관련 임무는 직접적으로 수행 안함 2) 관리자: 조직을 지휘하고 피고용인을 감독하며 인사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일상 업무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연인 (제일선의 감독자 및 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은 미포함) 3) 전문가: 전문성에 대한 고급수준의 지식을 보유하고 그 조직의 서비스·연구장비·기술 또는 경영기술에 관한 재산권적 지식을 보유한 자연인 • (조건 및 제한) 모든 경우, 기업 내 전근자에서 정의된 범주에 속하는 외국인 자연인의 총수는 전체 직원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 일시 거주 및 취업 허가는 1년간 발급되며 각 범주에 적시된 조건을 충족시 최장 3년까지 6개월마다 갱신 가능

※ 라오인민공화국은 분야별 구체적 약속에 기재된 분야에 종사하는 상용방문자와 기업내 전근자에 대해서만 자연인의 일시 입국 및 일시 체류가 허용

< 분야별 구체적 약속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서비스 : 전문직 서비스, 컴퓨터 및 관련서비스, 연구 및 개발 서비스,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임대 또는 리스 서비스, 그밖의 사업서비스 2.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큐리어 서비스, 통신서비스(기본 통신 서비스, 부가통신서비스) 3.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 빌딩 관련 일반건설업, 토목 관련 일반 건설업, 설치 및 조립, 빌딩 완성 및 마무리 작업, 기타 4. 유통서비스 : 도매 서비스, 소매서비스, 프랜차이즈 5. 민간 교육 서비스 : 초등교육서비스, 중등교육서비스, 고등교육서비스, 성인 교육, 그 밖의 교육 서비스 6. 환경서비스 : 폐수관리, 폐기물 관리, 대기 및 기후 보호, 토양 및 수질 개선 및 정화, 소음 및 진동 저감 7. 금융서비스 : 모든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은행 및 그밖의 금융 서비스 8. 민간 보건 관련 및 사회 서비스 : 민간 병원 서비스 9.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 호텔 및 레스토랑, 여행알선대행 서비스, 기타 10. 운송 서비스 : 해상운송서비스, 내륙 수상 운송, 항공운송 서비스, 철도 운송 서비스, 도로운송 서비스

5 아세안(말련)

구분	주요 내용
<p>상용 방문자 (Business Visitor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서비스판매 협상을 목적으로 말레이시아에 일시입국하고자 하는 서비스 공급자의 판매자 또는 대표로서 일반 공중에 대한 직접판매·서비스 공급에 직접 종사하지 않을 인 ②상품 판매/일반 공중에 대한 직접 판매가 수반되지 않는 유통·소매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에 일시입국하고자 하는 상품 판매자 ③회의·컨퍼런스에 참석하거나 사업관계자와의 협의에 참여하는 인 • (조건 및 제한) 90일까지 입국 및 체류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레이시아 내 소재한 소득원으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음
<p>기업내 전근자 (Intra-corporate Transfere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기업의 재산권적 정보를 보유하고, 기업의 설립·통제·운영 등 관련 의사결정에 재량을 행사하며, 기업 경영을 지휘하고, 이사회·파트너로부터 감독 지휘만 받는 말레이시아 내 기업에 속한 고위 관리자인 자연인 ②고급지식과 그 조직의 재산권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 또는 전문인인 자연인으로써,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의 피고용인으로 일시적입국 신청일 직전 2년 이상 기간 동안 고용되었던 자연인 ③ 말레이시아의 전문직 기관에 의해 인정된 학력·전문자격·경험·전문성을 갖추고 전문직 기관에 등록되어 전문직 활동을 수행하는 자연인인 전문직업인 • (조건 및 제한) 최초 2년까지 입국 및 체류 가능하며, 2년마다 연장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당 한명의 고위관리자, 조직당 두명의 전문가·전문인에게 일시입국 허용. 추가적인 전문가·전문인은 관련분야에서 시장테스트 및 수용 가능한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말레이시아인에 대한 훈련을 조건으로 허용 - 전문 직업인의 등록을 위해 거주가 요구됨
<p>설치사 또는 정비사 (Installers or Maintainer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류·장비의 설치사 또는 정비사로 공급회사에 의해 고용·임명된 인이며 그 설치·정비는 해당 기계류·장비를 구매하는 조건(설치·정비와 무관한 행위는 수행안함) • (조건 및 제한) 계약기간 또는 최대 3개월 입국 및 체류 허용으로 더 짧은 기간을 적용

⑥ 아세안(미얀마)

구분	주요 내용
<p>상용 방문자 (Business Visitor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기간 동안의 보수와 재정적 지원은 미얀마 밖에서 발생하는 자연인으로 ①상품 판매자, 서비스 공급자를 위하여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공급을 협상(직접판매 수반하지 않는자) ②법인의 피고용인으로서 다른 당사자 영역에 있는 법인을 위하여 투자 설립 또는 상업적 주재 설립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③사업협상이나 회의 참석이 목적인 경우 ④다른 당사자 영역에 투자 설립 또는 상업적 주재 설립이 목적인 경우 • (조건 및 제한) 최대 70일 동안 체류를 위한 일시적 입국이 허용되고 관련 부처의 추천에 따라 3개월에서 1년까지 연장 가능. 노동이민인 구부 산하 노동국에 등록. 경제적수요심사는 모든 범주에 적용
<p>기업내 전근자 (Intra-corporate Transfere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 영역에 설립된 법인의 피고용인이고 다른 당사자 영역(대표 사무소, 지점, 지회사, 계열사)에서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을 위해 일시적으로 전근되고, 입국 신청일 직전 미얀마의 관련 부처나 부서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미얀마 밖의 그 기업에 고용되어 있었던 다음에 해당하는 자연인 1) 임원: 조직 경영을 지휘, 의사결정 행사, 고위급임원·이사회·주주로 부터 감독을 받는 자연인으로 서비스의 실질적 공급 관련 임무는 직접적으로 수행 안함 2) 관리자: 조직을 지휘하고 피고용인을 감독하며 인사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일상 업무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연인 (제일선의 감독자 및 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은 미포함) 3) 전문가: 전문성에 대한 고급수준의 지식을 보유하고 그 조직의 서비스·연구장비·기술 또는 경영기술에 관한 재산권적 지식을 보유한 자연인 • (조건 및 제한) 최대 70일 동안 체류를 위한 일시적 입국이 허용되고 관련 부처의 추천에 따라 3개월에서 1년까지 연장 가능. 노동이민인 구부 산하 노동국에 등록. 경제적수요심사는 모든 범주에 적용

㉚ 아세안(필리핀)

구분	주요 내용
<p>상용 방문자 (Business Visitor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리핀 영역에 일시적으로 입국 또는 체류하려는 자연인으로 방문 기간 동안 보수와 재정적 지원은 필리핀 밖에서 발생 • ①상품 판매나 서비스 공급을 협상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목적(직접판매 수반하지 않는자) ②법인의 피고용인으로서 필리핀 영역에 소재한 법인을 위하여 투자를 설립하거나 상업적 주재를 설립하기 위한 목적 ③사업 협상 또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목적 ④필리핀 내 투자를 설립하거나 상업적 주재를 설립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 (조건 및 제한) 필리핀에 최초 30일 동안 체류하는 각 당사자의 상용방문자에게 일시 입국 및 일시 체류 허용(기간 연장 가능)
<p>기업내 전근자 (Intra-corporate Transfere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리핀 영역에서 상업적 주재(합작투자, 대표사무소, 지점, 자회사 또는 계열사)를 통한 서비스 공급을 위해 일시적으로 전근되는 그 법인의 피고용인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연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원: 조직 경영을 지휘, 의사결정 행사, 고위급임원·이사회·주주로부터 감독을 받는 자연인으로 서비스의 실질적 공급 관련 임무는 직접적으로 수행 안함 2) 관리자: 조직을 지휘하고 피고용인을 감독하며 인사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일상 업무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연인 (제일선의 감독자 및 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은 미포함) 3) 전문가: 전문성에 대한 고급수준의 지식을 보유하고 그 조직의 서비스·연구장비·기술 또는 경영기술에 관한 재산권적 지식을 보유한 자연인 • (조건 및 제한) 필리핀에 최초 30일 동안 체류하는 다른 당사자의 기업내 전근자(임원, 관리자, 전문가)에게 일시적 입국 및 체류가 허용(기간 연장 가능)

8] 아세안(싱가포르)

구분	주요 내용
<p>기업내 전근자 (Intra-corporate Transfere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에 설립된 지점·자회사·계열사를 통해 싱가포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피고용인이며, 입국신청일 직전 1년 이상 기간동안 싱가포르 외 지역에서 그 기업에 고용되어 있으며 아래의 분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리자: 조직을 지휘하고, 피고용인을 감독하며, 인사에 관한 권한을 가지며 일상 업무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연인(일선 감독자 및 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은 미포함) 2) 임원: 조직 경영을 지휘, 의사결정 행사, 고위급임원·이사회·주주로부터 감독을 받는 자연인으로 서비스의 실질적 공급 관련 임무는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을것 3) 전문가: 고도의 전문적 수준 지식을 보유하고 그 조직의 서비스·연구장비·기술 또는 경영에 관한 재산권적 지식을 보유한 자연인(면허를 소지한 전문직 일원 포함 가능) • (조건 및 제한) 3년까지 입국 및 체류가 허용되며, 총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추가로 2년까지 연장 가능 • 동 내용은 다음의 분야로 한정 <p>회계·감사·세무, 건축·건설, 조경, 의료·치과·수의료, 엔지니어링, 생명공학, 경제 및 행동연구, 연구개발, 거주 및 비거주 재산관리, 리스·임대, 광고, 상업적 시장조사, 경영자문, 홍보자문, 광고자문, 정보기술자문, 빌딩청소·빌딩 시설 관리, 경영 컨설팅, 자동차 기술검사·분석, 농업·임업·어업 및 광업 관련 컨설팅, 국제회의·전시회 관리, 번역·통역, 알람 모니터링, 장비의 정비 및 수리, 사진, 포장, 산업연구, 인테리어 디자인, 큐리어, 호텔 숙박, 레스토랑 및 케이터링, 여행알선대행, 관광객 안내, 도서관, 위탁중개인, 도매, 프랜차이징, 성인교육, 단기연수, 위생, 배기가스 정화, 소음 저감,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세탁 및 염색, 이발 및 미용, 묘지관리, 기본통신·이동통신·재판매·부가가치망·시청각·라디오·텔레비전·컴퓨터 등, 어린이 지도 및 상담, 해상운송, 주차, 자동차 정비 및 수리, 보험·은행 등 금융서비스 등</p>

9) 아세안(태국)

구분	주요 내용
<p>상용 방문자 (Business Visitor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기간 동안의 보수와 재정적 지원이 태국 밖에서 나오는 자연인 • ①상품 판매나 서비스 공급을 협상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목적(직접판매 수반하지 않는자), ②법인의 피고용인으로 태국 내 법인을 위하여 오직 투자를 설립하거나 상업적 주재를 설립하기 위한 목적, ③사업 협상 또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목적, ④태국 내 투자를 설립하거나 상업적 주재를 설립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 (조건 및 제한) 도착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일시 입국 및 일시 체류 허용 • 부록 A 금융서비스 분야 기업인 방문자는 사업 회의 참석, 서비스 판매 또는 계약 체결, 태국에 상업적 주재를 설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연인으로 정의 • (조건 및 제한) 도착일로부터 90일을 넘지 않는 최초의 기간동안 허용되며 1년을 넘지 않는 추가 기간 동안 연장 가능. 단, 이민국과 고용부에 의해 규정된 기준 충족
<p>기업내 전근자 (Intra-corporate Transfere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국에서 상업적 주재를 통하여(대표사무소, 지점, 자회사 또는 계열사)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전근된 인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연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원: 조직 경영을 지휘, 의사결정 행사, 고위급임원·이사회·주주로부터 감독을 받는 자연인으로 서비스의 실질적 공급 관련 임무는 직접적으로 수행 안함 2) 관리자: 조직을 지휘하고 피고용인을 감독하며 인사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일상 업무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연인 (제일선의 감독자 및 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은 미포함) 3) 전문가: 전문성에 대한 고급수준의 지식을 보유하고 그 조직의 서비스·연구장비·기술 또는 경영기술에 관한 재산권적 지식을 보유한 자연인 • (조건 및 제한) 입국신청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동안 태국 밖에 있는 해당 법인에 의하여 고용되었던 기업내 전근자에게 도착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최초 기간 동안 일시 입국 및 체류 허용. 그런 일시 체류는 매회 1년을 넘지 않는 3회의 추가 기간 동안 연장 가능 • 금융서비스 분야 기업내 전근자는 관리 또는 임원 직급의 기업 전근자 또는 전문가로 정의. 다만 입국 신청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태국 밖에 있는 해당 법인에 의해 고용되었고 이민국과 고용부에 규정된 경영수요기준 충족 • (조건 및 제한) 도착일로부터 1년의 기간으로 제한되며 매회 1년을 넘지 않는 3회의 추가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음

※ 태국은 분야별 구체적 약속에 기재된 분야에 종사하는 단기 기업인 방문자(BV)와 기업내 전근자(ICT)에 대해서만 자연인의 일시 입국 및 체류가 허용

< 분야별 구체적 약속 >

1. 사업서비스 : 전문직 서비스, 컴퓨터 및 관련서비스, 연구개발 서비스,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임대 또는 리스 서비스, 그 밖의 사업서비스
2.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통신서비스
3.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 빌딩 관련 건설업, 토목 관련 건설업, 설치 및 조립, 기타
6. 환경서비스 : 하수 서비스, 폐기물 처리 서비스, 위생 및 유사 서비스, 기타
7. 금융서비스 :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은행 및 그밖의 금융 서비스
9.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 호텔 및 레스토랑, 여행알선대행 서비스, 기타
10. 레크리에이션,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도서관, 기록보관소, 박물관 및 그밖의 문화 서비스, 스포츠 서비스, 그 밖의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레크리에이션 파크 및 해변 서비스
11. 운송 서비스

10 아세안(베트남)

구분	주요 내용
<p>기업내 전근자 (Intra-corporate Transfere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에 상업적 주재를 설립한 외국 기업에서 일하고, 기업내 전근자로서 그 상업적 주재로 일시 이동하며, 이전에 최소 1년 동안 그 외국 기업에 의하여 고용되었던 관리자, 임원 및 전문가 1) 관리자 및 임원: 조직 경영을 지휘, 이사회나 주주로부터 감독 또는 지시, 감독직, 전문직 또는 관리직 피고용인의 업무를 감독 및 통제, 고용 및 해고 또는 그 밖의 인사조치 권한을 가진 자연인으로 서비스의 실질적 공급 관련 임무는 직접적으로 수행 안함 2) 전문가: 고도의 전문적 수준의 지식을 보유, 그 조직의 서비스, 연구 장비, 기술 또는 경영에 관한 지식을 보유한 자연인 • (조건 및 제한) 입국 및 최초 3년간의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 가능. 관리자, 임원 및 전문가의 총수의 최소 20퍼센트는 베트남인. 기업당 최소 3인의 비 베트남인 관리자, 임원, 전문가 허용
<p>그밖의 인력 (Other Personne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인으로 대체될 수 없고 외국 기업의 베트남 내 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베트남에 상업적 주재를 설립한 외국기업에 의하여 베트남 영역 외 지역에서 고용된 관리자, 임원, 전문가 • (조건 및 제한) 고용계약기간에 합치하는 기간 또는 최초 3년 중 더 짧은 기간 동안 체류가 허용되며 고용계약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p>서비스 판매인 (Service Sales Person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에 기반을 두지 않고 베트남 내에 소재한 소득원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자연인으로 1) 판매가 직접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2) 판매자가 직접 서비스 공급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서비스 판매 협상을 목적으로 그 제공자를 대표하는 것에 관련된 활동에 종사하는 인 • (조건 및 제한) 체류는 90일의 기간으로 제한됨
<p>상업적 주재 설립을 담당하는 인 (Persons Responsible for setting up a commercial presenc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내 전근자에 정의된 법인의 관리자 및 임원으로 1) 서비스의 직접 판매 또는 공급에 종사하지 않고 2) 서비스 제공자가 베트남 외의 당사자 영역에 주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베트남에 그 밖의 상업적 주재가 없는 경우, 베트남에 당사자의 서비스 제공자의 상업적 주재의 설립을 담당 • (조건 및 제한) 상업적 주재의 설립을 담당하는 인의 체류는 90일의 기간으로 제한됨

구분	주요 내용
<p>계약서비스 공급자 (Contractual Service Supplier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에 상업적 주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 기업의 피고용인인 자연인 • (조건 및 제한) 90일 또는 계약 존속기간 중 더 짧은 기간 입국 및 체류 허용. 다만, 다음 조건과 요건 충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그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베트남 기업으로부터 서비스 계약을 수주 2) ①학사학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술자격 문서, ②전문자격, ③최소 5년의 전문적 경험 3) 서비스 계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인력의 수는 계약을 이행 하는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지 않음 4) 베트남에 상업적 주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 기업에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고용되었던 인이면서 기업내 전근자에 기재된 전문가 요건을 충족 <p>이러한 인의 입국은 컴퓨터 및 관련서비스(CPC841, 845, 849)와 엔지니어링 서비스(CPC8672)에 대하여 허용</p>

11 호주

구분	주요 내용
<p>상용 방문자 (Business Visitor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으로 호주에 여행하는 자연인으로, 방문기간동안 보수·재정적 지원이 호주밖 소득원이어야 하며, 일반 공중에 대한 직접판매, 상품·서비스 자체공급에 종사하지 않는 인으로 아래와 같이 구성 1) 호주에 근거를 두지 않고 서비스 공급자 판매 대표이며 서비스 판매 협상·서비스 판매 계약 체결을 위해 일시적으로 입국하는 서비스판매자 → (조건 및 제한) 최초 6개월 및 최대 12개월 체류 허용 2) 사업협상·회의 참가 목적으로 호주에 여행하고자 하는 자연인 → (조건 및 제한) 최대 3개월 체류 허용 3) 투자 목적 등 사업 목적으로 호주에 여행하고자 하는 자연인 → (조건 및 제한) 최대 3개월 체류 허용 4) 상품판매 협상 목적으로 입국하며, 일반 공중에 직접 판매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의 당사자의 자연인 → (조건 및 제한) 최대 3개월 체류 허용
<p>기업내 전근자 (Intra-corporate Transfere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원 및 고위관리자: 호주에서 운영되는 다른 당사자 기업의 피고용인으로 고위급임원·이사회·주주로부터 감독·지휘를 받고, 기업 지휘, 피고용인 업무 감독, 기업 정책 수립 권한을 보유하는 자연인 • (조건 및 제한) ①고용주의 후원을 조건으로 하며, 고용주의 후원요건은 적격직업군을 포함 수시로 변경 가능 ②최초 4년 체류 허용하며, 추가 체류가능성 有 2) 전문가: 호주에서 운영되는 다른 당사자 기업의 피고용인으로 호주 국내기준을 충족하는 자격·기술·경험을 소지하며 해당 고용주에 의해 고용되었던 고급 무역·기술·전문능력이 있는 자연인 • (조건 및 제한) ①고용주의 후원을 조건으로 하며, 고용주의 후원요건은 적격직업군을 포함 수시로 변경 가능 ②최초 2년 체류 허용하며, 추가 체류가능성 有
<p>독립 임원 (Independent Executiv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본사가 다른 당사자의 영역에 위치하고 호주에 기타 대표·지점·자회사가 없는 기업의 신설지점·자회사를 호주에 설립하려는 자연인 • 호주내 운영의 전체/실질적 부분을 담당하고, 임원·이사회·주주로부터 감독·지휘를 받고, 기업 및 부서 지휘, 피고용 업무 감독, 기업 정책 수립 등의 권한을 보유 • (조건 및 제한) ①고용주의 후원을 조건으로 하며, 고용주의 후원요건은 적격직업군을 포함 수시로 변경 가능 ②최대 2년까지 체류 가능

구분	주요 내용
계약서비스 공급자 (Contractual Service Suppli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기술 관련 전문능력·경험이 있고 관련 호주 국내기준을 충족하는 자연인 • 독립전문직 종사자/ 전문가 포함 • (조건 및 제한) ①고용주의 후원을 조건으로 하며, 고용주의 후원요건은 적격직업군을 포함 수시로 변경 가능하고 노동 시장 테스트가 요구될 수 있음 ②12개월까지 체류를 허용하며 추가 체류 가능성 有
배우자 (Spou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및 부양가족과 기업내전근자, 독립임원, 계약서비스공급자의 적용대상이 되는 일시적입국자의 배우자 • (조건 및 제한) 일시적 입국자와 동일 기간 - 일시적입국자의 체류기간의 12개월 경과시 완전한 취업권 부여

12 중국

구분	주요 내용
<p>상용 방문자 (Business Visitor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내에 소재한 소득원으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는 자 • ①서비스 판매 협상의 목적으로 중국에 일시입국 하는 서비스 판매자(직접 판매 수반하지 않는 자), ②투자자의 상업적 주재를 설립, 확장, 감독 또는 처분하기 위해 일시입국 하는 자, ③상품 판매 협상을 위해 일시 입국하고자 하는 상품 판매자 • (조건 및 제한) 90일까지 입국 및 체류 허용
<p>기업내 전근자 (Intra-corporate Transfere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영역에 대표사무소, 지점 또는 자회사를 설립한 당사자 회사의 고위급 피고용인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연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원: 조직 경영을 지휘, 의사결정 행사, 고위급임원·이사회·주주로부터 감독을 받는 자연인으로 서비스의 실질적 공급 관련 임무는 직접적으로 수행 안함 2) 관리자: 조직을 지휘하고 피고용인을 감독하며 인사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일상 업무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연인 (제일선의 감독자 및 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은 미포함) 3) 전문가: 전문성에 대한 고급수준의 지식을 보유하고 그 조직의 서비스·연구장비·기술 또는 경영기술에 관한 재산권적 지식을 보유한 자연인 • (조건 및 제한) 일시적 입국 및 체류와 3년의 최초 체류 기간 중 더 짧은 기간(요건 충족시 기간 연장 가능), 다른 당사자에 수적 제한 및 노동시장 테스트 등의 절차를 부과하지 않음(다만, 다른 당사자 역시 수적 제한 및 그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절차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
<p>설치사 또는 정비사 (Installers or Servicer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 또는 산업용 장비에 대한 설치 또는 정비 서비스를 공급하는 적격 전문가 • (조건 및 제한) 최대 3개월까지 입국 및 체류 허용
<p>동반 배우자 및 부양가족 (Accompanying Spouses and Dependant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내 전근자 중 관리자와 임원 입국자의 동반 배우자와 부양가족 • (조건 및 제한) 최대 12개월을 초과하지 않고 입국자에 대한 동일한 체류 기간을 초과하지 않음

구분	주요 내용
<p>계약서비스 공급자 (Contractual Service Supplier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국 영역에 일시적으로 입국하는 당사자의 자연인이며 이들의 고용주는 중국 영역에 상업적 주재를 두지 않는 다른 당사자의 회사, 파트너 또는 기업. 서비스 공급자는 적절한 교육적 및 기술적 자격 보유 • (조건 및 제한) 최대 1년까지 입국 및 체류 허용하며 제공 서비스는 다음 특정 분야로 제한하며 일시적 입국 조건으로 노동 시장 테스트 또는 수적제한 부과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 서비스 - 의료 및 치과 서비스 - 건축 서비스 - 엔지니어링 서비스 - 도시계획 서비스(일반 도시계획 제외) -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 교육 서비스(학사 또는 그 이상의 학위 취득, 전문 직함 또는 증명서를 받고, 최소 2년 전문적인 업무 경험) - 관광 서비스

13 일본

구분	주요 내용
<p>단기기업인 방문자 (Short-Term Business Visito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상 접촉에 참여, 상업적 주재의 설립을 위해 준비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일본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직접판매·서비스 공급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일본에 체류할 예정인 다른 당사자의 자연인 • (조건 및 제한) 60일까지 입국 및 체류 허용
<p>기업내 전근자 (Intra-corporate Transfere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적 체류 신청일 직전 1년 이상 일본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일본에 투자하는 공공·민간조직에 의해 고용되고, 일본에서 설립·조직된 공공·민간 조직의 지점·대표사무소로 전근될 예정인 자연인 중 ①지점·대표사무소 장으로서 지휘활동 ② 공공·민간조직 이사회 구성원/감사로서 지휘활동 ③공공·민간조직 부서 지휘활동 ④자연 및 인문과학 관련 높은 수준의 기술이나 지식을 요하는 활동, 일본외의 국가 문화에 기반한 사고·민감성을 요하는 활동 등에 종사할 예정인 다른 당사자의 자연인 • (조건 및 제한) 5년까지 입국 및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 가능
<p>투자자 (Investo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내 사업 투자, 사업 관리, 일본인이 아닌 인이 투자한 일본내 사업 수행 등의 활동에 종사할 예정인 다른 당사자의 자연인 • (조건 및 제한) 5년까지 입국 및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 가능
<p>자격을 갖춘 전문가 (Qualified Professiona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규정에 따른 법률, 회계, 세무 서비스 공급자이며 체류 동안 서비스를 공급할 예정인 다른 당사자의 자연인 • (조건 및 제한) 5년까지 입국 및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 가능
<p>독립 전문가 (Independent Professional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내 공공·민간 조직과의 계약을 근거로 일본에 체류하는 동안 ① 자연 및 인문과학 관련 높은 기술이나 지식을 요하거나 ② 일본 외의 국가 문화에 기반한 서비스 공급 사업 활동에 종사할 예정인 다른 당사자의 자연인 • (조건 및 제한) 5년까지 입국 및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 가능
<p>계약서비스 공급자 (Contractual Service Supplier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에 상업적 주재를 갖고 있지 않은 다른 당사자의 공공·민간 조직의 피고용인이고, 일본에서 체류하는 동안 ① 자연 및 인문과학 관련 높은 기술이나 지식을 요하거나 ② 일본 외의 국가 문화에 기반한 서비스 공급 사업 활동에 종사할 예정인 다른 당사자의 자연인 • (조건 및 제한) 5년까지 입국 및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 가능
<p>동반 배우자 및 자녀 (Accompanying Spouse and Childre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내 전근자, 투자자, 자격을 갖춘 전문가, 독립전문가, 계약서비스 공급자에 따라 입국 및 체류가 허용된 다른 당사자의 자연인이 동반하는 배우자와 자녀 • (조건 및 제한) 기업내 전근자, 투자자, 자격을 갖춘 전문가, 독립전문가, 계약서비스 공급자와 동일한 입국 및 체류 기간 적용

14 한국

구분	주요 내용
<p>상용 방문자 (Business Visitor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판매자로서 서비스 판매를 협상·계약 체결 목적으로 한국 영역에 입국하는 자, 판매 협상을 위해 일시입국 하는 자 (직접 판매 수반하지 않는 자), 투자자 또는 투자자의 피고용인으로서 관리자, 임원, 전문가이고, 투자를 설립하기 위해 일시입국 하는 자 • 제안된 영업 활동을 위한 보수의 일차적 소득원이나 주된 영업소 및 실제이윤 발생 장소가 적어도 대부분 한국 밖에 있는 자 • (조건 및 제한) 90일까지 입국 및 체류 허용
<p>기업내 전근자 (Intra-corporate Transfere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입국 신청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고용된 한국 영역에 설립된 자회사, 지점 또는 지정된 계열사를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의 피고용인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원: 조직 경영을 지휘, 의사결정 행사, 고위급임원·이사회·주주로부터 감독을 받는 자연인으로 서비스의 실질적 공급 관련 임무는 직접적으로 수행 안함 2) 고위 관리자: 조직을 지휘하고 피고용인을 감독하며 인사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일상 업무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연인 (제일선의 감독자 및 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은 미포함) 3) 전문가: 전문성에 대한 고급수준의 지식을 보유하고 그 조직의 서비스·연구장비·기술 또는 경영기술에 관한 재산권적 지식을 보유한 자연인 • (조건 및 제한) 3년까지의 입국 및 일시체류 허용(조건이 유효하게 유지될시 기간 연장 가능), 경제적 수요심사 및 수량제한 부과 가능
<p>계약서비스 공급자 (Contractual Service Supplier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에 상업적 주재를 하지 않은 법인의 피고용인으로서 계약된 서비스 공급에 종사하는 자연인 • (조건 및 제한) 최대 1년까지 입국 및 체류 허용(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장 가능), 경제적 수요심사 및 수량제한 부과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학문적, 전문적 자격과 전문적 능력에 기반한 경험 보유 필요 -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인 한국에 설립된 법인과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서비스 계약 취득 필요 - 한국 소재 법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아야 할 것 - 일시입국 신청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법인의 피고용인이어야 할 것 - 명시된 특정 서비스 공급행위 또는 하위 분야에서 계약을 취득할 것

15 뉴질랜드

구분	주요 내용
<p>상용 방문자 (Business Visitor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와 재정적 지원이 전적으로 뉴질랜드 밖의 소득원으로부터 나오는 자연인 • ①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를 협상하고 체결할 목적인 경우(직접판매 수반하지 않는자) ②투자의 설립, 확장, 감독 또는 처분을 목적으로 상용 방문자 자체의 사업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의도가 없는 경우 • (조건 및 제한) 한 해 동안 최대 3개월까지 입국 및 체류 허용
<p>기업내 전근자 (Intra-corporate Transfere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뉴질랜드에 상업적 주재를 갖춘 다른 당사자의 상품 공급자, 서비스 공급자 또는 투자자의 피고용인 ②급여 및 모든 관련 지급이 기업내 전근자를 고용한 서비스 공급자 또는 기업에 의해 전적으로 지불하는 자연인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원: 조직 경영을 지휘, 의사결정 행사, 고위급임원·이사회·주주로부터 감독을 받는 자연인으로 서비스의 실질적 공급 관련 임무는 직접적으로 수행 안함 2) 관리자: 고위급 임원, 이사회, 주주로부터 감독이나 지시를 받고 감독직, 전문직, 관리직 피고용인의 업무를 감독 통제 하며 기업의 목표와 정책을 수립할 권한을 보유한 자연인 3) 전문가: 전문성에 대한 고급수준의 지식을 보유하고 그 조직의 서비스·연구장비·기술 또는 경영기술에 관한 재산권적 지식을 보유한 자연인 • (조건 및 제한) 뉴질랜드로 전근 신청 전 그 고용인에 의해 최소 12개월동안 고용되었던 임원 및 관리자는 최대 3년동안 최초 체류를 위한 입국. 전문가는 최대 3년동안 최초 체류를 위한 입국
<p>설치사 또는 정비사 (Installers or Servicer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 회사에 의한 설치 또는 서비스가 기계류 또는 장비의 구매 조건인 경우 그러한 기계류 또는 장비의 설치업자 또는 서비스업자인 다른 당사자의 자연인 • (조건 및 제한) 어떠한 12개월의 기간 동안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입국
<p>독립서비스공급자 (Independent Service Suppli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적 주재에 대한 요건 없이, 계약에 기초하여 종사하는 자영 서비스 공급자로 독립적인 전문가에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적 주재에 대한 요건 없이, 뉴질랜드에서 유효한 계약에 따라 종사하는, 고도의 기술적 또는 전문적 능력을 가진 다른 당사자의 자영 자연인으로 <ol style="list-style-type: none"> (i) 3년 이상의 정식 고등교육의 결과에 따른 자격요건 (ii) 6년 이상의 경력 • (조건 및 제한) 뉴질랜드의 양허표에 규정된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만,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최대 12개월의 기간 동안 체류를 위한 입국